세법연구 17-03

주요국의 근로소득세 공제체계 국제비교

2017. 6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법연구센터

연 구 진

연구책임자

안 종 석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원

박 수 진 공인회계사

이 서 현 연 구 원

목차

Ⅰ. 서론 ····· 9

Ⅱ. 우리나라의 근로소득세 공제체계 ····· 11

1. 소득세 과세체계 ····· 11

가. 개요 ····· 11

나. 소득세율 ····· 12

다. 소득세 계산과정 ····· 12

2. 근로소득세 공제규정 ····· 18

가. 근로소득 필요경비 ····· 18

나. 인적공제 ····· 18

다. 항목별 공제 및 표준공제 ····· 19

라. 저소득가정과 자녀양육에 대한 지원세제 ····· 25

3. 조세지원의 제한 ····· 28

4. 근로소득세의 개정연혁 ····· 29

가. 근로소득 필요경비 ····· 29

나. 인적공제와 항목별 공제 ····· 30

다. 소득공제 종합한도 ····· 33

라. 근로장려세제와 자녀양육 지원세제 ····· 34

Ⅲ. 주요국의 근로소득세 공제체계 ····· 36

1. 미국 ····· 37

가. 개요 ····· 37

나. 근로소득 필요경비에 대한 항목별 공제 ····· 39

다. 인적공제 ····· 42

라. 특정지출에 대한 항목별 공제 ····· 46

마. 저소득가정과 자녀양육에 대한 지원세제 ····· 55

2. 프랑스 ····· 57

가. 개요 ····· 57

나. 근로소득 필요경비에 대한 항목별 공제 ····· 58

다. 인적공제 ····· 61

라. 특정지출에 대한 항목별 공제 ····· 64

마. 저소득가정과 자녀양육에 대한 지원세제 ····· 69

3. 일본 ····· 70

가. 개요 ····· 70

나. 근로소득 필요경비에 대한 항목별 공제 ····· 71

다. 인적공제 ····· 76

라. 특정지출에 대한 항목별 공제 ····· 78

마. 저소득가정과 자녀양육에 대한 지원세제 ····· 80

4. 호주 ····· 80

가. 개요 ····· 80

나. 근로소득 필요경비에 대한 항목별 공제 ····· 82

다. 인적공제 ····· 86

라. 특정지출에 대한 항목별 공제 ····· 87

마. 저소득가정과 자녀양육에 대한 지원세제 ····· 91
5. 캐나다 ····· 95
가. 개요 ····· 95
나. 근로소득 필요경비에 대한 항목별 공제 ····· 96
다. 인적공제 ····· 101
라. 특정지출에 대한 항목별 공제 ····· 103
마. 저소득가정과 자녀부양에 대한 지원세제 ····· 106

Ⅳ. 국제비교 및 우리나라 근로소득세 공제제도의 특징 ····· 109
1. 국제비교 ····· 109
가. 근로소득 필요경비에 대한 항목별 공제 ····· 110
나. 인적공제 ····· 117
다. 특정지출에 대한 항목별 공제와 표준공제 ····· 124
라. 저소득가정과 자녀양육에 대한 지원세제 ····· 129
마. 공제에 따른 조세부담 경감의 제한 ····· 137
바. 근로소득세 관련 최근 개정연혁 ····· 139
2. 우리나라 근로소득세 공제제도의 특징 ····· 145
가. 근로소득 필요경비에 대한 항목별 공제 ····· 145
나. 인적공제 ····· 147
다. 특정지출에 대한 항목별 공제 ····· 152
라. 조세지원제도의 제한 ····· 153

참고문헌 ····· 155

표 목차

〈표 Ⅱ-1〉 한국의 소득세 세율(2017) ····· 12
〈표 Ⅱ-2〉 한국의 근로소득공제(2017) ····· 18
〈표 Ⅱ-3〉 한국의 근로소득세액공제(2017) ····· 24
〈표 Ⅱ-4〉 한국의 근로장려세제 장려금 산정(2016) ····· 26
〈표 Ⅱ-5〉 한국의 자녀장려세제 장려금 산정(2016) ····· 28
〈표 Ⅱ-6〉 한국의 근로소득공제 공제율 개정사항(2014~2016) ····· 30
〈표 Ⅱ-7〉 한국의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개정사항(2013, 2014) ····· 32
〈표 Ⅱ-8〉 한국의 소득공제 한도 개정사항(2013, 2014) ····· 33
〈표 Ⅱ-9〉 한국의 근로장려세제 급여액 개정연혁(2014~2017) ····· 34
〈표 Ⅱ-10〉 한국의 자녀양육 지원세제 개정연혁(2013, 2014) ····· 35

〈표 Ⅲ-1〉 미국 인적공제 금액(2016) ····· 44
〈표 Ⅲ-2〉 미국 노인경로·장애인 세액공제 소득요건 규정(2016) ····· 45
〈표 Ⅲ-3〉 미국 인적공제의 한도 및 적용배제(2016) ····· 45
〈표 Ⅲ-4〉 미국 연도별 표준소득공제 및 항목별 소득공제 현황(2010~2014) ····· 47
〈표 Ⅲ-5〉 미국 항목별 소득공제의 감액이 개시되는 기준금액(2013, 2016) ····· 50
〈표 Ⅲ-6〉 미국 표준소득공제(2016) ····· 52
〈표 Ⅲ-7〉 미국시민기회 세액공제(2016) ····· 53
〈표 Ⅲ-8〉 미국 평생교육비 세액공제(2016) ····· 54
〈표 Ⅲ-9〉 미국 퇴직연금저축세액공제(2016) ····· 54
〈표 Ⅲ-10〉 미국 근로장려세액공제(EIC)(2016) ····· 56

〈표 Ⅲ-11〉 프랑스 세대단위별 가족계수(parts)(2016) ····· 62
〈표 Ⅲ-12〉 프랑스 경로·장애인 인적소득공제(2016) ····· 63
〈표 Ⅲ-13〉 프랑스 가사도우미 세액공제 대상 급여지급액 한도(2016) ····· 66
〈표 Ⅲ-14〉 일본 급여소득공제(2016) ····· 73
〈표 Ⅲ-15〉 일본 특정지출공제적용 확정신고 제출현황(1988~2016) ····· 76
〈표 Ⅲ-16〉 호주의 근로관련 본인 교육비용(2015-16) ····· 84
〈표 Ⅲ-17〉 호주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2015-16) ····· 90
〈표 Ⅲ-18〉 호주의 사적 건강보험료 세액공제 한도금액(2015-16) ····· 91
〈표 Ⅲ-19〉 호주의 저소득자 세액공제(2015-16) ····· 92
〈표 Ⅲ-20〉 호주의 고령자·연금수급자 세액공제(2015-16) ····· 94

〈표 Ⅳ-1〉 조사대상 국가별 주요 중첩적 비용의 필요경비 공제 현황 ····· 114
〈표 Ⅳ-2〉 조사대상 국가별 근로소득 필요경비 공제 규정 ····· 116
〈표 Ⅳ-3〉 조사대상 국가별 기본인적공제 비교 ····· 120
〈표 Ⅳ-4〉 조사대상 국가별 경로·장애 추가 인적공제 비교 ····· 122
〈표 Ⅳ-5〉 조사대상 국가별 기타 추가 인적공제(한부모, 부녀자, 근로학생) 비교 ··· 123
〈표 Ⅳ-6〉 조사대상 국가별 표준공제 비교 ····· 129
〈표 Ⅳ-7〉 조사대상 국가별 저소득가정 지원세제 비교 ····· 132
〈표 Ⅳ-8〉 조사대상 국가별 자녀양육 관련 조세지원 비교 ····· 135
〈표 Ⅳ-9〉 조사대상 국가별 조세지원의 제한규정 ····· 139
〈표 Ⅳ-10〉 조사대상 국가별 근로소득세 관련 주요 개정사항 비교(2010~2016) · 143
〈표 Ⅳ-11〉 우리나라의 총급여 대비 근로소득공제 현황(2013~2015) ····· 146
〈표 Ⅳ-12〉 우리나라의 총급여 대비 인적공제(기본공제와 추가공제) 현황
(2013~2015) ····· 149
〈표 Ⅳ-13〉 연도별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 현황(2013~2015) ····· 154

그림 목차

[그림 Ⅱ-1] 한국의 종합소득 산출세액 계산체계 ····· 14
[그림 Ⅱ-2]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한국의 소득세 산출세액 계산체계 ····· 17

[그림 Ⅳ-1] 조사대상 국가별 최고수준 소득세율, 과세표준 구간 ····· 141
[그림 Ⅳ-2] 조사대상 국가별 평균임금·1인당 GDP 대비 기본인적공제 비율 ····· 148

I. 서 론

□ 한국은 2013년 세법개정으로 소득공제의 상당부분을 세액공제로 전환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면세자 비율이 크게 확대되어 정책적 대응의 필요성이 제기됨

○ 근로소득세 신고자 중 결정세액이 있는 자의 비중이 2013년 68.97%에서 2014년 52.09%, 2015년 53.46%로 낮아짐[1)]

□ 이러한 배경에서 근로소득세 공제체계의 개편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바, 본 보고서는 주요국의 근로소득자에게 적용되는 공제체계를 조사하고, 현행 우리나라 제도와 비교하여 특징을 정리함

○ OECD 회원국 중에서 우리나라가 조세제도 개편 시 많이 참조하는 주요국가 - 미국, 프랑스, 일본, 호주, 캐나다 등 5개국 - 를 조사대상 국가로 정함

○ 조사대상국가의 소득세제를 중심으로 근로소득세 공제체계를 조사함

- 2016 과세연도 이후 최근까지 적용되는 근로소득세제를 공제체계 중심으로 조사하고,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이루어진 근로소득세제 공제체계와 관련된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봄

□ 본 보고서에서 논의하는 '근로소득세 공제체계'는 근로소득자와 관련하여 고려될 수 있는 근로소득 필요경비에 대한 항목별 공제, 인적공제, 특정지출에 대한 항목별 공제를 포괄함

○ 근로소득 필요경비에 대한 항목별 공제는 소득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거나 지출된, 해당 소득과 직접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비용으로 일반적으로 총수입금액(총급여액)에서 차감하는 필요적인 비용을 의미함

---

1) 국세청, 「국세통계」, 표 4-2-4.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현황Ⅳ(과세대상근로소득), 연도별

○ 인적공제는 인적 구성원의 상황에 따라 최저생계비의 성격으로 일정금액을 공제하는 경우를 의미함

○ 특정지출에 대한 항목별 공제는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등 특정지출에 대해 허용되는 공제를 의미함

○ 본 보고서에서는 공제를 적용할 때 실제 지출된 비용을 기준으로 하는지 아니면 개산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함

- 근로소득 필요경비에 대한 항목별 공제와 특정 지출에 대한 항목별 공제는 실제 발생비용에 대한 납세자의 입증책임과 그에 대한 과세당국의 행정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할 수 있음
- 이러한 이유로 일부 국가에서는 실제 지출된 비용의 공제가 아닌 개산공제의 방식을 선택함

○ 다만, 배당소득공제나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이중과세의 경감, 주택취득지원, 저축 및 투자 장려, 특정 경제활동 유인을 위한 지원정책과 관련된 공제 제도는 본 과제의 범위에서 제외함

□ 본 보고서는 서론을 포함하여 총 4개의 장으로 구성됨

○ 제II장에서는 우리나라의 근로소득세 공제체계를 살펴보고, 제Ⅲ장에서는 미국, 프랑스, 일본, 호주, 캐나다 등 5개국의 소득세제상 근로소득자 공제제도를 중심으로 조사함

○ 제IV장에서는 우리나라와 조사대상국가의 소득세제상 근로소득자 공제제도를 국제비교하고, 우리나라 제도의 특징에 대해 논의함

Ⅱ. 우리나라의 근로소득세 공제체계

1. 소득세 과세체계

가. 개요

□ 우리나라 「소득세법」은 구체적으로 과세대상으로 열거한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에 대하여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함

○ 현행 「소득세법」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의 8가지 열거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함

- 양도소득과 퇴직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분류과세함

○ 종합소득에 해당되더라도,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열거한 비과세소득은 제외하며, 일용근로자 및 외국인 근로자의 분리과세 근로소득, 소정의 이자소득·배당소득·주택임대소득·기타소득·연금소득은 종합소득으로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고 분리과세함[2)]

□ 과세단위는 개인으로, 납세의무자가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함으로써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확정됨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해 2월 근로소득 지급 시 사용자에 의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통하여 소득세 납세의무를 종결할 수 있음

○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의 경우 신고기한이 6월말까지 연장됨

---

2) 분리과세는 소득이 지급될 때 일정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료되지만,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부터 20호까지, 제22호 및 제26호에 따른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 시 합산할 수 있음

나. 소득세율

□ 현행 산출세액 계산 시 적용되는 소득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최저 6%에서 최고 40%의 세율이 적용되는 6단계 초과누진세율임

〈표 Ⅱ-1〉 한국의 소득세 세율(2017)

(단위: 만원, %)

과세표준	세율
1,200 이하	6
1,200 초과 ~ 4,600 이하	15
4,600 초과 ~ 8,800 이하	24
8,800 초과 ~ 15,000 이하	35
15,000 초과 ~ 50,000 이하	38
50,000 이하	40

자료:「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 최근의 소득세 세율 개정연혁을 살펴보면, 2012년과 2017년부터 각각 38%, 40%의 최고세율 종합소득 과세표준 구간이 추가로 신설됨

○ 2012년부터 최고세율이 35%에서 38%로 상향조정되고, 종합소득 과세표준 3억원 초과 구간에 적용됨

- 2014년부터는 38% 세율 적용구간이 1억 5천만원 초과 구간으로 하향조정됨

○ 2017년부터 과세표준 5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40%의 세율을 적용함

다. 소득세 계산과정

□ 종합소득금액은 종합소득 과세대상 소득별 총수입금액(총급여)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한 이자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연금소득금액과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을 말함

○ 원천별 소득금액은 자체적인 계산방식에 따라 독자적으로 산출됨

- 이자소득은 필요경비의 공제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총이자수입액이 이자소득금액이 되며, 배당소득은 총배당수입액에서 귀속법인세(Gross-Up)를 가산하여 배당소득금액이 됨
- 사업소득은 총사업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사업소득금액이 되는데, 여기서 필요경비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의 합계액을 의미함
- 근로소득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하여 근로소득금액을 계산함
- 연금소득은 총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차감하여 연금소득금액을 계산하고, 기타소득은 관련 수입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함

[그림 Ⅱ-1] 한국의 종합소득 산출세액 계산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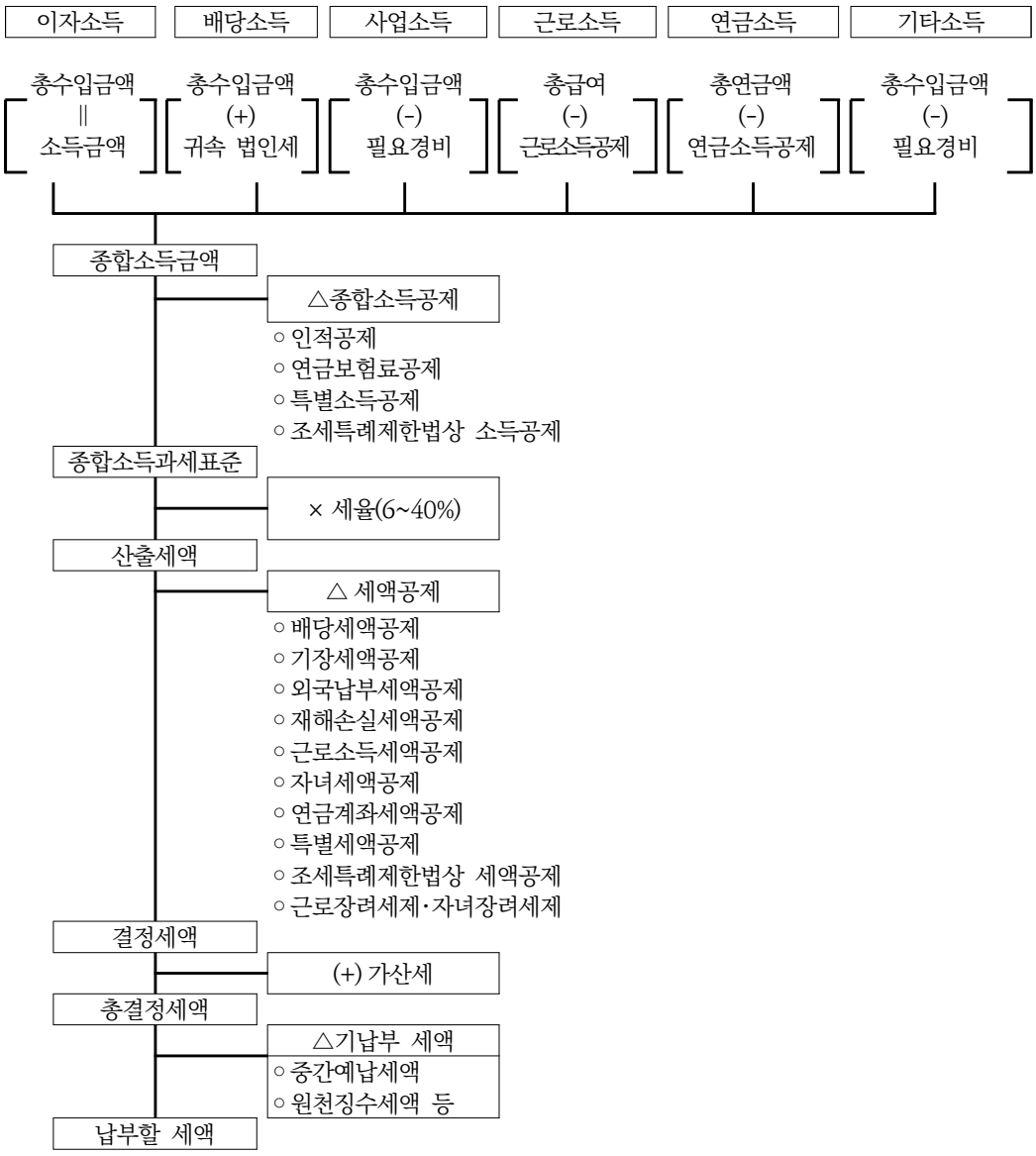

주: 1. 세액공제 항목 중 배당세액공제, 기장세액공제, 재해손실세액공제는 각각 배당소득자 및 사업소득자에 한해 신청할 수 있음
2. 근로장려세제와 자녀장려세제는 신청에 의해 결정·환급됨

자료: 기획재정부(2016), p.51 도표 수정

□ 종합소득 과세표준은 종합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와 항목별 소득공제를 차감하여 계산함

○ 납세의무자의 인적사항을 고려한 인적공제에는 본인, 배우자, 부양자녀, 기타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와 경로우대자 및 장애인에 대한 추가공제가 있음

○ 또, 지출한 비용이나 금액을 대상으로 하는 항목별 공제로 연금보험료공제,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공제 등 특별소득공제와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가 있음

- 특별소득공제에는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보험료공제, 주택자금공제, 기부금공제가 있으며 근로소득자에 한해 신청할 수 있음
-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소득공제로는 장기주식형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있음[3)]

□ 종합소득 과세표준 구간별 6단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산출세액에서 배당세액공제, 기장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재해손실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등을 차감하여 결정세액을 계산함

○ 배당세액공제는 경제적 이중과세를 경감하기 위하여 종합소득금액에 배당소득금액(귀속법인세 포함)이 합산된 경우, 배당소득수입금액의 11%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함[4)]

○ 기장세액공제는 복식부기에 따라 기장된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20%(100만원 한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함[5)]

○ 외국납부세액공제는 국제적인 이중과세를 경감하기 위하여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납부하였거나 납부한 외국소득세액을 세액공제함[6)]

---

3)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9,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6,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4) 「소득세법」 제56조

5) 「소득세법」 제56조의2. 간편장부대상자로서 복식부기에 따라 기장하고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소득세를 확정신고한 사업자에 한함

6) 「소득세법」 제57조

○ 재해손실세액공제는 사업소득자가 재해로 인해 자산총액의 20% 이상에 상당하는 자산을 상실한 경우 적용됨[7)]

○ 근로소득세액공제는 근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55%(130만원 초과 시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함[8)]

○ 자녀세액공제는 다자녀가구의 조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자녀 수에 따라 일정액을 세액공제함[9)]

○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연금계좌에 납입한 소정의 금액에 12%(총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 4,000만원 이하일 경우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함[10)]

○ 특별세액공제에는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과 관련된 지출액이 있는 경우 일정 한도 내 금액의 일정률을 곱한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함

-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공제의 경우 근로소득자에 한해 적용하며, 다만「조세특례제한법」상 성실사업자의 경우에는 201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지출한 의료비 및 교육비에 대해 세액공제할 수 있음[11)]

○ 이외에도「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로는 정치자금기부금세액공제, 월세세액공제(근로소득자 및 성실신고자에 한함), 전자신고세액공제,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가 있음

□ 항목별 공제를 대신하여 근로소득자는 13만원,「소득세법」상 성실사업자는 연 12만원, 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로서 종합소득이 있는 자는 연 7만원을 표준세액공제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 여기서 표준세액공제와 대체되는 항목별 공제란「소득세법」상 특별소득공제와 특별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상 월세세액공제를 의미함

---

7)「소득세법」 제58조

8)「소득세법」 제59조

9)「소득세법」 제59조의2

10)「소득세법」 제59조의3

11)「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

□ 과세기간 동안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해 2월 근로소득 지급 시 사용자에 의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통하여 소득세 납세의무를 종결할 수 있음[12)]

[그림 Ⅱ-2]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한국의 소득세 산출세액 계산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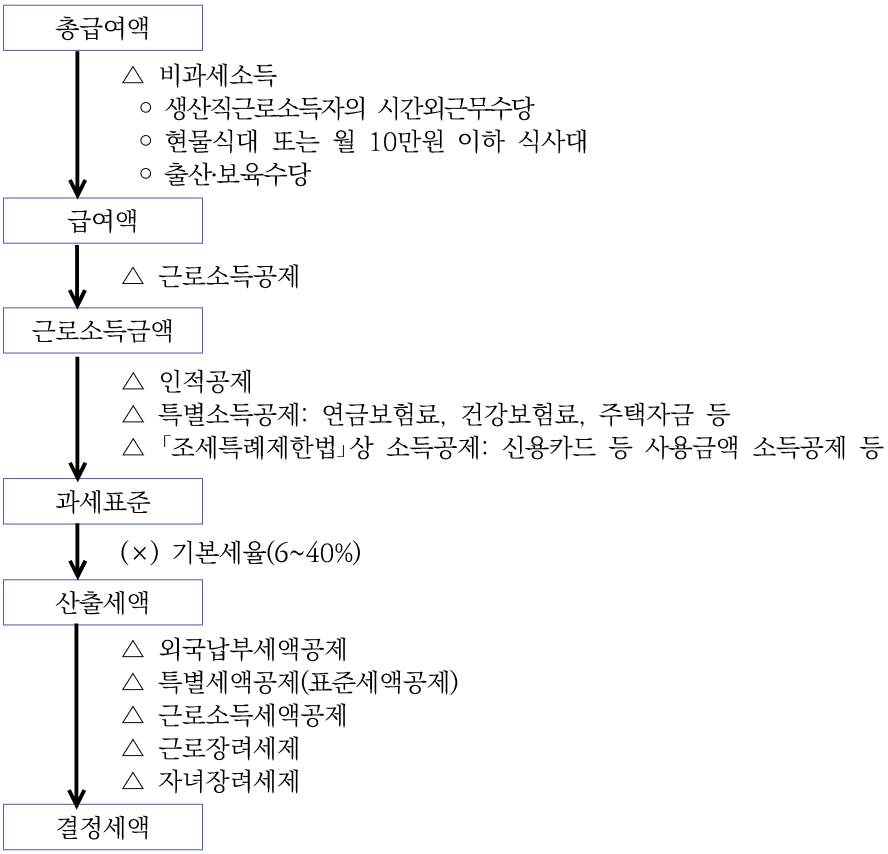

주: 근로장려세제와 자녀장려세제는 종합소득과세표준 세무신고를 통한 신청에 의해 결정·환급됨
자료: 기획재정부(2016), p.65 도표 수정

12)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1호

2. 근로소득세 공제규정

□ 다음에서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적용되는 공제항목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봄

가. 근로소득 필요경비

□ 근로소득공제는 개산공제에 해당되며, 근로소득을 얻기 위해 소요되는 필요적 경비지출을 과세소득에서 제외함으로써 근로소득자의 진정한 부담능력에 대해 과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13)]

○ 당해 연도 총급여액 구간별로 70%, 40%, 15%, 5%, 2%의 공제율을 적용함

-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1일 10만원을 공제함

〈표 Ⅱ-2〉 한국의 근로소득공제(2017)

(단위: 만원, %)

총급여	공제율
500 이하	70
500 초과 ~ 1,500 이하	40
1,500 초과 ~ 4,500 이하	15
4,500 초과 ~ 10,000 이하	5
10,000 초과 ~	2

주: 총급여는 비과세소득이 포함되지 않음
자료:「소득세법」 제47조 제1항

나. 인적공제

□ 인적공제는 납세자 본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자녀 및 기타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구분됨

13)「소득세법」 제47조 제1항

○ 기본공제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 기본공제대상 가족 1인당 연 150만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함
- 배우자와 부양가족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포함)이어야 함
- 부양가족은 만 60세 이상인 직계존속과 만 20세 이하 직계비속 및 동거입양자,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의 형제자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 10세 미만의 위탁아동을 의미함

○ 추가공제는 납세자의 경로·장애 등 상황에 따라 아래 금액을 소득공제함
- 70세 이상 경로자 공제: 1인당 연 100만원
- 장애인 공제: 1인당 연 200만원
- 부녀자 공제: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인 경우 연 50만원
- 한부모 공제: 연 100만원(부녀자공제와 중복배제)

다. 항목별 공제 및 표준공제

1) 항목별 소득공제

가) 연금보험료 소득공제

□ 거주자 본인명의로 가입한 연금보험으로 「국민연금법」에 의해 본인이 부담한 연금보험료 또는「공무원연금법」 등에 의해 근로자가 부담한 기여금 또는 부담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납입한 연금보험료 등 전액을 소득공제함[14)]

14) 「소득세법」 제51조의3

나) 특별소득공제

□ 「소득세법」상의 다음과 같은 특별소득공제는 일정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소득자 제외)에 대해서만 적용됨

○ 보험료 공제: 해당 과세기간에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납부한 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장기요양의 근로소득자 부담 보험료 전액을 공제함[15)]

○ 주택자금공제

-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본인 명의로 해당 연도에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함[16)]
-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근로소득자의 일정규모 이하 주택의 임차자금 차입금의 상환액에 대하여 40%를 공제함[17)]
-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무주택 또는 1주택 근로소득자가 일정규모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취득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해당 차입금 이자상환액을 공제함[18)]

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 「조세특례제한법」상에 규정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의 15% 또는 30%를 소득공제함[19)]

○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중 직계존비속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을 대상으로 함

---

15)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16)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17)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
18)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
19)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 소득공제 한도는 총급여액의 20%(다만, 300만원 한도,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사용분은 각 100만원 추가)임

□ 이 외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에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우리사주조합원 출연금 소득공제,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등이 있음

2) 항목별 세액공제[20]

가) 연금계좌 세액공제

□ 2014년 1월 1일 이후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의 12% 또는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함[21]

○ 공제율 15%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 또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인 경우 적용함

○ 납입금액에 대한 한도는 연 400만원이며, 퇴직연금계좌 납입액을 고려하는 경우에는 연 700만원임

-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을 초과(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1억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2017년 1월 1일 이후 납입액에 대한 한도가 300만원임

나) 특별세액공제

□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 제외)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소득세법」상 특별세액공제 항목으로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공제가 있음[22]

---

20) 「소득세법」상 세액공제 중 배당세액공제, 기장세액공제, 재해손실세액공제는 배당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에 한해 적용되므로 본문에서 제외함

21) 「소득세법」 제59조의3.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 등 과세가 이연된 소득이나 연금계좌에서 다른 연금계좌로 계약을 이전함으로써 납입되는 금액은 납입금액에서 제외됨

○ 보험료 공제: 근로소득자가 지출한 보장성 보험료(100만원 한도)의 12%를 세액공제함[23)]

-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료(100만원 한도)에 대해서는 15%의 공제율을 적용함

○ 의료비 공제: 근로소득자가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연령 및 소득요건 불필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적격 의료비(700만원 한도)를 지출하는 경우 지출액의 15%를 세액공제함[24)]

○ 교육비 공제: 근로소득자가 지출하는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연령요건 불필요)인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를 위한 일정 한도의 적격 교육비에 대해서는 지출액의 15%를 세액공제함[25)]

- 근로자 본인: 교육비 전액(대학원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수강료 포함)
- 유치원아, 영유아, 취학 전 아동, 초·중·고등학생: 1인당 연 300만원
- 대학생: 1인당 연 900만원

○ 기부금 공제: 거주자 및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지급한 기부금공제한도내의 기부금의 15%(3천만원 초과분 30%)를 세액공제함[26)]

- 법정기부금은 소득금액 범위 내에서 전액 공제 함
- 지정기부금은 소득금액의 30% 범위 내에서 공제함(다만, 종교단체기부금은 소득금액의 10% 범위 내)

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 월세액 세액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초과자 제외)의 월세 지급액(750만원 한도)의 10%를 세액공제함[27)]

---

22) 「조세특례제한법」 122조의3의 규정에 의해 성실사업자는 의료비 및 교육비에 대해 세액공제 신청할 수 있음

23)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1항

24)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

25)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26) 「소득세법」 제59의4 제4항

□ 정치자금기부금 세액공제는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에 기부한 정치자금에 대한 금액을 세액공제함[28]

○ 공제율은 기부금액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기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100/110, 3천만원 이하인 경우 15%, 3천만원 초과인 경우 25%의 공제율을 적용함

3) 표준세액공제

□ 특별소득공제와 특별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상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근로소득자는 연 13만원, 「소득세법」상 성실사업자는 연 12만원, 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로서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은 연 7만원을 세액공제함[29]

4) 근로소득세액공제

□ 특정지출에 대한 항목별 공제에 해당되지 않지만, 물가인상 등으로 인한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근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55%, 30%에 해당하는 금액(총급여별로 최고 74만원, 최저 50만원 한도)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함[30]

○ 산출세액이 130만원 이하인 경우 55%, 130만원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30%의 공제율이 적용되며, 총급여액이 증가함에 따라 공제한도는 점감적으로 조정됨

- 최고 공제한도는 총급여액 3,300만원 이하 구간에서 74만원임
- 총급여액 3,3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구간은 74만원에서 3,300만원 초과금액의 0.8%씩 66만원을 한도로 감액함
- 7천만원 초과 구간은 66만원에서 7천만원 초과액의 50%씩 50만원을 한도로 감액함

○ 일용근로자는 근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55%를 공제함

---

27)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28)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29) 「소득세법」 제59의4 제9항
30) 「소득세법」 제59조

〈표 Ⅱ-3〉 한국의 근로소득세액공제(2017)

산출세액	공제율	총급여액 수준별 공제한도
130만원 이하	55%	3,300만원 이하 : 74만원
130만원 초과	30%	3,3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 Min[(74만원-(총급여액-3,300만원)×0.8%), 66만원]
		7천만원 초과 : Min[(66만원-(총급여액-7천만원)×50%), 50만원]

자료:「소득세법」 제59조

□ 근로소득세액공제 규정의 연혁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물가인상에 따른 소득세 부담을 경감할 목적으로 1979년 8월 세법개정시 '임시특별세액공제'로 신설되어 1981년 12월 세법개정시 '근로소득세액공제'로 명칭이 변경되어 현재까지 운영됨[31)]

○ 신설 당시에는 근로소득자와 종합소득이 600만원 이하인 사업소득자를 대상으로 하여 1979년 하반기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함[32)]

○ 1980년 12월 세법개정시 저소득 근로소득자만을 적용 대상으로 하여 1981년에 한시적으로 적용하였다가, 1981년 12월 세법개정 이후 일몰기한 없이 영구적으로 운영됨[33)]

○ 본 규정은 1989년 1년간 잠시 폐지되었다가, 원천징수되는 과세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른 소득 간 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임금상승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990년부터 모든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재도입됨[34)]

○ 2015년 5월 13일 세법개정시 세액공제제도 전환에 따른 세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근로소득세액공제의 기준금액을 50만원에서 현행과 같이 130만원으로 상향조정함

---

31) (구)「소득세법」(법률 제3168호) 제78조의4

32) 1979년 7월분부터 동년 12월분까지의 근로소득과 1979년 제1기분 및 제2기분 중간예납에 한하여 적용함(소득세법 부칙 [1979. 8. 14 제3168호])

33) (구)「소득세법」(법률 제3271호) 제78조의4; 소득세법 부칙 [1980. 12. 13 제3271호], (구)「소득세법」(법률 제3472호) 제78조의4

34) (구)「소득세법」(법률 제4163호) 제72조; 안종범(2008), p.16

5) 외국납부세액공제

□ 항목별 공제에 해당되지 않지만, 국제적인 이중과세 경감을 위해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납부했거나 납부할 외국소득세액은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함[35)]

라. 저소득가정과 자녀양육에 대한 지원세제

1) 근로장려세제

□ 근로장려세제(근로장려금 제도)는 근로소득 수준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전문직종 제외)에게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로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됨[36)]

□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연간 총소득 요건, 배우자·부양가족 요건, 무주택 요건, 재산가액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연간총소득 요건: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인 가구

- 단독가구의 경우 1,300만원, 외벌이 가족가구의 경우 2,100만원, 맞벌이 가족가구(거주자의 배우자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합계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의 경우 2,500만원

○ 배우자·부양가족 요건: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하며, 부양자녀가 장애인의 경우에는 연령제한 없음
- 부모가 없는 손자·손녀 또는 형제·자매를 포함함

○ 재산 요건: 가구원 전원이 소유한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인 가구[37)]

---

35) 「소득세법」 제57조

36)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부터 제100조의13

- 재산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장려금의 50%만 수급함

○ 기타: 한국 국적 보유자(한국 국적보유자와 혼인한 국적 미보유자 포함)

○ 2017년 지급분부터 단독가구 수급자의 연령은 40세 이상으로 제한되며,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연령제한이 없음

□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계층의 소득 지원과 근로유인 제고를 위하여 점증·평탄·점감의 구간으로 구분하여 산정됨

○ 가구별 최대 77만원(단독가구), 185만원(외벌이 가족가구), 230만원(맞벌이 가족가구)의 장려금이 지급됨

〈표 Ⅱ-4〉 한국의 근로장려세제 장려금 산정(2016)

(단위: 만원)

가구원 구성		총급여액	근로장려금 지급액
단독 가구		0 ~ 600 미만	총급여액 등 × 77/600
		600 이상 ~ 900 미만	77 정액지급
		900 이상 ~ 1,300 미만	77 - [(총급여액 등 - 900) × 77/400]
가족 가구	외벌이	0 ~ 900 미만	총급여액 등 × 185/900
		900 이상 ~ 1,200 미만	185 정액지급
		1,200이상 ~ 2,100 미만	185 - [(총급여액 등 - 1,200) × 185/900]
	맞벌이	0 ~ 9,000 미만	총급여액 등 × 230/1,000
		9,000 이상 ~ 1,300 미만	230 정액지급
		1,300 이상 ~ 2,500 미만	230 - (총급여액 등 - 1,300) × 230/1,200]

주: 근로장려금이 1만 5천원 미만일 때 해당 근로장려금은 없는 것으로 하고, 근로장려금이 1만 5천원 이상 3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3만원으로 함(「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6 제4항)

자료: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 제1항

37) 2017년 4월 18일 이후 수급 분부터 2억원이고, 그 이전분은 1억 4천만원임

2) 자녀양육 지원세제

□ 현행 세법상 자녀양육 지원세제로는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세제가 있으며, 두 조세 지원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음[38]

가) 자녀세액공제

□ 자녀세액공제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자, 위탁아동 포함)에 대해 자녀 수, 자녀 연령, 출생 등 요건에 따라 일정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함[39]

○ 자녀 1명의 경우 연 15만원, 자녀 2명의 경우 연 30만원, 그리고 3명 이상은 연 30만원에 3명째부터 1명당 연 20만원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공제함

○ 6세 이하의 공제대상자가 2명 이상인 경우, 2명째부터 1명당 15만원을 세액공제함

○ 2017년 이후 출생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 1명당 연 30만원을 세액공제함

나) 자녀장려세제

□ 2014년 과세연도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 신청분부터 시행된 자녀장려세제는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4,000만원 미만이고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인 가구에 대해 자녀 1인당 50만원의 자녀장려금을 지급함[40][41]

○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수 및 소득구간에 따라 차등 지급됨

- 다만, 자녀장려금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받은 자는 신청할 수 없음

---

38)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의30 제1항

39) 「소득세법」 제59조의2

40) 재산요건은 2017년 4월 18일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함

41)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7부터 100조의31

〈표 Ⅱ-5〉 한국의 자녀장려세제 장려금 산정(2016)

(단위: 만원)

가구원 구성	총급여액 등	자녀장려금 금액
외벌이 가족가구	0 ~ 2,100 미만	자녀 1인당 50
	2,100 이상 ~ 4,000 미만	자녀1인당 [50 - (총급여-2,100) × 20/1,900]
맞벌이 가족가구	0 ~ 2,500 미만	자녀 1인당 50
	2,500 초과 ~ 4,000 미만	자녀 1인당 [50 - (총급여-2,500) × 20/1,500]

주: 장려금의 금액이 15,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함
자료: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9

3. 조세지원의 제한

□ 거주자의 종합소득세를 계산할 때 특별공제와 그 밖의 소득공제 중 일정 소득공제 금액의 합계액이 2,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의 적용을 배제함[42)]

○ 「소득세법」 제52조에 따른 특별소득공제 중 주택자금공제와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가 이에 해당함

-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에 따른 소득공제는 제외함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제16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출자나 투자 제외), 동법 제86조의3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동법 제87조 제2항에 따른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동법 제88조의4 제1항에 따른 우리사주조합 출자에 대한 소득공제, 동법 제91조의16에 따른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동법 제126조의2에 따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종합한도 대상임

42)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의2

□ 사업소득이 있는 납세의무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 및 부담세액 계산시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지원을 적용한 경우에는 최저한세 규정이 적용됨[43)]

○ 최저한세 규정은 사업소득자가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 세액감면, 세액공제의 적용으로 인한 조세부담액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조세부담의 형평성과 조세수입의 안정성을 목적으로 최소한의 세액을 부담하도록 하는 취지임

- 최저한세 규정이 적용되는 조세지원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제2항에서 열거함

○ 조세지원 적용 후 사업소득에 대한 세액이 동 조세지원을 적용하기 이전 산출세액의 45%(3천만원 이하 35%)보다 작은 경우 조세지원 적용 이전 세액의 45%(또는 35%)가 납부해야 할 세액이 됨

4. 근로소득세의 개정연혁

□ 2010년부터 2016년 사이 이루어진 주요 개정으로는 소득공제 항목 중 상당부분을 세액공제로 전환된 것과 근로장려 및 자녀장려를 위한 세제지원이 강화된 사항을 들 수 있음

가. 근로소득 필요경비

□ 2014년부터 근로소득공제의 공제율을 일부 구간 하향 조정함

○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구간과 1,500만원 이하 구간의 공제율을 각각 10%p씩 하향 조정함

○ 15%의 공제율을 적용하던 구간을 당초 총급여액 '1,5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 구간에서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구간으로 조정함

---

43)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제2항

○ 총급여액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여, 당초 5%를 적용하던 ‘1억원 초과’ 구간은 2%의 공제율을 적용함

〈표 Ⅱ-6〉 한국의 근로소득공제 공제율 개정사항(2014~2017)

개정 이전		개정 이후(2014~2017년)	
총급여액	공제율	총급여액	공제율
500만원 이하	80%	500만원 이하	70%
1,500만원 이하	50%	1,500만원 이하	40%
3,000만원 이하	15%	4,500만원 이하	15%
4,500만원 이하	10%	1억원 이하	5%
4,500만원 초과	5%	1억원 초과	2%

자료: 구「소득세법」 제47조 제1항(법률제11146호),「소득세법」 제47조 제1항(법률제12169호)

나. 인적공제와 항목별 공제

□ 부녀자공제를 근로장려세제와 연계하여 그 대상자를 2014년부터는 근로장려세제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자로 범위를 한정함

□ 2016년 1월 1일부터 기본공제 대상자 소득요건을 완화하여 당초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에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경우를 포함함

□ 2013년「소득세법」 개정으로 인해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관련 특별소득공제와 표준소득공제가 2014년부터 특별세액공제와 표준세액공제로 전환됨

○ 12%, 15%, 30%의 공제율이 항목별, 금액수준별로 달리 적용됨

- 보장성보험료는 12%(장애인보장성보험료 15%), 교육비와 의료비는 15%, 월세액은 10%의 공제율을 적용함
- 기부금은 금액별로 3천만원 이하는 15%, 3천만원 초과 25%(현행 2천만원 초과 30%)의 공제율을 적용함

○「조세특례제한법」상 월세액 소득공제도 2014년부터 세액공제로 전환됨

□ 다만, 보험료, 주택자금 지원, 기부금 등 일부 특정지출에 대한 항목별 공제는 소득공제로 유지됨

○ 보험료소득공제 중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관련 보험료와 주택자금 지원세제 중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과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10만원 이하의 정치자금기부금은 소득공제로 유지됨

□ 2015년 5월 13일 세법 개정시 2013년「소득세법」개정에 따른 근로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근로소득 세액공제의 산출세액 기준금액을 5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상향조정함

○ 공제한도를 기존 50만원에서 총급여액 구간별로 최대 74만원, 최소 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함

〈표 Ⅱ-7〉 한국의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개정사항(2013, 2014)

구분		2013년 귀속연도	2014년 귀속연도
보험료	보장성보험료	100만원 한도 소득공제	보험료 납입액(연 100만원 한도)×12% 세액공제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	100만원 한도 소득공제	보험료 납입액(연 100만원 한도)×15% 세액공제
의료비		한도 내에서 의료비 소득공제 - 본인·65세 이상·장애인 한도없음 - 부양가족의 경우 연 700만원 한도 - (총급여액의 3% 초과 시 공제 가능)	의료비 공제대상금액(총급여액 3% 초과분)×15% 세액공제 - 공제대상 의료비 지출 금액 한도는 종전과 동일
교육비		한도 내에서 교육비 소득공제 - 본인, 장애인: 한도 없음 - 취학 전 아동, 초·중·고생: 1명당 300만원 한도 - 대학생: 1명당 900만원 한도	교육비 공제대상금액×15% 세액공제 - 공제대상금액 한도는 종전과 동일
월세액		월세지급액의 50%, 연 300만원 한도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총급여 5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국민주택규모 주택 임차 월세액)	월세액 지급액(750만원 한도)×10%세액공제 (총급여 조건 7천만원 이하, 기타요건 종전과 동일)
기부금	정치자금 기부금	근로소득금액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10만원 초과 정치자금기부금 세액공제 - 3천만원 이하 15% - 3천만원 초과 25%
	법정기부금	근로소득금액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 3천만원 이하 15% - 3천만원 초과 25% 〈 공제한도 〉 - 법정기부금: 근로소득금액×100% - 지정(종교단체 외): 근로소득금액×30% - 지정(종교단체): 근로소득금액×10%
	지정기부금 (종교단체제외)	소득금액 등의 30%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지정기부금 (종교단체)	소득금액 등의 10%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표준공제		연 100만원 소득공제	연 13만원 세액공제

주: 기부금세액공제의 경우 2015년부터는 2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의 공제율을 적용함
자료: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관련 규정을 참조하여 저자 작성

다. 소득공제 종합한도

□ 2013년부터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특별소득공제에 대한 한도를 2,500만원으로 규정하는 소득세 특별공제 종합한도 규정을 신설함

○ 2014년부터 특별소득공제 중 특별세액공제로 전환된 항목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지정기부금은 소득공제 종합한도의 적용에서 제외됨

〈표 Ⅱ-8〉 한국의 소득공제 한도 개정사항(2013, 2014)

구분		2013년 귀속분	2014년 이후 귀속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소득세법」상 지정기부금		○	세액공제 전환으로 적용제외
특별공제	보장성 보험료 (장애인 전용 제외)	○	
	의료비(장애인 의료비 제외)	○	
	교육비(장애인 특수교육 제외)	○	
	기부금(법정 기부금 제외)	○	
	주택자금공제	○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	○
청약저축 등 소득공제		○	○
우리사주조합출연금 소득공제		○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	○
월세액 소득공제		-	적용제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

자료: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관련 규정을 참조하여 저자 작성

라. 근로장려세제와 자녀양육 지원세제

□ 근로장려세제의 경우 2008년 도입 당시에는 부양자녀가 있고 연소득 1,700만원 미만인 부부가구에 한해 적용했다가 최근 개정을 통해 적용대상 범위를 확대함

○ 2012년 신청분부터 부양자녀 수를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차등지원(70~200만원)하였다가, 2014년 신청분부터는 무자녀가구를 포함한 가구유형별 차등지원(단독·부부가구)로 전환함

○ 도입 초기에는 소득을 파악할 수 있는 근로자계층부터 적용하고, 2015년 신청분부터는 전문직종을 제외한 모든 사업자로 적용을 확대함[44)]

○ 지급대상에 2013년부터 60세 이상 단독가구를, 2016년부터는 50대 이상 단독가구를, 2017년부터는 40대 단독가구를 추가함

○ 2017년부터 급여액이 10%로 인상되어 최대지급액이 단독가구, 외벌이가구, 맞벌이가구별로 각각 77만원, 185만원, 230만원으로 상향 조정됨

〈표 Ⅱ-9〉 한국의 근로장려세제 급여액 개정연혁(2014~2017)

(단위: 만원)

가구원 구성	소득기준	개정이전(2014~2016년)	개정이후(2017년 귀속연도)
단독가구	1,300	70	77
외벌이가구	2,100	170	185
맞벌이가구	2,500	210	230

자료: 「조세특례제한법」상 관련 규정을 참조하여 저자 작성

□ 자녀장려세제가 2015년부터 운용됨에 따라, 이와 연계하여 2014년 기존 자녀양육 지원세제가 개편되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제도로 전환됨

○ 2015년부터 자녀장려세제에 의하여 저소득자(근로소득자 및 일부 사업소득자)에게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의 자녀장려금을 지급함

4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2 제4항

〈표 Ⅱ-10〉 한국의 자녀양육 지원세제 개정연혁(2013, 2014)

구분		2013년 귀속분	2014년 귀속분
소득공제	자녀 양육비	1인 100만원 - 만6세 이하 자녀·입양자·위탁아동	[자녀세액공제로 전환됨]
	출산·입양자	1인 200만원 - 기본공제대상자로서 해당 연도에 출생한 직계비속과 입양 신고한 입양자	[자녀세액공제로 전환됨]
	다자녀	자녀 2인 100만원, 자녀 3인 300만원, 자녀 4인 500만원	[자녀세액공제로 전환됨]
세액공제	자녀	[소득공제에서 전환됨]	- 자녀 1인 연 15만원, 자녀 2인 연 30만원, 자녀 3인 이상 연 30만원 + 셋째부터 1명당 20만원 가산 - 6세 이하 공제대상자녀 2인 이상: 둘째부터 1명당 15만원 - 해당 과세기간 출생,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 1명당 연 30만원

주: 2017년 이후 출생·입양자를 대상으로 하는 자녀세액공제는 첫째인 경우 30만원, 둘째인 경우 50만원, 셋째인 경우 70만원으로 세액공제액이 상향조정됨
자료: 「소득세법」상 관련 규정을 참조하여 저자 작성

Ⅲ. 주요국의 근로소득세 공제체계

□ 순소득과세원칙을 기반으로 하는 소득세제하에서는 소득획득과 관련된 필요경비를 공제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근로소득 역시 근로 제공 과정에서 지출된 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이 순소득과세원칙에 부합함[45]

□ 다만 근로소득 필요경비를 실제 지출한 비용을 기준으로 공제하는 경우 복잡한 조세행정 실무를 야기하고, 비용 일부가 중첩적 비용(mixed expenses)의 특성을 보인다는 측면에서 제한된 범위 내에서 공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임[46]

○ 실제 지출한 비용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근로소득 필요경비의 입증단계에서 해당 비용의 진위 여부 및 업무관련성에 대한 과세당국의 검토와 납세자의 대응절차가 관여되어 조세행정이 복잡해짐

○ 중첩적 비용이란 업무관련 지출과 개인적 소비(personal consumption)가 혼합된 경우를 의미하며, 통근비, 의복비, 출장비, 자녀보육비, 직무관련 교육비 등을 예시할 수 있음

□ 본 보고서에서는 근로소득 획득과정(근로 제공 과정)에서 근로소득자가 지출하는 필요경비 중에서 중첩적 비용에 대한 주요국의 세무 처리를 중심으로 살펴봄

○ 한편 조세행정의 간소화를 위해 일부 국가에서는 실제 지출한 비용의 공제 대신 개산공제를 선택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내용을 검토함

---

45) 소득의 개념을 순자산증가설(the accretion concept)에 기반을 둔 국가(미국, 일본)나 소득원천설(the source concept)에 기반으로 둔 국가(호주, 프랑스, 캐나다, 독일, 영국) 모두 공통적으로 해당함(Thuronyi et al., 2016, p.217)

46) Burns and Krever(1999), p.512

□ 그리고 소득세 과세대상 순소득의 산정을 위해 가족 구성원의 상황이나 특정 지출항목에 대해 일정한 공제를 허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이에 대한 내용도 검토함[47)]

○ 본 보고서에서는 가족 구성원의 상황에 따른 공제를 '인적공제'라고 하고, 특정지출 항목에 대한 공제를 '항목별 공제'라고 칭함

○ 인적공제는 납세자, 배우자, 기타 부양가족을 위한 기본적인 공제와 함께 경로·장애에 대한 추가공제로 구분함

- 근로장려세제나 자녀장려세제와 같은 세제지원은 저소득가정과 자녀양육에 대한 지원세제에서 설명함

○ 담세력에 영향을 미치는 특정지출 항목에 대해서 일정액을 공제하는 경우를 '특정지출에 대한 항목별 공제'라고 정의함

□ 인적 또는 항목별 공제는 일반적으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의 방법을 통하여 이루어지는데, 본고에서는 공제방법에 따른 구분이 아닌 인적 또는 항목별 공제의 대상 지출별로 구분하여 내용을 전개함

1. 미국

가. 개요

□ 최근 미국 개인소득세 공제체계의 특징적인 점은 조세행정의 간소화를 위한 개산공제의 적용 확대, 일정 소득수준 이상인 납세자에 대한 항목별 공제 및 인적공제의 제한, 그리고 저소득자에 대한 공제수준 확대를 들 수 있음

○ 특정지출에 대한 항목별 공제를 적용하는 납세자 수의 축소를 위하여 1986년 세법 개정 시 개산공제인 표준소득공제(standard deduction) 규정을 도입함

---

47) 응능과세원칙을 전제로 한 경제적 능력의 산정과 조세공평성·소득재분배를 위한 정책과 기부·저축·투자 등의 사회공동체 내 가치를 부여하는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을 위해 공제제도를 이용함

- 표준소득공제 수준은 1987년 당시에는 납세자 1인당 2,540달러(개별신고 기준)이었고, 2016년 현재 6,300달러임[48)]

○ 2013년부터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고소득자에게는 인적공제와 항목별 공제의 적용을 제한적으로 허용함

- 주정부 부과 제세금, 특정 이자비용, 기부금, 근로소득 필요경비를 포함한 기타공제 등 항목별 공제에는 지출항목의 개별 한도 외에도 항목별 공제의 통합한도규정이 적용되고, 인적공제는 조정총소득금액 수준에 따라 공제규모가 축소됨

○ 2009년 근로장려세제의 세액공제율을 인상하고 2011년 자녀보육세액공제의 기준금액을 상향조정함

□ 미국 개인소득세 공제제도는 항목별 공제(근로소득 필요경비에 대한 항목별 공제 포함)와 인적공제로 크게 구분할 수 있음

○ 근로소득 필요경비에 대한 항목별 공제는 납세의무 및 행정을 간소화하기 위해 항목별 공제의 일부로 처리함

○ 항목별 공제 중 주정부 부과 제세공과금, 특정 이자비용, 의료비 및 치과비용공제, 재해도난손실 공제, 기부금 공제, 근로관련 필요경비를 포함한 기타공제 등 6가지 항목별 공제는 개산공제인 표준소득공제(standard deduction)와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음

○ 인적공제로는 납세자,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 납세자 본인이 경로자 또는 장애인에 해당할 경우 이에 대한 추가공제, 그리고 저소득자 및 자녀양육에 대한 공제가 있음

---

48) Fuller professional Education, https://www.fulleredu.com/taxstats/fed-income-tax/individuals/standard-deduction.php(검색일자: 2017. 10. 13)

나. 근로소득 필요경비에 대한 항목별 공제

1) 보전되지 않는 근로소득 필요경비(non-reimbursed employee business expenses)

□ 근로자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소요한 지출은 총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고용주로부터 해당 지출을 보전받지 않는 경우에 한함[49]

○ 미국에서는 근로소득 필요경비 공제를 항목별 공제로 구분하며, 다른 항목별 공제와 합산한 금액과 표준소득공제 금액을 비교하여 납세자가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음[50]

- 실제 발생한 필요경비 공제는 납세자의 증명책임과 과세당국에 과도한 행정적 부담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납세의무 및 행정을 간소화하기 위함임

□ 근로소득 필요경비는 (i) 근로자의 업무수행과정에서 (ii) 발생되거나 지출된 소정의 비용으로 (iii) 통상적으로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제됨[51]

○ 주요 근로소득 필요경비는 아래와 같이 예시적으로 열거할 수 있음[52]

- 근무지 이전에 따른 이사비용
- 업무 관련 출장비는 근로업무 수행을 위해 통상적인 업무장소에서 벗어남으로써 (away from home) 발생한 출장비로 식대, 숙박, 교통비를 포함함[53]

---

49) IRC § 62(a)(2)(A)

50) Gravelle, Jane G., and Lowry, Sean(2014), p.3

51) Treas. Reg. § 1.62-2(f)(2); IRC § 162; 미국 국세청, https://www.irs.gov/publications/p529/ar02.html(검색일자: 2017. 5. 31)

52) 이외에도 소득공제가 허용되는 근로자가 부담한 보전되지 않은 근로소득 필요경비는 다음 예시와 같음(미국 국세청, https://www.irs.gov/publications/p529/ar02.html(검색일자: 2017. 5. 31) 업무관련 대손상각비용(business bad debt of an employee), 배임행위 배상보험비용(mal practice insurance premiums), 영업 관련 책임보험비용(business liability insurance premiums), 고용계약 위반에 따른 전고용주에게 지급하는 손해보상금, 업무관련 상공회의소 회비 및 전문단체 회비, 직장취업을 위해 소요된 취업비용(job search expenses)으로 현 직장에서 새로운 직장을 찾기 위하여 소요된 고용 및 재취업대행비용, 이력서 제출비용, 직장취업 관련 여비교통비, 고용주의 요청에 따른 건강검진비, 근로 관련 법률비용, 업무 관련 라이센스비, 근로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occupational taxes), 대학교수 연구비(research expenses of a college professor), 업무관련 전문서적 구독비용, 업무에 사용된 도구 또는 소모품, 노동조합 등 근로자 조직단체 비용

- 업무관련 교육비는 (i) 현 직업에 필요한 기술의 유지 및 향상을 위한 교육 또는 (ii) 현 고용주의 사업을 위하여 고용주나 관련 법령에 의한 요건을 충족시키는 데 필요한 교육이어야 함

○ 중첩적 비용은 전적으로, 그리고 배타적으로(wholly and exclusively) 근로업무에 이용된 부분에 한하여 공제를 허용함

- 작업복 구입비는 일상복으로 사용할 수 없는 작업복이나 유니폼, 안전을 위해 착용하는 모자, 장갑, 신발, 안경 등의 구입비용으로 고용주가 요구한 경우에 한함
- 근로자 소유의 컴퓨터 감가상각비용은 고용주의 사업을 위해 실질적으로 근로자 소유의 컴퓨터를 사용하고, 컴퓨터 없이는 적절한 근로 제공이 용이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공제할 수 있음
- 재택근무로 인한 홈오피스(home office) 운영유지비용은 고용주의 사업수행을 위해 정기적이고 배타적으로 주거주택을 사용하는 경우 운용비용과 주택 감가상각비를 소득공제할 수 있음

□ 또한 적격 교사가 교실에서 사용한 책, 소모품, 컴퓨터, 보충기자재에 대해 보전받지 않은 경우 최대 250달러까지 총소득에서 공제되며, 초과금액은 2% 한도가 적용되는 기타공제에 포함됨[54]

□ 근로소득 필요경비는 특정지출에 대한 항목별 공제 중 '기타공제대상 비용'과 합산하여 그 총액이 조정총소득금액의 2%를 초과하는 경우(2% 기준)에 그 초과분에 한하여 소득공제할 수 있고, 항목별 소득공제 통합한도의 적용을 받음

○ 기타공제대상비용에는 근로소득 필요경비 외에도 세금신고비용, 투자자문료(investment counsel fees), 금고대여료(safe-deposit box rent)가 있음

○ 소득공제 통합한도는 조정총소득금액이 일정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항목별 소득공제의 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으로 자세한 내용은 '라. 특정지출에 대한 항목별 공제의 1). 나) 항목별 소득공제의 통합한도' 편에서 후술함

---

53) IRC § 162(a)

54) IRC § 62(2)(D)

□ 근로관련 필요경비 신청현황(2% 기준 적용 전)을 살펴보면, 신청인원은 일정한 반면, 신청금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14년 기준으로 근로소득자의 47.94%가 근로소득 필요경비를 신청하였고, 당시 적용된 공제율은 11.33%임[55]

○ 근로관련 필요경비는 기타공제 항목에 포함되어 2% 기준을 적용받기 때문에 필요경비 공제의 실제 적용 현황은 파악할 수 없음

2) 자녀보육비

□ 근로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불하는 자녀양육비는 업무와 관련된 비용(business expenses)으로, 세액공제가 허용됨[56]

○ 1954년 이전에는 자녀에 대한 결정을 본질적으로 개인적 영역에 속한다고 간주하여 자녀보육비에 대해 소득창출활동이나 근로소득 획득을 위한 필요경비로서의 공제를 허용하지 않았음[57]

○ 그러나 여성의 사회진출이 증가함에 따라 자녀보육비가 근로업무 수행을 가능토록 하는 필수적인 비용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어 관련 비용이 공제 대상에 포함됨[58]

- 1954년에 부양자녀가 있는 여성 납세자를 대상으로 소득공제의 형태로 도입되었고, 1976년 세법개정 시 세액공제로 전환됨[59]

□ 현행 자녀보육비세액공제는 부부합산신고를 한 근로소득이 있는 납세자가 근로제공이나 구직을 목적으로 자녀나 부양가족의 보육을 위해 지출한 일정한도 내 특정 비용의 20~35%를 산출세액에서 공제토록 함

○ 여기서 '자녀나 부양가족'이란 13세 미만 자녀 또는 정신적·신체적으로 본인을 돌볼 수 없는 부양가족을 의미하며, '근로소득(earned income)'은 임금, 급여, 기타 과

---

55) IRS(2016), 「Table 2.1 2010~2014」,연도별

56) IRS(2016d)

57) Smith v. Commissioner(2d Cir.1940); K, Pratt(2014)

58) Popkin(1975)

59) Int. Rev. Code of 1954, ch. 736, § 214(a), 68A Stat. 70.; IRC § 21

세대상 종업원 혜택, 자영업자 사업소득을 의미함

○ 대상비용은 일 8시간 이상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탁아비용, 보육비용, 가사서비스 등이 있음

○ 공제율이 적용되는 기준금액은 실제 지출비용과 아래 항목을 비교하여 더 적은 금액으로 함

- ① 자녀 1인에 대해 3,000달러(자녀 2인 이상일 경우 6,000달러) ② 납세자의 근로소득(배우자가 있는 경우 두 배우자의 근로소득 중 더 적은 금액) ③ 학생인 배우자, 근로소득이 없거나 적은 경우에는 자녀 1인당 250달러(자녀가 2인 이상일 경우 500달러)

□ 자녀보육비세액공제의 공제율은 조정총소득 수준에 따라 최저 20%에서 최고 35%가 적용됨

○ 조정총소득이 15,000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35%의 공제율이 적용되고, 15,000달러를 넘게 되면 초과소득 2,000달러당 1%씩 낮아짐

○ 조정총소득이 43,000달러를 초과하면 20%의 공제율이 적용됨

□ 자녀보육비세액공제의 적용현황을 살펴보면, 신청납세자 수와 신청규모는 매년 완만하게 증가함

○ 신청인원은 2010년 633만 8천명에서 2014년 634만 1천명으로 증가하고, 공제 규모는 2010년 34억달러에서 2014년 35억달러로 완만하게 증가함[60]

다. 인적공제

□ 미국 인적공제는 1인당 4,050달러(2016년 기준)를 소득공제하기 때문에 공제금액이 높은 편이나, 적용요건이나 대상범위가 상대적으로 엄격하여 제한적으로 적용됨

---

60) IRS(2016), 「Table A. All Returns: Selected Income and Tax Items in Current and Constant 1990 Dollars, Tax Years 1990~2014」, 연도별

○ 기본공제의 경우 연령·소득요건 이외 실제 생활비 부담 여부에 따른 부양요건의 충족을 요구하기 때문에 적용대상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임

○ 경로자 및 장애자를 대상으로 하는 추가인적공제 역시 그 대상을 저소득자인 납세자 본인과 배우자에 한정함

○ 2013년부터 조정총소득금액이 250,000달러(2013년 기준, 개별신고) 이상인 납세자를 대상으로, 소득규모별 인적공제 수준을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규정(phaseout of exemption)을 신설하여 도입함

- 개별신고 납세자의 조정총소득이 372,500달러(2013년 기준)를 초과하면 인적공제의 적용을 받지 못함

1) 기본공제

□ 납세자 본인, 배우자, 부양자녀 및 기타 부양가족에 대하여 1인당 4,050달러(2016년 개별신고 기준)의 소득공제가 허용됨

○ 부양자녀의 경우 연령, 주거, 부양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61]

- 19세 이하(학생의 경우 24세 이하, 장애인의 경우 연령요건 없음)로 과세연도 중 절반 이상 기간 동안 납세자와 주거를 같이하여야 함
- 자녀가 자녀 본인의 부양금액에 대해 50%를 초과하는 금액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인적공제 대상에서 배제됨

○ 기타 부양가족은 3촌 이내 친족으로 미국 시민권자·국적자·거주자, 캐나다 또는 멕시코 거주자로서 소득요건 및 부양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총소득이 1인당 인적공제 금액 미만이어야 하고,
- 연간 부양가족 생활비의 50%를 초과하는 금액을 납세자가 부담하여야 함

61) 이정미(2016), p.68

〈표 Ⅲ-1〉 미국 인적공제 금액(2016)

(단위: 달러)

세무신고 형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개별신고	4,050	4,050	1인당 4,050
부부합산신고	9,100		1인당 4,050

주: 배우자는 소득이 없고, 세무신고 제출의무자가 아니며, 다른 납세자의 부양가족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
자료: OECD(2017), p.544; IRS(2016b), p.25

2) 경로·장애 세액공제(credit for the elderly and the disabled)[62]

□ 납세자 본인의 연령이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장애가 있을 경우에는 소정 기준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로 신청할 수 있음

○ 다만, 실질적인 소득창출활동(substantial gainful activities)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적용 배제하고, 조정총소득(AGI)금액이나 비과세 사회보장급여액(social securities benefits), 종신연금, 장애연금 등의 비과세 소득금액이 일정 한도액 미만이어야 함

- 예를 들어 개별신고 및 세대주 신고의 경우 조정총소득금액이 17,500달러 미만이거나 비과세 사회보장급여액이 5,000달러 미만이어야 함

○ 비과세 사회보장급여 등이 있거나 조정총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비과세 사회보장급여 및 조정총소득 조정액을 개시금액에서 차감함

- 조정총소득 조정액이란 조정총소득에서 세무신고별 일정액을 차감한 금액의 50%를 의미하는데, 차감되는 금액은 개별신고, 세대주 신고의 경우 7,500달러, 부부합산신고의 경우 10,000달러, 부부개별신고의 경우 5,000달러임
- 개시금액(initial amount)은 개별신고와 세대주 신고, 부부합산신고(65세 미만, 1인 장애인)의 경우 5,000달러, 부부합산신고(65세 이상, 2인 모두 장애인)의 경우 7,500달러, 부부개별신고는 3,750달러임

62) 미국 국세청, https://www.irs.gov/publications/p524/ar02.html(검색일자: 2017. 6. 1)

〈표 Ⅲ-2〉 미국 경로·장애 세액공제 소득요건 규정(2016)

(단위: 달러)

세무신고 유형		소득요건	
		조정총소득(AGI)	비과세 사회보장급여 등
개별신고, 세대주신고		17,500	5,000
부부합산 신고	적격 배우자 1인	20,000	5,000
	적격 배우자 2인	25,000	7,500
부부개별신고		12,500	3,750

자료: 미국 국세청, https://www.irs.gov/publications/p524/ar02.html(검색일자: 2017. 9. 6)

3) 인적공제 한도 및 인적공제 적용현황

□ 2013년부터 조정총소득금액이 법에서 정한 금액(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소득에 따라 점진적으로 인적공제 규모가 축소됨

○ 개별신고 기준으로 기준금액이 259,4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되는 금액 2,500달러마다 2%씩 축소되고, 381,9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인적공제의 적용이 배제됨

- 부부개별신고의 경우에는 1,250달러마다 2%씩 감액됨

〈표 Ⅲ-3〉 미국 인적공제의 한도 및 적용배제(2016)

(단위: 달러)

세무신고 형태	인적공제의 축소가 개시되는 조정총소득 기준금액	인적공제의 적용이 배제되는 조정총소득금액 기준금액
개별신고	259,400	381,900
세대주신고	285,350	407,850
부부개별신고	155,650	216,900
부부합산신고	311,300	433,800

자료: OECD(2017), p.544; IRS(2016b), p.23

□ 인적공제의 한도규정이 2013년에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 인적소득공제 규모는 매년 증가함

○ 공제규모는 2010년 1조 49억달러에서 2014년 1조 122달러로 약 6.89% 증가하고, 신청인원은 2010년 2억 8,800만명에서 2014년 2억 9천만명으로 증가함[63]

- 1인당 인적공제액은 2010년 3,647달러에서 2014년 3,862달러로 상향조정됨

라. 특정지출에 대한 항목별 공제

□ 특정지출에 대한 항목별 공제는 조정총소득 수준에 따라 공제액 규모가 결정되는 의료비, 기부금, 재해손실 등에 대한 항목별 소득공제와 그 외 교육비, 개인퇴직연금 불입금 등에 대한 항목별 세액공제가 있음

○ 여기서 항목별 소득공제는 조정총소득에서 차감하기 때문에 'below the line deduction'이라고도 하며, 표준소득공제와 대체하여 선택적으로 적용함[64]

□ 미국은 행정절차의 간소화와 고소득자에 의한 과도한 항목별 공제의 적용을 제한하기 위하여 높은 수준의 표준소득공제를 적용함

○ 1986년 세법개정(the Tax Reform Act of 1986)에서 항목별 공제를 적용하는 납세자 수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표준소득공제(standard deduction)의 수준을 대폭 상향조정함[65]

○ 2017년 트럼프정부 역시 주정부 부과 제세금, 특정 이자비용, 기부금 등 항목별 공제의 적용이 고소득자에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항목별 공제의 폐지를 목적으로 표준소득공제의 수준을 상향조정한다는 발표를 하였음[66]

---

63) IRS(2016), 「Table 1.3 All Returns: Sources of Income, Adjustments, Deductions, Credits, and Tax Items, by Marital Status」, 연도별

64) 총소득에서 차감되는 공제항목을 'above the line deduction(ALD)'이라고 하고, 총소득에서 ALD를 차감하여 조정총소득(adjusted gross income, AGI)을 산출함. 조정총소득은 항목별 공제수준을 결정하는 기준이 됨

65) Victor Thuronyi, Kim Brooks, and Borbála Kolozs(2016), p.220, 각주 46

□ 표준소득공제와 항목별 소득공제 현황을 살펴보면, 표준소득공제 인원은 매년 증가하였으나, 항목별 소득공제 규모가 표준소득공제액보다 상대적으로 높음

○ 항목별 소득공제를 적용한 납세자의 비중은 2010년 30%에서 2014년에 27%로 낮아졌으나, 항목별 소득공제 대비 표준소득금액 비중은 2010년 1.65배에서 2014년 2.67배로 증가함

○ 2013년 항목별 소득공제 총액한도 규정의 재도입으로 공제규모는 2012년 1조 2,387억달러에서 2013년 1조 1,886억달러로 축소함

〈표 Ⅲ-4〉 미국 연도별 표준소득공제 및 항목별 소득공제 현황(2010~2014)

(단위: 천명, 백만달러)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표준 소득공제	인원	106,358	109,831	110,910	115,186	117,405
	금액	738,086	768,634	797,402	848,646	876,237
항목별 소득공제	인원	46,645	46,294	45,582	44,330	43,965
	금액	1,216,667	1,218,497	1,238,693	1,188,595	1,206,705

자료: IRS(2016), 「Table A. All Returns: Selected Income and Tax Items in Current and Constant 1990 Dollars, Tax Years 1990~2014」, 연도별

66) The Washington Post, 「Trump to propose large increase in deductions Americans can claim on their taxes」, 2017. 4. 25, https://www.washingtonpost.com/business/economy/washington-braces-for-details-of-trumps-tax-reform-plan/2017/04/25/1fba8b30-29df-11e7-a616-d7c8a68c1a66_story.html?utm_term=.2cde11547350(검색일자: 2017. 7. 21)

1) 항목별 소득공제

가) 개요

□ 항목별 소득공제는 후술하는 표준소득공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의료비와 치과비용, 재해손실비용, 기타공제 등의 경우에는 최소지출액을 초과하는 부분(ceiling limit)에 한하여 소득공제됨

○ 최소지출액 초과규정은 행정절차의 간소화 및 과도한 소득공제의 적용제한을 위한 것임

□ 항목별 소득공제 대상 지출은 ① 의료비와 치과비용 ② 대출이자비용 ③ 제세공과금 ④ 재해손실비용 ⑤ 기부금 ⑥ 근로소득 필요경비를 포함한 2% 기준대상 기타소득공제가 있음

□ 소정의 의료비와 치과비용은 해당 과세연도 중 지출한 금액이 조정총소득의 10%(65세 이상 7.5%)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소득공제할 수 있음

○ 납세자 본인, 배우자, 기타 부양가족을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로 보전되지 않은 부분에 한하여 적용됨

□ 주택취득 및 담보대출 이자비용, 과세대상 투자소득 관련 차입이자비용 등 개인적 이자비용은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할 수 있음

□ 납세자는 주정부나 지방정부에 납부한 소득세 등 제세공과금을 공제할 수 있음[67]

○ 주정부 등에 납부한 소득세와 판매세(sales tax) 중 선택하여 공제할 수 있음

- 연방정부 소득세, 상속(estate) 및 증여세, 사회보장세, 자영업세 등은 공제항목에서 배제함

---

67) 이정미(2016), p.185

□ 소정의 기부금은 조정총소득금액의 50%(정부기관 등), 30%(비영리 적격기관), 20%(비영리 적격단체, 자본소득재산)를 한도로 소득공제가 허용되며, 한도를 초과하여 공제되지 않은 기부금은 5년 동안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음

□ 재해손실비용공제는 비사업용 자산의 재해나 도난 등으로 인한 손실금액이 100달러 이상이거나 조정총소득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소득공제할 수 있음

○ 보전되는 경우를 제외하며, 자산의 손실은 구별할 수 있어야 하며 갑작스럽거나 예상하지 못한 비일상적인 비용이어야 함

□ 2% 기준 기타소득공제에는 근로소득 필요경비, 세무신고비용 등이 포함되며, 조정총소득의 2%를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분에 한하여 소득공제할 수 있음

○ 근로소득 필요경비에 대한 상세내용은 '나. 근로소득 필요경비에 대한 항목별 공제'편에서 전술함

나) 항목별 소득공제의 통합한도

□ 2013년부터 항목별 소득공제의 총액을 소득수준에 따라 점진적으로 감액하는 규정을 재도입하였는데, 이를 '항목별 소득공제의 통합한도(the itemized deduction phaseout, pease limitation)'라고 함[68]

○ 본 규정은 2006년부터 2009년에 걸쳐 적용되는 소득수준이 점차 하향조정된 이후, 2010년부터 2012년까지 한시적으로 폐지되었다가, 2013년 재도입되었음

○ 본 규정은 납세자의 조정총소득금액이 일정수준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항목별 소득공제신청합계액에서 차감하여 소득공제액을 감액함

68) Center on Budget and Policy Priorities, 「"Pease" Provision in Fiscal Cliff Deal Doesn't Discourage Charitable Giving and Leaves Room for More Tax Expenditure Reform」, https://www.cbpp.org/research/pease-provision-in-fiscal-cliff-deal-doesnt-discourage-charitable-giving-and-leaves-room(검색일자: 2017. 8. 25)

- 감액되는 금액은 항목별 소득공제액의 20% 한도로 하며, 감액되기 시작하는 조정총소득액(기준금액)은 개별신고의 경우 259,400달러(2016년)임

○ 제세공과금, 이자비용, 기부금, 업무관련 비용 및 기타비용 등의 항목별 소득공제가 항목별 소득공제의 통합한도 적용대상 항목이고 의료비 및 치과비용과 재해도난손실에 대한 소득공제는 적용배제됨

〈표 Ⅲ-5〉 미국 항목별 소득공제의 감액이 개시되는 기준금액(2013, 2016)

(단위: 달러)

신고방법	2013	2016
개별신고	250,000	259,400
세대주신고	275,000	285,350
부부합산신고	300,000	311,300
부부개별신고	150,000	155,650

자료: IRS(2016b)

다) 최저한세제도

□ 미국은 과도한 조세부담의 경감을 제한함으로써 조세수입의 감소를 방지하고 조세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최저한세제도(alternative minimum tax, AMT)를 시행함[69]

○ 비과세소득과 같은 우대항목을 가산하고, 공제항목이나 이연과세항목 등 조정항목을 가감하여 계산한 최저한세 부담액에서 일반 소득세액(regular income tax)을 차감하여 산출한 금액을 추가 최저한세액으로 납부함

- 면세이자, 1987년 이전 부동산 및 임대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한도초과, 소규모 주식양도소득 등 우대항목(tax preference items)을 일반 소득세 과세표준에 가산함

69) 이정미(2016), p.212.

- 감가상각비, 소정의 스톡옵션행사이익, 의료비 한도액 재계산, 주택담보대출이자의 가산, 제세공과금의 가산, 인적공제의 가산 등 조정항목을 가감함
- 조정항목을 가감한 후 최저한세 공제금액(exemption)을 차감하는데, 공제금액은 개별신고의 경우 53,900달러, 부부합산신고의 경우 83,800달러, 부부개별신고의 경우 41,900달러임[70]

○ 개별신고, 세대주신고, 부부합산신고의 경우 과세표준 186,300달러 이하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26%의 세율을, 186,300달러를 초과하는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28%의 세율을 적용함[71]

- 부부개별신고의 경우 과세표준 기준금액은 93,150달러임

2) 표준소득공제

□ 납세자는 의료비·치과비용, 특정 대출이자비용, 주정부 부과 제세공과금, 재해손실비용, 기부금, 근로소득 필요경비를 포함한 2% 기준대상의 기타소득공제 지출액 등을 소득공제하는 대신 일정액의 표준소득공제를 선택할 수 있음

○ 표준소득공제는 납세자 본인에 대한 공제, 납세자 본인에 대한 추가공제,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로 구분됨

○ 납세자에게 적용되는 일반적인 표준소득공제금액은 개별신고 기준 6,300달러임

○ 미국 거주자인 납세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65세 이상이거나 시각 장애인인 경우에는 소득공제액은 7,850~9,400달러(개별신고 기준)으로 상향조정됨

○ 부양가족에 대한 표준소득공제(a dependent's basic standard deduction)는 ① 1,050달러, ② 해당 부양가족의 근로소득(표준소득공제금액 6,300달러 한도), ③ 350달러 중 적은 금액으로 계산됨

---

70) 최저한세 과세표준이 개별신고와 세대주의 경우 119,700달러, 부부합산신고의 경우 159,700달러, 부부개별신고 79,45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저한세 공제금액에서 차감함

71) IRS(2017)

〈표 Ⅲ-6〉 미국 표준소득공제(2016)

(단위: 달러)

구분	표준소득공제금액(일반)	구분	표준소득공제액 (65세 이상, 시각장애인)
개별신고	6,300	개별신고	7,850 ~ 9,400
세대주신고	9,000	세대주신고	10,850 ~ 12,400
부부합산신고	12,600	부부합산신고	13,850 ~ 17,600
부부개별신고	6,300	부부개별신고	7,550 ~ 11,300

자료: OECD(2017), p.544; IRS(2016b), p.25

3) 항목별 세액공제[72]

가) 교육비 세액공제[73]

□ 교육비 세액공제에는 미국시민기회 세액공제(American Opportunity Tax Credit)와 평생교육비 세액공제(Lifetime Learning Credit)가 있으며, 이 공제들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음

○ 전자는 고등학교 졸업 후 4년제 고등교육 학위과정의 학생 1인당 첫 2년간 교육비 등에 대해 최대 2,500달러의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음

○ 후자는 대학 및 대학원 교육을 위한 교육비에 대해 연도 햇수의 제한 없이 납세자 기준으로 최대 2,000달러의 세액공제를 제공함

---

72) 항목별 세액공제로는 교육비나 퇴직연금저축 이외에도 입양비용이나 주택취득 관련 공제, 대손채권공제 등이 있으나, 본문에서는 제외함

73) 미국의 교육비 관련 세제지원은 교육비 세액공제와 '나. 편'에서 설명한 근로소득 필요경비 중 업무관련 교육비 공제 외에도 총소득에서 소득공제하는 항목(the above line deduction)로 구분되는 학자금 대출 이자비용 공제와 적격 수업료 등(qualified tuition and fees) 공제가 있음. 적격 수업료 등 공제는 교육비 세액공제와 중복적용할 수 없으며, 부부합산신고 또는 미혼, 세대주 신고에서만 적용됨. 적격 수업료 등 공제는 납세자 본인, 배우자, 기타 부양가족의 고등교육기관 등록(enrollment)를 위한 수업료(tuition)는 등록을 한 해당 과세연도와 그다음 과세연도의 첫 3개월 동안 시작되는 학업 기간에 대한 비용에 한함. 납세자의 조정총소득 수준에 따라 공제 한도가 결정되는데, 개별신고의 경우 조정총소득 80,000달러 초과 시, 부부합산신고의 경우 160,000달러 초과 시에는 공제적용을 배제함(미국 국세청, https://www.irs.gov/publications/p970/ch06.html(검색일자: 2017. 6. 8); 이정미(2016), p.174)

□ 미국시민기회 세액공제는 2009년에 'The Hope Scholarship Credit'이라는 명칭으로 도입되었고, 본인, 배우자, 기타 부양가족이 고등학교 졸업 후 4년 동안의 학위를 위해 적격 교육기관에 지출한 수업료, 등록금 등에 대해 1인당 최대 2,500달러까지 세액공제할 수 있음[74]

○ 학생 1인 기준으로 첫 해에는 100%의 공제율이, 다음 해에는 25%의 공제율이 적용됨
- 미사용 세액공제액은 40%(최대 1,000달러 한도)까지 환급할 수 있음

○ 세액공제액은 조정총소득 수준에 따라 축소되며, 조정총소득 180,000달러(부부합산신고의 경우이며 개별신고는 90,000달러) 초과 시 세액공제의 적용을 배제함

〈표 Ⅲ-7〉 미국시민기회 세액공제(2016)

(단위: 달러)

세액공제 적용액	조정총소득금액 기준	
	개별신고	부부합산신고
세액공제액 전액	0 ~ 80,000	0 ~ 160,000
세액공제액 감액	80,001 ~ 90,000	161,000 ~ 180,000
세액공제 배제	90,001 ~	180,001 ~

자료: 미국 국세청, https://www.irs.gov/newsroom/american-opportunity-tax-credit-questions-and-answers(검색일자: 2017. 9. 6)

□ 평생교육비 세액공제는 납세자 본인, 배우자, 부양자녀의 대학, 대학원, 직업기술취득 및 향상을 위한 전문과정 등 적격 교육기관(eligible educational institution)에 대한 교육비에 대해 납세자별 최대 2,000달러의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음

○ 납세자를 기준으로 최대 10,000달러에 대해 20%의 공제율이 적용되며, 교육비 사용연도의 제한이 없음

74) 2008년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침체와 높은 대학등록금으로 인해 중산층에게 제한된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2009년 미국 회복 및 재투자법(The 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of 2009) 개정 시 미국시민기회 세액공제(American opportunity credit)를 신설 도입하여 그 범위를 확대함(미국 국세청, https://www.irs.gov/newsroom/american-opportunity-tax-credit-questions-and-answers(검색일자: 2017. 8. 13)

○ 부부합산신고 기준 수정조정총소득이 111,000달러(그 외 55,0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세액공제의 규모를 감액하고, 180,000달러(그 외 90,0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의 적용을 배제함

〈표 Ⅲ-8〉 미국 평생교육비 세액공제(2016)

(단위: 달러)

세액공제 적용액	조정총소득금액 기준	
	개별신고	부부합산신고
세액공제액 전액	0 ~ 55,000	0 ~ 111,000
세액공제액 감액	55,000 ~ 65,000	111,000 ~ 131,000
세액공제 배제	65,001 ~	131,001 ~

자료: 미국 국세청, https://www.irs.gov/publications/p970/ch0 3.html(검색일자: 2017. 9. 6)

나) 퇴직연금저축

□ 퇴직연금저축세액공제(Retirement Saving Contribution Credit)는 근로자가 연금저축에 불입하는 기여금에 대해 10%, 20%, 50%의 공제율을 적용한 금액을 2,000달러(부부합산의 경우 4,000달러)를 한도로 세액공제함

○ 조정총소득금액이 30,751달러(개별신고) 이상인 경우에는 세액공제 적용이 배제됨

〈표 Ⅲ-9〉 미국 퇴직연금저축세액공제(2016)

(단위: 달러)

공제율	조정총소득금액 기준		
	개별신고	세대주신고	부부합산신고
기여금의 50%	0 ~ 18,500	0 ~ 27,750	0 ~ 37,000
기여금의 30%	18,501 ~ 20,000	27,751 ~ 30,000	37,001 ~ 40,000
기여금의 20%	20,001 ~ 30,750	30,001 ~ 46,125	40,001 ~ 61,500
기여금의 0%	30,751 ~	46,126 ~	61,501 ~

자료: 미국 국세청, https://www.irs.gov/retirement-plans/plan-participant-employee/retirement-savings-contributions-savers-credit(검색일자: 2017. 9. 6)

마. 저소득가정과 자녀양육에 대한 지원세제

1) 근로장려세액공제(earned income tax credit, EIC)

□ 저소득자(low income worker)에게는 환급형 근로장려세액공제(Refundable Earned Income Tax Credit)가 허용됨[75]

○ 저소득자란 근로소득 기준금액이 최고 53,505달러(부부합산 기준) 미만인 납세자를 의미함

- 개별신고, 세대주신고, 부부개별신고인 경우: 적격 자녀의 인원에 따라 최저 14,880달러 미만 최고 47,955달러 미만
- 부부합산신고의 경우: 적격 자녀의 인원에 따라 최저 20,430달러 미만 최고 53,505달러 미만

○ 근로소득(earned income)이란 임금, 급여, 기타 과세대상 종업원 혜택 및 자영업자의 사업소득을 의미함

○ 이자소득(비과세포함), 배당소득, 임대 및 로열티 소득, 양도소득 등 투자소득이 3,4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의 적용을 배제함

□ 근로장려세액공제 수준은 점증-평탄-점감 구간으로 구분되는데, 납세자가 부양하는 자녀의 수와 소득구간에 따라 34%, 40%, 45%의 공제율(점증구간)이나 15.98%, 21.06%의 공제율(점감구간)이 적용됨

○ 납세자가 자녀가 없는 경우(납세자의 연령이 25세 이상 65세 미만)에는 7.65%의 공제율이 적용됨

- 점증구간은 근로소득 6,600달러로 종료되고, 점감구간은 8,300달러에서 개시되며, 최대 장려금은 506달러임

---

75) 미국 국세청, https://www.irs.gov/credits-deductions/individuals/earned-income-tax-credit(검색일자: 2017. 6. 1)

○ 자녀는 19세 미만(학생의 경우 24세 미만)으로 과세연도 중 절반 이상 기간 동안 납세자와 주거를 같이하여야 함

- 자녀가 1인일 경우 근로소득 9,900달러로 종료되는 점증구간에서는 34%의 공제율(한도)이 적용되고, 근로소득 18,200달러부터 개시되는 점감구간에서는 15.98%의 공제율이 적용됨
- 자녀가 2인(3인 이상)일 경우 근로소득 13,900달러로 종료되는 점증구간에서는 40%(45%)의 공제율이 적용되고, 근로소득 18,200달러부터 개시되는 점감구간에서는 21.06%의 공제율이 적용됨

○ 조정총소득금액이 일정수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적용배제하는데, 자녀의 수와 세무신고방법에 따라 조정총소득금액의 수준은 차이가 있음

- 예를 들어,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개별신고 기준 14,880달러(부부합산신고 20,43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적용배제함

〈표 Ⅲ-10〉 미국 근로장려세액공제(EIC)(2016)

(단위: %, 달러)

자녀수	점증(Phase-in)		점감(Phase-out)		EIC 최대금액	적용배제 조정총소득	
	공제율	점증종료 소득금액	공제율	점감개시 소득금액		개별신고, 세대주신고, 부부개별신고	부부 합산신고
0명	7.65	6,600	7.65	8,300	506	14,880	20,430
1명	34	9,900	15.98	18,200	3,372	39,296	44,846
2명	40	13,900	21.06	18,200	5,572	44,648	50,198
3명 이상	45	13,900	21.06	18,200	6,269	47,955	53,505

자료: IRS(2016e), p.32

□ 근로장려세액공제 규모는 2010년 588억달러에서 2014년 652억달러로 확대된 반면, 신청인원은 2011년 2,714만 명을 최고점으로 하였다가 감소하여 2014년 현재 2,666만명임[76]

76) 미국 국세청, https://www.eitc.irs.gov/EITC-Central/eitcstats/2010(검색일자: 2017. 6. 7)

2) 자녀세액공제(tax credit for each qualifying child)·추가자녀세액공제(additional child tax credit)

□ 납세자 부양가족 중 17세 미만 자녀에 대하여 자녀 1인당 최대 1,000달러까지 세액공제를 허용함

○ 납세자의 수정조정총소득(modified AGI)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 1,000달러당 50달러씩 자녀세액공제액이 점진적으로 축소됨

- 수정된 조정총소득 기준금액은 부부합산신고의 경우 110,000달러, 개별신고 및 세대주 신고는 75,000달러, 부부개별신고는 55,000달러임

○ 차감할 소득세부담액의 부족으로 인한 미사용 자녀세액공제액은 3,000달러를 초과하는 근로소득의 15% 범위 내에서 환급(추가자녀세액공제)할 수 있음

- 추가자녀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개별신고 기준 55,000달러(부부합산신고 기준 110,000달러)보다 적은 경우 신청할 수 있음

□ 신청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 신청인원 4,500만명, 신청금액 521억달러를 최고점으로 하였다가 2014년 현재 4,400만명, 506억달러로 신청인원과 적용규모가 하향추세를 보임[77]

2. 프랑스

가. 개요

□ 프랑스 개인소득세 공제체계의 특징으로서 부양자녀가 있는 세대의 세부담 완화를 위하여 가족계수제도를 운용한다는 점과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에 따른 가사비용 및 자녀 보육비에 대한 조세지원을 들 수 있음

---

77) IRS(2016), 「Table A. All Returns: Selected Income and Tax Items in Current and Constant 1990 Dollars, Tax Years 1990~2014」, 연도별

○ 19세기 후반 이후 출산율의 현저한 저하와 인구감소라는 사회적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가족보호라는 정책적 목표를 위한 재정 및 조세정책이 전방위적으로 시행된 것으로 판단됨[78)]

□ 근로소득 필요경비에 대한 항목별 공제는 실제 지출한 비용의 공제 또는 개산공제를 선택할 수 있지만, 실제 지출한 비용에 대한 입증책임과 신고의무가 엄격하여 대다수 근로자는 개산공제를 선택하는 것으로 판단됨[79)]

○ 프랑스는 중첩적 비용에 대해 사적 측면과 공적 측면으로 배분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상당한 범위의 실제 지출한 업무관련 비용의 공제를 허용함

○ 이 경우 공제된 비용에 대해 납세자는 입증책임이 있으며 고용주는 통근비용이나 출장비 등에 대한 보전 여부를 과세당국에 보고해야 함[80)]

□ 의료비에 대한 공제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근로장려세제를 사회복지제도로 통합하여 운영한다는 점에서, 프랑스는 재정지출 측면을 고려하여 조세지원정책을 운영하는 것으로 판단됨

○ 공적 의료시스템의 이용가능성을 이유로 의료비 공제는 허용하지 않음

○ 근로장려세제인 환급형 세액공제(prime pour l'emploi, PPE)규정이 최근 재정지출의 최저임금제도와 통합됨

나. 근로소득 필요경비에 대한 항목별 공제

□ 근로소득 획득을 위한 필요경비로서 사회보장세 관련 기여금(social security contribution)공제, 보편적 사회기여금(Generalized social contribution)공제와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음

---

78) 민유기(2006), pp.143~176.

79) Ault, Hugh J., Brian J. Arnold, and Guy Gest(2010), p.254

80) 프랑스 공공재정국, http://bofip.impots.gouv.fr/bofip/2453-PGP(검색일자: 2017. 7. 27)

□ 사회보장세 관련 기여금과 보편적 사회기여금은 근로소득의 획득과정에서 직접적으로 발생된 비용은 아니지만 근로소득자에게 의무적이고 강제적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근로소득의 순소득 계산 시 소득에서 공제함

○ 사회보장세 관련 기여금은 노령연금, 공적의료보험, 고용보험, 의무적 추가연금보험과 추가의료보험 등이 있으며, 노령연금, 공적의료보험, 고용보험은 한도 없이 전액 공제하며 그 외 항목은 일정한도 내에서 공제함

- 의무적 추가연금보험은 연간 사회보장세 상한금액의 8%를 한도로 하며, 보조의료보험은 사회보장세 상한금액의 3%를 한도로 함

○ 보편적 사회기여금(Generalized social contribution)은 소득세 과세대상 및 비과세대상 소득에 대해 6.2~8.2%의 세율로 부과되는 직접세임

- 건강보험, 가족수당, 노령연금보험 등의 사회보장 지출을 위한 목적세로 1990년 12월 29일 재정법에 의해 도입되고, 1991년 2월부터 시행됨

□ 그리고 근로소득의 획득과정에서 발생한 필요경비는 개산공제인 근로소득공제 또는 실제 지출한 업무관련 비용의 공제(frais réels) 중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음

○ 그러나 대부분 근로소득자(2010년 당시 95%)는 실제 발생한 비용 공제 대신 개산공제인 근로소득공제를 신청함[81)]

□ 개산공제인 근로소득공제는 총급여액에서 사회보장세 보험료를 차감한 근로소득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총급여액에서 공제함

○ 2016 과세연도 기준 최소 426유로(1년 이상 근무한 경우 938유로), 최대 12,183유로를 한도로 함

□ 근로 업무 관련 실제 지출비용은 (i) 과세대상 소득을 창출할 목적으로 (ii) 근로 업무활동을 수행한 결과, 과세대상 근로소득을 획득하였으며 (iii) 해당 과세연도에 지출되고 (iv) 입증을 거친 금액에 한하여 필요경비로 근로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음[82)]

---

81) Ault, Hugh J., Brian J. Arnold, and Guy Gest(2010), p.254

□ 근로업무와 관련된 실제 발생비용은 아래와 같이 예시할 수 있음[83]

○ 40킬로미터 이내 통근비용

- 주거의 형태나 위치에 대한 결정은 전적으로 납세자가 통제할 수 없다는 가정하에서 공제가 허용되며, 40킬로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다는 증명을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제됨

○ 업무관련 출장비용

○ 취업, 이직, 새로운 부임지 근무 등을 위한 주거 변경으로 발생하는 이사비용

○ 계절적 작업수행자(seasonal worker), 견습생(apprentices), 지방 발령 공무원 등이 주거 이외 이중거주(dual residence)로 인한 비용

○ 회사업무 수행을 위하여 개인소유 차량운반도구(자동차, 스쿠터, 오토바이)의 이용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

- 차량운반도구 감가상각비, 차량운반도구 취득시 발생한 이자비용, 유류·주차·보험·안전모·타이어 등 이용비용, 유지비

○ 업무수행을 위한 홈오피스(Locaux professionnels) 관련 비용

○ 업무관련 교육훈련비

- 현 직업에 필요한 기술향상 및 취업을 위한 훈련비, 업무관련 도서비

○ 작업복 구입 및 유지세탁 관련 비용

○ 이 외에도 자격증 취득비용, 컴퓨터 등 업무관련 기구 구입비용(500유로 이내), 노동조합비, 식비(1회 4.7유로 이내)가 있음

□ 한편 자녀보육비(child care expenses)는 근로소득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않지만, 조세정책적 목적에서 항목별 공제대상에 해당함

---

82) article 83-3 of the CGI

83) 프랑스 공공재정국, http://bofip.impots.gouv.fr/bofip/2453-PGP(검색일자:2017. 7. 27)

다. 인적공제

□ 프랑스는 가족계수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인적공제는 매우 제한적임

○ 가족계수제도는 1945년 12월 31일 도입된 기존 부양자녀 수에 따른 공제제도를 대체한 것임[84]

-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전형적인 가족을 표준으로 설계한 이 제도는 부양가족이 있는 남편이나 아버지에 대한 세부담 경감과 가족구성 및 출산율 제고를 도입취지로 함[85]

1) 가족계수제도

□ 프랑스는 가족 구성원의 인원이나 상황에 따른 인적공제 대신에 생계를 같이하는 세대단위(foyer fiscal)의 개념을 반영한 가족계수제도(Family Coefficient System)를 운영함

○ 간략하게 이 제도를 설명하자면, 우선 한 세대 내 납세자 본인, 배우자, 부양자녀 수에 따라 일정부분(part)의 계수(가족계수)를 산정하고, 가족 전체의 과세표준이라고 할 수 있는 가족의 과세대상 순소득 합계를 가족계수를 나누어 가족 당 과세표준을 계산함

○ 계산된 가족당 과세표준에 소득세율을 적용하여 가족당 산출세액을 구하고, 여기에 다시 가족계수를 곱하여 세대단위별 산출세액을 계산함

□ 가족계수제도는 부양가족이 많은 가족의 소득세 누진도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으며, 특히 부양자녀가 있는 외벌이 가구의 소득세 부담 경감효과는 매우 큼

○ 가족계수는 부양가족 수를 근거로 하여 산정하며, 부부합산신고, 미망인신고, 개별신고(독신·이혼)에 따라 부여되는 계수는 차이가 있음

---

84) 김완석(2005), p.60; Mathias André and Malka Guillot(2014)

85) 김민호(2005), p.241

- 납세자 본인은 1단위의 계수, 배우자는 1단위의 계수, 그리고 자녀 1인, 본인이 장애인이거나 장애인인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각각 0.5 단위 또는 1단위의 계수가 추가됨

〈표 Ⅲ-11〉 프랑스 세대단위별 가족계수(parts)(2016)

부양가족 수	부부합산신고	미망인신고	개별신고
0명	2	1	1
1명	2.5	2.5	2
2명	3	3	2.5
3명	4	4	3.5

주: 납세자 본인이 장애인이거나, 장애인인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단위에 0.5단위를 가산함. 두 번째 자녀까지는 0.5단위씩을 가산하지만 세 번째 자녀부터는 1단위를 가산하므로 부양자녀 수가 많을수록 세부담이 현저하게 경감됨
자료: Avram and Bouvard(2017), p.56

2) 경로·장애 인적소득공제

□ 납세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장애인이거나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1인당 최대 2,347유로의 경로·장애인 인적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86)]

□ 경로·장애 인적소득공제는 종합소득(revenue net global)의 수준에 따라 점진적으로 축소되며, 종합소득이 23,720유로를 초과하는 경우 적용이 배제됨

○ 종합소득이 14,730유로 미만인 경우에는 1인당 최대 2,347유로를 공제하며 14,730유로 이상 23,720유로 이하인 경우에는 1인당 1,172유로를 공제함

86) Avram and Bouvard(2017), p.56

〈표 Ⅲ-12〉 프랑스 경로·장애인 인적소득공제(2016)

(단위: 유로)

종합소득 범위	한도 및 공제액
14,730 미만	1인당 2,347
14,730 이상 ~ 23,720 이하	1인당 1,172
23,720 초과	0

자료: Avram and Bouvard(2017), pp.55-56.

3) 가족계수제도의 통합한도(plafonnement des effets du quotient familial)

□ 가족계수제도를 통해 과세표준이 평준화되면서 세부담이 과도하게 경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한도규정이 있음

○ 납세자 본인 1파트(부부합산신고의 경우 2파트)에 추가되는 추가적인 1파트별 조세경감 한도액은 3,020유로(2016년 기준)임[87]

- 만일 부부합산신고한 납세자의 가족계수가 3파트인 경우에는 납세자 본인과 배우자의 가족계수 2파트 외 추가적인 가족계수는 1파트이고, 추가적인 가족계수 1파트당 세경감 혜택의 한도는 3,020유로임

○ 가족계수한도규정이 적용되는 예시는 아래와 같음

- 자녀가 없는 부부합산신고자 A(가족계수 2파트)와 자녀 2인인 부부합산신고자 B(가족계수 3파트)의 2016년 과세대상 순소득이 120,000유로라고 가정함
- 2016년 A의 산출세액은 24,699유로(= {(120,000 /가족계수 2)×누진세율}×가족계수 2)이고, B의 산출세액은 19,049유로(= {(120,000 /가족계수 3)×누진세율}×가족계수 3)임
- 계산상 B는 가족계수제도의 적용으로 인해 A와 비교하여 5,650유로(=24,699-19,049)의 조세경감혜택이 있지만, 조세경감 한도액인 3,020유로를 초과하는 2,630유로(=5,620-3,020)는 적용할 수 없음
- 초과분 2,630유로는 B의 산출세액에 가산되어, 재계산된 B의 산출세액은 21,679유로(=19,049+2,630)임

87) 자녀가 있는 개별신고의 경우 7,124유로임(Silvia Avram and Laurence Bouvard, 2017)

라. 특정지출에 대한 항목별 공제

□ 프랑스의 항목별 공제는 주로 자녀보육 및 부양가족 지원관련 지출을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고, 공제의 통합한도 규정을 통해 과도한 세부담 경감을 방지함

○ 의료비는 공적 의료보험제도를 이유로 공제의 적용을 배제하고, 교육비나 주택취득 관련 이자비용에 대한 공제의 적용은 그 범위를 축소하거나 폐지함

- 주거용 주택 취득·건설 관련 이자비용에 대한 세제지원은 2011년 1월 1일부터 폐지되고, 주거용 주택의 친환경시설 투자비용에 대한 공제 역시 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분에 대해서만 적용함

○ 자녀의 중등학교나 대학교육에 적용되던 학자금 세액공제(Scholarship Tax Credit)는 2013과세연도부터 폐지됨

○ 연금저축계좌에 불입금 공제, 기부금 공제, 장애인 및 자녀를 위한 보험료에 대한 공제가 있지만 공제규모가 크지 않음

1) 항목별 소득공제

가) 성인자녀 및 부양가족을 위한 부양비용

□ 자녀가 독립적인 세대를 이룬 경우로서, 부모의 자녀에 대한 재무적 지원에 대해 한 자녀당 최대 5,738유로의 소득공제(Pensions alimentaires versées à des enfants majeurs)를 적용함[88]

○ 대상 자녀의 연령은 21세 이하(학생인 경우 25세 미만)이어야 하며, 만일 대상 자녀에게 부양자녀가 있고, 미혼이거나 이혼 또는 미망인인 경우에는 최대 11,476유로까지 공제할 수 있음[89]

---

88) M. Henderson(2011)

89) 프랑스 소득세법상 인정된 부양자녀는 18세 미만 미성년자(장애의 경우 연령무관) 중 독신자임, 결혼을 한 자녀(21세 미만), 독신자인 성년자녀(21세까지), 학생인 자녀(25세 미만), 군복무 중인

- 대상 자녀가 세대단위 세무신고에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무관함
- 단순히 세제혜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경우로서, 자녀가 장애인이거나 소득수준이 낮은 경우로서 재무적 지원이 요구되는 경우에 한함
- 적용된 소득공제액은 대상 자녀의 과세대상 소득을 구성함

○ 납세자는 재무 지원내역을 입증할 책임이 있지만, 자녀와 주거를 같이하는 경우에는 숙박, 음식 등과 관련하여 3,410유로(2016년 기준)까지는 관련 증빙제출의무가 면제됨

□ 한편 미성년 자녀, 손자, 부모, 조부모, 전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금액(Autres pensions alimentaires)은 소득공제할 수 있음

○ 75세 이상 부양가족에게 제공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빙자료 없이 세대단위당 최대 3,410유로(2016년 기준)를 공제할 수 있음
- 다만, 수령인의 소득수준이 9,600유로(부부합산신고 시 14,904유로) 이하인 경우에 한함

○ 이전 배우자에게 지급한 위자료(alimony) 지급액(이혼합의 후 첫 번째 12개월 이내 지급한 위자료)은 최대 30,500유로를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음

□ 부양비용 소득공제는 소득공제액의 약 54.5%(2010~2014년 평균)를 차지하였으며, 신청인원과 신청금액은 매년 증가함[90]

○ 성년자녀에 대한 부양비용 소득공제 신청인원은 2010년 75만명에서 2014년 83만 1천명으로 증가하고, 신청금액은 2010년 29억유로에서 2014년 35억유로로 증가함

○ 성년 자녀 등에 대한 부양비용과 이전 배우자 대한 위자료 비용 관련 소득공제의 신청인원과 신청금액 역시 2010년 131만 2천명, 47억유로에서 2014년 127만 8천명, 49억유로로 증가함

자녀는 자발적 신청에 의해 부양자녀로 신고할 수 있음(안창남, 2009)

90) 국세통계에서 제공하는 소득공제 항목은 부양비용 소득공제, 결손금 공제, 연금저축 공제, 보편적 사회기여금 공제, 기타비용이 있음(프랑스 국세청, Tableau 206: Répartition des foyers fiscaux déclarant des charges déductibles du revenu brut global(ensemble des foyers), 각 연도: https://www.impots.gouv.fr/portail/statistiques(검색일자: 2017. 6. 15)

나) 가사 및 자녀보육을 위한 고용 관련 비용

□ 자녀보육, 교습, 경로·장애에 대한 지원, 가사, 원예작업 등을 위하여 내국인 근로자, 즉 가사도우미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함[91]

○ 세액공제 대상 지급액의 한도는 12,000유로이며, 자녀 1인당 또는 65세 초과 세대 구성원 1인당 1,500유로씩 상향조정할 수 있지만 최대 15,000유로에 한함

- 최초로 내국인 근로자인 가사도우미를 고용한 과세연도에 한해 세액공제 대상 가사도우미 급여금액 한도는 3,000유로가 추가로 증액됨

○ 납세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급여지급액의 한도는 20,000유로임

〈표 Ⅲ-13〉 프랑스 가사도우미 세액공제 대상 급여지급액 한도(2016)

(단위: 유로)

구분	한도	
	급여지급액	세액공제액
기본	12,000	6,000
자녀 및 65세 초과 부양가족	최대 15,000	최대 7,500
장애인	20,000	10,000

자료: 프랑스 국세청, https://www.impots.gouv.fr/portail/particulier/emploi-domicile(검색일자: 2017. 9. 6)

□ 또한 6세 이하 자녀의 보육을 위하여 등록된 보모를 고용하거나 유치원 등 외부위탁기관을 이용함으로써 발생한 비용의 50%를 세액공제함[92]

○ 이를 외부육아비용 세액공제(Frais de garde d'enfant hors du domicile(crédit d'impôt)라고 하며, 자녀 당 2,300유로를 한도로 함

○ 2017년 소득에 대한 2018년 세무신고 시에는 30%를 적용함

---

91) Employé à domicile réduction ou crédit d'impôt이라고 함(M. Henderson, 2011)

92) 프랑스 행정부국, https://www.service-public.fr/particuliers/vosdroits/F8(검색일자: 2017. 7. 28)

□ 가사도우미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는 2012년을 기점으로 신청규모가 축소되고 있지만, 외부육아비용 세액공제는 신청인원 및 신청금액 규모가 매년 증가함[93]

○ 가사도우미 세액공제의 신청인원은 2010년 159만 4천명에서 2014년 151만 6천명으로 감소하고, 신청금액은 2010년 19억유로, 2014년 20억유로로 증가함

○ 외부육아비용 세액공제의 신청인원은 2010년 171만 9천명에서 2014년 186만 4천명으로 증가하였고, 신청금액은 2010년 10억유로에서, 2014년 12억유로로 증가함

2) 항목별 세액공제

□ 자녀의 중등교육 또는 대학 교육에 대하여 정액의 자녀교육비 세액공제(les frais de scolarité)를 적용함[94]

○ 고등학교(11~14학년): 자녀 1인당 61유로

○ 고등학교(15~18학년): 자녀 1인당 153유로

○ 대학 교육: 자녀 1인당 183유로

□ 기부금세액공제는 EU,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에 소재한 공공 또는 민간 비영리 단체, 정당에 대한 기부금의 66%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함

○ 과세소득의 20%를 한도로 하며, 미사용 세액공제액은 5년간 차기 이월됨

○ 또한 노동조합 회비(union membership)의 66%에 해당하는 금액을 총급여액에서 사회보장세를 차감한 금액의 1%를 한도로 하여 세액공제함

□ 보험료 세액공제로는 장애인 및 자녀를 위한 보험료 세액공제와 임대주택 보험료 세액공제가 있음

---

93) 프랑스 국세청, Tableau 210: Répartition des foyers fiscaux ayant bénéficié de crédits d'impôt(ensemble des foyers), Tableau 209: Répartition des crédits d'impôt (ensemble des foyers), 각연도: https://www.impots.gouv.fr/portail/statistiques(검색일자: 2017. 6. 15)

94) Avram and Bouvard(2017), p.60

○ 장애인 및 자녀를 위한 보험료지급금(1,525유로 한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함[95]

- 장애인 또는 18세 미만의 자녀가 수혜자로 지정된 보험에 한하며, 자녀 1인당 300유로씩 보험료지급금 한도가 상향조정됨

○ 임대주택 보험료 세액공제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지급한 보험료지급금의 38%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함[96]

3) 공제의 통합한도(Plafonnement global de certains avantages fiscaux)[97]

□ 세액공제 또는 세액감면 등 세제상 우대조치를 받음으로 인해 감소되는 조세부담감소액의 총량을 10,000유로(국외투자의 경우 18,000유로)로 제한함

○ 적용대상 공제로는 가사 및 자녀보육을 위한 고용관련 비용에 대한 공제, 임대주택 보험료 세액공제, 국외 투자관련 세액공제, 에너지시설 투자관련 세액공제 등이 있음

○ 자녀교육비 세액공제, 장애인 및 자녀 보험료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등 세액공제는 통합한도 적용대상에서 배제됨[98]

- 납세자의 개인적 상황, 비영리단체에 대한 보조, 역사적 기념물 관련 조세지원, 소득원천별 필요경비나 비과세소득 등 역시 공제제도 통합한도의 적용이 배제됨

---

95) 프랑스 법무국, https://www.legifrance.gouv.fr/affichCodeArticle.do?idArticle=LEGIARTI000006308080&cidTexte=LEGITEXT000006069577&dateTexte=20060101&fastPos=9&fastReqId=1412902199&oldAction=rechCodeArticle(검색일자: 2017. 6. 14)

96) M. Henderson(2011)

97) L'article 200-0 A du code général des impôts(CGI); 프랑스 공공재정국, http://bofip.impots.gouv.fr/bofip/7249-PGP(검색일자: 2017. 6. 14)

98) 프랑스 공공재정국, http://bofip.impots.gouv.fr/bofip/6526-PGP(검색일자: 2017. 6. 14)

마. 저소득가정과 자녀양육에 대한 지원세제

□ 저소득자의 생활수준을 제고하고 저소득 근로자의 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도입한 근로장려세액공제(Prime pour L'Emploi, PPE)가 2016 과세연도부터 폐지됨[99]

○ PPE는 2009년 6월에 도입한 사회복지제도인 RSA(Revene de solidarite active) 제도로 흡수됨

- RSA는 최저생활을 보장해주는 금액과 노동시간에 따라 추가적인 급여의 62%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하였음
- 2016년부터 저소득근로자 대상의 Prime d'activité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RSA는 실직자만을 그 지원 대상으로 함

□ 2016 과세연도부터 일정액 미만의 소득을 가진 납세자는 산출세액(initial tax liability)의 20%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세액을 감면함[100]

○ 소득요건은 개별신고의 경우 20,500유로 미만의 소득이고, 부부합산신고는 41,000유로 미만의 소득임

- 가족계수 0.5파트(parts)별 3,700유로(1,850유로)씩 한도가 상향조정됨

○ 산출세액은 소액납세자 세액공제적용 후 금액임

- 소액납세자 세액공제(décote)는 산출세액이 1,553유로(부부합산신고시 2,560유로) 미만인 소액납세자의 세 경감을 위해 1,165유로(부부 합산신고 시 1,920유로)와 납부세액의 3분의2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함

□ 2013 과세연도부터 소득수준이 14,145유로 미만(개별신고 기준)인 납세자는 350유로(개별신고 기준)의 세액감면을 적용함[101]

---

99) Avram and Bouvard(2017), p,28

100) Article I(4)(b)of CGI; 프랑스 공공재정국, http://bofip.impots.gouv.fr/bofip/2495-PGP(검색일자: 2017. 6. 14)

101) M. Henderson(2011)

3. 일본

가. 개요

□ 2010년 이후 일본 개인소득세 공제제도의 중요한 특징으로 부양자녀에 대한 조세지원을 재정정책과 통합하여 기존 조세지원상 부양자녀 관련 인적공제를 축소한 점을 들 수 있음[102]

○ 자녀양육의 지원 측면에서 부양자녀에 대한 소득공제가 아동수당제도와 유사하지만, 실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의 세경감 효과가 미비하다는 사회적 비판이 제기됨[103]

○ 이에 따라 부양자녀에 대한 부양소득공제는 2011년부터 폐지·축소되고 16세 미만 자녀 양육 지원은 아동수당제도(子ども手当)로 일원화됨

○ 한편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실시됨에 따라 2010년부터 16세 이상 19세 이하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25만엔의 추가 인적소득공제를 삭감함[104]

□ 근로소득 필요경비에 대한 항목별 공제의 경우, 일본은 전통적으로 근로소득 획득과정에서 실제 지출한 비용은 공제를 허용하지 않았지만, 1987년부터는 제한적으로 허용함

○ 소득세제 도입 초기부터 근로소득에 대한 개산공제가 적용된 까닭에 중첩적 비용은 물론 소득획득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는 비용이나 가사노동 관련 비용의 공제를 허용하지 않음[105][106]

○ 현재는 근로소득 필요경비는 개산공제인 급여소득공제와 하한기준을 초과한 실제 발생비용의 추가적인 공제로 구성됨

---

102) 일본 세제조사회, http://www.kantei.go.jp/jp/kakugikettei/2009/1222zeiseitaikou.pdf

103) 山下篤史(2007)

104) 일본 재무성, 「扶養控除の見直しについて」, http://www.mof.go.jp/tax_policy/summary/income/047a.htm(검색일자: 2017. 8. 25)

105) 1887년 소득세법이 제정될 당시에는 급여소득에 대한 공제제도가 없었으나, 1913년 세법개정시 급여소득의 10%에 상당하는 공제를 허용함(東海税理士会調査研究部, 2010)

106) Avi-Yonah, Reuven, Nicola Sartori, and Omri Marian(2011), p.47

□ 일본 개인소득세 공제제도는 근로소득 필요경비에 대한 항목별 공제, 인적공제, 특정 지출에 대한 항목별 공제로 구분할 수 있음

○ 인적공제로는 납세자 본인,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 경로·장애에 대한 추가공제, 근로학생에 대한 추가공제가 있음

○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 등과 같은 사회보장 보험료, 의료비,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생명보험료, 지진보험료, 기부금, 재해나 도난 등으로 인한 손해 등 항목별 공제규정이 있음[107)108)]

- 일본은 교육비에 대한 항목별 공제를 허용하지 않음

□ 일본은 저소득 가구나 자녀양육지원을 위한 근로장려세제나 자녀장려세제와 같은 지원세제가 없음

나. 근로소득 필요경비에 대한 항목별 공제

□ 일본은 근로소득 필요경비 공제로서 개산공제인 급여소득공제와 실제 지출한 비용의 추가 공제를 허용함

○ 급여소득공제는 급여수입금액 구간별로 최고 40%에서 최저 5%의 공제율이 적용된 금액을 급여수입금액에서 공제함

○ 그리고 실제 지출한 비용의 합계가 급여소득공제액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공제를 허용함

- 이 경우 공제대상이 되는 업무관련 비용은 법에서 규정함

- 근로소득 관련 가사비용은 실제 필요경비와의 명료한 구분이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자녀보육비와 같은 가사비용은 필요경비로서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107)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조세지원으로 소규모 기업공제법에 의한 공제계약에 따라 지급한 부금에 대한 공제도 있으나(일본「소득세법」제75조), 생명보험료 공제와 그 성격이 유사하므로 본문에서는 제외함

108) 이 외에도 이중과세 경감을 위한 배당소득공제나 외국세액공제, 주택 신축, 취득, 증개축 등 관련 조세지원 등이 있음(일본 국세청, https://www.nta.go.jp/taxanswer/shotoku/1200.htm (검색일자: 2017. 8. 1))

□ 개산공제인 급여소득공제는 1913년에 최초로 도입되었으며, 여러 차례 개정을 통해 현행과 같이 저소득층을 위한 최저 정액공제와 한도 내 정률 공제 방식이 혼합된 형태로 규정됨[109)]

□ 1985년 오시마 소송(大島訴訟) 판결 이후 근로소득 필요경비의 범위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가 제기됨에 따라 급여소득공제의 공제율이 인상되는 한편, 실제 지출한 비용의 공제를 허용하는 규정이 1987년에 신설·도입됨[110)]

○ 1987년 세법개정 시 통근비용, 이사비용, 연수비용 등 제한된 범위 내에서 급여소득공제금액을 초과하는 실제 발생 비용의 추가적인 공제를 허용하는 특정지출공제규정이 도입됨

1) 급여소득공제

□ 개산공제인 급여소득공제는 1913년에는 근로소득에 대해 10%의 정률로 공제하는 방식으로 최초 도입되었고, 여러 차례에 걸친 세법개정으로 현재는 65만엔의 최저 정액공제와 함께 일정 한도 내 정률공제의 방식이 혼합된 형태로 규정됨[111)]

○ 1961년 세법개정 시 필요경비의 고정적 요소를 고려하여 정액공제와 정율공제를 조합하는 방식으로 변경됨

○ 1974년 제도의 간소화를 위해 정율공제 방식으로 일원화하면서 급여소득공제의 한도규정을 폐지하였고, 급여수입금액 수준이 매우 낮은 저소득층의 경우 최저 정액공제를 보장하는 규정을 신설함

---

109) 東海税理士会調査研究部(2010)

110) 오시마 소송(大島訴訟, 最高裁大法廷 昭和60年 3月 27日)은 실제 지출한 근로관련 경비를 고려하지 않는 당시 소득세법의 개산공제규정이 급여소득자에게 불리하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 오시마 교수 본인에 대한 과세 결정처분 취소를 요구한 소송임. 오시마 소송으로 인해 급여소득과 여타소득 간의 세제상 불공평성에 대해 사회적 논의가 제기되어 1987년에는 급여소득공제율 인상과 실제 지출한 비용에 대한 공제 신설, 1989년에는 급여소득자의 소득세반환소송(総評サラリーマン税金訴訟) 등의 반향이 일어남

111) 최초 도입 당시에는 근로공제로 칭했다가, 1953년 세법개정 시 급여소득공제로 명칭을 변경함

○ 2012년 세법개정 시 현행과 같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급여수입금액에 대해 급여소득공제의 최대 한도를 설정함

- 2012년 당시 급여수입금액이 1,500만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45만엔을 최대 공제한도로 함

□ 현행 급여소득공제는 급여수입금액에 따라서 최고 40%의 공제율로 개산 공제할 수 있음[112)]

○ 급여수입금액 수준에 따라 40%, 30%, 20%, 10%, 5%의 공제율이 적용됨

○ 급여수입금액이 65만엔 이하인 경우 65만엔을 공제하고, 급여수입금액이 1,200만엔을 초과하는 경우 230만엔을 한도로 공제함

〈표 Ⅲ-14〉 일본 급여소득공제(2016)

급여수입금액	공제율	급여수입금액	공제율	급여수입금액	공제율
65만엔 초과 ~ 180만엔 이하	40%	360만엔 초과 ~ 660만엔 이하	20%	1,000만엔 초과 ~ 1,200만엔 이하	5%
180만엔 초과 ~ 360만엔 이하	30%	660만엔 초과 ~ 1,000만엔 이하	10%	1,200만엔 초과	-

주: 1. 급여수입금액이 65만엔 이하인 경우에는 65만엔을 공제함
2. 공제 한도는 2016년 현재 230만엔이고, 2017년부터는 220만엔임
자료: 일본 재무성, http://www.mof.go.jp/tax_policy/summary/income/049.htm(검색일자: 2017. 9. 4)

2) 보전되지 않은 근로 관련 특정지출

□ 근로자가 근로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특정 비용의 합계액이 급여소득공제액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은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데 이를 '특정지출공제'라고 함[113)]

112) 일본「소득세법」제28조 제3항
113) 일본「소득세법」제57조의2 제1항

□ 1987년 특정지출공제 규정 도입 당시에는 최소지출기준을 높게 설정하고, 특정지출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규정하였으나, 2012년 세법개정 시 급여소득공제의 범위를 일부 축소하는 대신 특정지출공제의 적용범위를 확대함

○ 1987년 도입 시 공제가 허용되는 특정지출액의 최소기준은 급여소득공제액 전액이었고, 특정지출의 범위는 통근비용, 이사비용, 교육비용, 자격취득비용(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의 자격취득비용은 제외), 귀가여비였음[114]

○ 2012년 세법개정 시 최소지출기준을 급여소득공제액의 50%로 하향조정하고, 대상지출의 범위에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의 자격취득비용과 도서구입비, 의복비, 교제비 등 근로필요경비를 추가함[115]

○ 2013년부터 2015년까지는 급여수입금액이 1,500만엔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공제한도를 125만엔으로 규정하였으나, 2016년부터는 공제한도를 폐지함

□ 현행 일본「소득세법」상 근로 관련 특정지출항목은 아래와 같음[116]

○ 통근비용(통근비)
  - 일상 통근을 위해 필요한 교통이나 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위한 지출로서,
  - 비과세소득인 통근수당 중 일정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이 과세소득에 포함되었을 때,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함

○ 전근에 따른 이주비용(이주비)

○ 직무에 직접 필요한 기술 및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연수비용(연수비)

○ 직무수행에 직접적 관련이 있는 자격증 취득비용

○ 단신 부임 등의 경우, 근무지·거소와 주거지 사이의 왕래를 위한 일반적으로 필요한 지출(귀가여비)

○ 2013년 이후 발생한 근무필요경비(총합계액 65만엔 한도)[117]

---

114) 구 일본「소득세법」제57조의2 제2항
115) 国税庁(2014)
116) 일본「소득세법」제57조의2 제2항
117) 일본「소득세법」제57조의2 제6항

- 도서, 정기 간행물 등 직무관련 도서를 구입하기 위한 도서 구입비
- 유니폼, 사무의류, 작업복 등 근무 장소에서 착용하기 위해 구입한 의복비
- 교제비·접대비 기타 비용으로 고용주의 고객, 업무상 관계있는 자에 대한 접대, 향응, 선물 및 기타 이와 유사한 활동을 위한 지출(교제비 등)

□ 특정지출공제 대상비용은 고용주나 국가 교육보조금을 통해 보전되지 않은 경우로서, 관련 증빙서류의 구비와 실제 회사에서 보전하지 않았다는 고용주의 확인이 필요함[118]

□ 특정지출공제의 적용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 세법개정으로 인해 특정지출공제 신청자 수는 1988년 도입 당시보다는 증가하였으나, 전제 급여소득자 수 대비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함

○ 2015년 특정지출공제의 이용비율은 전체 급여소득자 5,646만명 중에서 약 1,800명으로 그 비중이 0.003%임[119]

○ 1988년 16명을 시작으로 2012년 세법개정 직전까지는 연간 10명 수준에 불과하였다가, 개정세법이 시행된 2013년부터 특정지출공제의 신청자 수가 증가함[120]

- 2013년 1,600명, 2014년 약 2,000명, 2015년 약 1,800명임[121]

□ 이와 같이 이용실적이 낮은 이유는 특정지출공제 대상비용이 대부분 고용주에 의해 보전되거나 또는 「소득세법」상 비과세되는 항목이어서 상한기준을 초과하는 비용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으로 판단됨

○ 근로관련 가사비용은 전액 필요경비로 보지 않기 때문에 실제 대상 비용의 범위가 제한적임

---

118) 일본「소득세법」제57조의2 제3항 및 제4항
119) 国税庁(2016a)
120) 東海税理士会調査研究部(2010)
121) 税のしるべ(2017)

〈표 Ⅲ-15〉 일본 특정지출공제적용 확정신고 제출현황(1988~2016)

(단위: 명)

연도	신고자 수	연도	신고자 수	연도	신고자 수
1988	16	1998	3	2008	6
1989	5	1999	3	2009	9
1990	9	2000	7	2010	3
1991	8	2001	4	2011	4
1992	7	2002	5	2012	6
1993	4	2003	10	2013	1,600(추정)
1994	7	2004	9	2014	2,000(추정)
1995	1	2005	13	2015	1,845
1996	3	2006	9	2016	1,522
1997	1	2007	7	-	

자료: 東海税理士会調査研究部(2010), p.4; 税のしるべ(2017)

다. 인적공제

□ 최근 일본은 조세제도와 재정정책을 통합하여 16세 미만의 부양자녀에 대한 인적공제 규정을 폐지·축소함

○ 2010년 민주당 정권 출범 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 수당으로의 전환'이라는 조세·재정정책 개편 방향에 따라 16세 미만 자녀 양육지원은 어린이 수당제도(子ども手当)로 일원화하고, 관련 조세지원은 폐지·축소함[122)]

- 16세 미만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연소부양친족 소득공제는 폐지함

122) 2010년부터 도입된 어린이 수당제도는 이전 아동수당(児童手当)제도와 비교하였을 때 적용 대상이 초등학생에서 중학생으로 확대되었고 급부금액 역시 증가됨. 2016년 현재 어린이 수당(신아동 수당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나 실제 제도는 종전과 동일함)은 0세부터 중학생을 대상으로 지급하며, 부양친족의 수에 따라 소득제한 한도액이 존재함. 0~3세 이하의 아동에게 일률 1만5천엔, 3세~초등학생 아동에게 일률 1만엔(셋째부터 1만 5천엔), 중학생 아동에게 일률 1만엔을 지급함. 수당 수급자의 전년도 소득이 소득제한 한도액을 초과할 경우 지급액은 부양 아동의 연령과는 무관하게 아동 1인당 5천엔이 됨(일본 후생노동성, http://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kodomo/kodomo_kosodate/jidouteate/index.html(검색일자: 2017. 8. 3))

○ 2011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실시됨에 따라 16세 이상 19세 미만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25만엔의 추가 인적소득공제를 삭감함[123]

□ 기본인적공제로서 납세자 본인, 배우자, 부양친족에 대해여 1인당 38만엔을 소득공제함[124]

○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는 배우자의 총소득금액이 38만엔(급여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103만엔) 이하이어야 함

- 다만, 배우자의 총소득금액이 38만엔을 초과하더라도, 납세자 본인의 총소득금액이 1,000만엔 이하일 경우에는 배우자특별공제를 통하여 최대 38만엔을 소득공제함

○ 부양친족은 6촌의 혈족 및 3촌의 인척, 도도부현 지사(都道府県知事)로부터 양육을 위탁받은 아동, 시정촌장(市町村長)으로부터 양호를 위탁받은 노인으로 소득, 주거, 연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총소득금액이 38만엔(급여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103만엔) 이하이고, 납세자와 생계를 같이하여야 함
- 16세 미만 부양자녀는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경로·장애, 학생 또는 한부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가인적공제를 적용할 수 있음

○ 납세자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이 70세 이상 경로자인 경우에는 10만엔 또는 20만엔을 소득공제할 수 있음

- 동거직계존속의 경우에는 20만엔, 동거직계존속 외의 경우에는 10만엔을 소득공제할 수 있음

○ 부양친족이 19세 이상 23세 미만의 학생인 경우에는 25만엔을 추가적으로 소득공제할 수 있음

○ 납세자 본인이 근로학생인 경우에는 27만엔을 추가적으로 소득공제할 수 있음

---

123) 일본 재무성, http://www.mof.go.jp/tax_policy/summary/income/047a.htm(검색일자: 2017. 7. 10)
124) 일본「소득세법」제86조

- 근로소득자인 납세자 본인의 총소득금액이 65만엔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130만엔 이하)이고 근로소득 외의 소득은 10만엔 이하인 경우에 적용됨
- 학교교육법 등 교육기관에 의해 일정 과정을 이수하여야 함[125]

○ 납세자 본인이 배우자와 사별·이혼하였거나 배우자의 생존이 불분명하며 한부모(寡婦·寡夫)공제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27만엔을 공제함

○ 납세자 본인, 배우자, 부양친족이 장애인인 경우 27만엔을 추가공제할 수 있음

- 납세자 본인이 특별장애인인 경우 총 40만엔을 추가공제하고, 특별장애인인 배우자, 부양친족과 동거하고 있는 경우 총 75만엔을 추가공제함

□ 부양친족공제 신청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부터 16세 미만 부양자녀에 대한 연소부양친족공제가 폐지되면서 신청인원과 신청금액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나 이후 점진적 증가세를 보임[126]

○ 2010년 대비 2011년의 신청인원은 39.9% 감소한 34만 9천명, 신청금액은 48.4% 감소한 2,307억 9,900만엔이었으나 2011년 대비 2015년의 신청인원은 23.5% 증가한 43만 1천명, 신청금액은 26.3% 증가한 2,915억 900만엔이었음

- 세부적으로 보면 특정부양친족공제 신청인원이 약 4만 7천명, 일반부양친족공제 신청인원이 약 4만명, 노인부양친족공제 신청인원이 약 3만명 증가함

라. 특정지출에 대한 항목별 공제

□ 일본은 항목별 공제에 대한 개산공제규정은 없으며, 실제 지출한 특정 항목에 대한 공제만을 허용함

---

125) 근로학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학교교육법」에 규정하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대학·고등전문학교, 국가, 지방공공단체, 학교법인 등이 설치한 전수학교 또는 각종 학교에서 일정한 과정을 이수하거나, 「직업능력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인정되는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직업훈련법인에서 일정한 과정을 이수하는 학생이어야 함(일본 국세청, https://www.nta.go.jp/taxanswer/shotoku/1175.htm(검색일자: 2017. 9. 4))

126) 国税庁(2016b)

□ 항목별 공제인 기타소득공제는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 등과 같은 사회보장 보험료, 의료비,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생명보험료, 지진보험료, 기부금, 재해나 도난 등으로 인한 손해 등에 대한 공제임

○ 사회보장 보험료 공제는 관련 법령에 의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사회보장 관련 제도에 납부하거나 부담한 보험료를 전액 소득공제함

○ 의료비공제는 납세자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및 부양친족을 위하여 의료비를 지불한 경우에 최대 200만엔을 한도로 소득공제함[127]

- 의사와 치과의사 진료비, 치료·요양에 필요한 의약품 구입 및 의료서비스 비용 등이 공제대상 의료비임
- 최대 200만엔을 한도로 '(실제 지출한 의료비-보험보전금액)-10만엔(단, 총소득금액이 200만엔 이하인 경우에는 총소득금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함

○ 생명보험료공제는 생명보험 또는 개인연금에 납입하는 보험료를 일정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함

- 보험의 종류 및 보험료 수준에 따라 최대 4만엔을 한도로 공제함

○ 지진보험료공제는 지진 등에 의한 자산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납세자가 지출한 지진 및 재해보험료에 대해 최대 5만엔을 한도로 전액을 공제함

○ 기부금공제는 2천엔을 초과하는 특정기부금은 총소득금액의 40%를 한도로 소득공제함[128]

- 정당, 정치자금단체, 기타 정치단체 등의 정치활동에 대해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기부금 소득공제 대신 세액공제를 선택할 수 있음[129]
- 이 경우 2천엔을 초과하는 정당 등에 대한 기부금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금액의 40%를 한도로 세액공제를 허용함[130]

---

127) 일본 국세청, https://www.nta.go.jp/taxanswer/shotoku/1120.htm(검색일자: 2017. 8. 25)
128) 일본「소득세법」제78조
129) 일본「조세특별조치법」제41조의18 제1항
130) 일본「조세특별조치법」제41조의18 제2항

○ 잡손공제는 납세자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및 부양친족의 재산이 재해, 도난, 횡령에 의해 손해를 입었거나 재해로 인한 불가항력의 지출을 한 경우에 한하여 소득공제함[131]

- 잡손공제의 대상 자산은 생활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자산으로 한정하며 재고자산, 사업용 고정자산 및 이연자산, 산림자산, 생활에 통상 필요하지 않은 자산상의 손실은 공제대상이 아님
- 재해관련 지출금액은 재해에 따라 손괴된 주택, 가재 등의 취득비용, 제거비용 등 재해와 관련하여 불가항력으로 지출한 비용을 의미함
- 총소득금액 등의 10%(또는 5만엔)를 초과하는 손실금액을 공제함

마. 저소득가정과 자녀양육에 대한 지원세제

□ 일본은 근로장려세제와 같은 저소득자에 대한 지원세제나 자녀장려금과 같은 부양자녀에 대한 조세지원제도가 없음

○ 부양자녀에 대한 지원정책은 재정정책인 어린이 수당제도(子ども手当)로 통합하여 운영함

4. 호주

가. 개요

□ 호주는 보다 공정하고 간소화(a fairer and simpler tax system)된 조세체계를 기치로 한 2012년 세제개혁을 통해 60여개에 달하던 소득세 공제제도를 축소·폐지·통합함[132]

131) 일본「소득세법 시행령」제206조 제2항

132) 호주는 2009년 12월에 발표된 호주 미래 조세제도 검토보고서의 중장기 조세개혁 설계안에 따라 소득세제, 소비세제, 환경세제에 대한 조세 개혁이 진행 중이며, 호주 미래 조세제도 검토

○ 호주는 인적공제 대부분을 폐지·축소하는 한편, 사회복지정책인 Family Tax Benefit 제도의 범위를 확대하여 조세정책과 사회복지정책의 유기적인 통합을 모색함
  - 노동시장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배우자 인적공제(the dependent spouse tax offset)를 폐지함
  - 부양자녀 관련 인적공제를 Family Tax Benefit 제도로 통합하면서 동시에 부양가족에 대한 8개의 인적공제를 축소·폐지하여, 현재 장애가 있는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만 허용함
  - 특정지출에 대한 항목별 공제에 해당하는 부양자녀를 위한 교육비세액공제를 재정정책인 자녀교육수당(Schoolkids Bonus)으로 전환함
○ 고령인구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노년층 근로자 세액공제(Mature Age Workers Tax Offset)를 2015년에 폐지하고 재정정책으로 통합함[133)]
  - 50세 이상인 근로자 혹은 6개월 이상 정부 소득지원을 받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기간에 따라 최대 10,000호주달러의 보조금을 해당 근로자와 고용주에게 지급하는 재취업(Restart)보조금 지원제도를 도입함

□ 저소득층의 소득세 신고의무를 경감하기 위해 소득세 면세구간을 상향조정하고 Family Tax Benefit 지급기관을 재정기관으로 전환함
○ 소득세 면세구간을 6,000호주달러에서 18,200호주달러로 상향조정하여 저소득층 세액공제(the Low Income Tax Offset)를 적용받던 100만명에 달하는 납세자의 소득세 세무신고의무를 면제함
○ 세무신고의 방법으로 신청하던 Family Tax Benefit을 사회복지기관을 통한 직접 수령으로 일원화함[134)]

보고서에 대한 설명은 김재진(2013)을 참조할 것

133) 호주 재무부, http://www.budget.gov.au/2014-15/content/glossy/welfare/html/welfare_07.htm (검색일자: 2017. 8. 25)

134) 호주 사회복지부, https://www.humanservices.gov.au/customer/enablers/claiming-family-tax-benefit(검색일자: 2017. 8. 3)

□ 근로 관련 필요경비는 실제 지출한 비용을 기준으로 폭넓은 범위의 공제를 허용하는 반면, 특정지출에 대한 항목별 공제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제한적임

○ 근로소득 필요경비의 공제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호주 정부는 행정업무 간소화, 입증책임 완화, 조세회피방지를 위한 개산공제제도 도입 등 세제개편을 시도함[135)]

- 자기차량비용, 의복비, 교육비, 노동조합비, 도서비, 식사비, 홈오피스 운영비용 등 근로소득 관련 필요경비의 공제로 인한 과다한 과세행정비용의 발생과 납세자의 조세회피 시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

나. 근로소득 필요경비에 대한 항목별 공제

□ 호주는 근로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실제 지출한 필수적인 업무 관련 비용은 근로소득에서 차감함[136)]

○ 근로소득자 본인이 해당 비용을 직접 부담한 경우에 한하여 공제할 수 있으며 고용주나 제3자에 의해 보전된 경우나 가사비용(private and domestic expenses) 또는 자본지출의 성격을 갖는 경우에는 공제할 수 없음

○ 필요경비 공제에 대한 통합적인 한도규정은 없으며, 공제액 총액이 300호주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련 입증책임이 납세자에게 부여됨

□ 공제대상 필요경비는 ① 업무 관련 차량비용 ② 업무 관련 출장비 ③ 업무 관련 의복비·세탁비 ④ 업무 관련 납세자 본인의 교육비 ⑤ 기타 필요경비로 구분할 수 있음

□ 근로자 본인이 업무수행을 위해 본인 소유의 자동차를 직접 이용한 경우 또는 교통수단을 이용한 경우 발생한 비용으로 업무와 직접적 연관이 있는 부분에 한하여 필요경비 공제가 허용됨

---

135) The Parliament of the Commonwealth of Australia(2017), pp.27~60.
136) ITAA 97 s 8-1

○ 근로자 본인소유 차량비용은 근로관련 도구 운반, 업무회의 참석, 두 개 이상의 직장 혹은 근무지 간 이동, 근무지와 대체근무지 간 왕복 이동 및 각 근무지로부터 귀가 등에 대해 자차비용의 공제를 허용함

○ 공제대상 비용의 계산목적으로 주행거리방법(cent per kilometre method)과 운행일지방법(logbook method) 중 선택할 수 있음[137]

- 주행거리방법은 주행거리 1킬로미터(km)당 6센트(cents)를 공제하며 차량 1대당 최대 5,000업무킬로미터를 상한으로 함
- 운행일지방법은 최소 12주 연속으로 업무와 관련하여 자기차량을 주행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며, 실제 차량주행에 들어간 유류비와 감가상각분을 공제함

○ 교통비는 업무수행을 위해 둘 이상의 직장이나 근무지에서 근무할 경우 직장/근무지 간 이동에 소요되는 교통비를 대상으로 함

- 주거지와 직장 간 통근비용은 공제 대상이 아님
- 다만, 출장지(상주 근무지는 제외함)로부터 집까지 소요되는 교통비는 공제대상에 포함됨

□ 업무 관련 출장으로 인하여 발생한 항공·택시를 포함한 대중교통비, 교량·도로 통행료, 주차비, 단기 운전기사 고용비, 출장 중 식사비 및 숙박비를 필요경비로 공제가 허용됨[138]

○ 자기차량을 운행한 경우 실제 지출한 유류비, 유지비용과 승객 9명 이상 혹은 1톤 이상의 물품 운송에 사용한 자동차 비용도 포함됨

□ 근로업무 수행과정에 지출한 의복비·세탁비(work-related clothing, laundry and dry-cleaning expenses) 중 보전되지 않은 부분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음[139]

---

137) 필요경비 공제규정을 간소화하기 위해 2015년 7월부터 실제 발생비용의 3분의1 방법과 발생가액의 12% 방법은 폐지함

138) 호주 국세청, https://www.ato.gov.au/Individuals/Tax-return/2016/Tax-return/Deduction-questions-D1-D10/D2-Work-related-travel-expenses-2016(검색일자: 2017. 8. 25)

139) 호주 국세청, https://www.ato.gov.au/Individuals/Tax-return/2016/Tax-return/Deduction-

○ 보호의복, 유니폼, 직업 특수복 구입과 세탁에 지출된 비용이 공제대상임

○ 업무관련 의복비·세탁비가 150호주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또는 자동차 비용과 식사비를 제외한 근로관련 필요경비 합계금액이 300호주달러를 초과할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구비하여야 함

- 작업복을 납세자 본인이 직접 세탁한 경우, 한벌 당 1호주달러를 공제할 수 있음

□ 근로자가 인가된 교육기관에서 현재 직무에 필요한 교육을 받는 경우에 한하여 교육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음

○ 등록금과 교육과정에 소요되는 제반비용 중 250호주달러를 초과하는 업무 관련 본인 교육비(Work-related self-education expenses)에 한함

○ 공제대상 지출로는 교과과정에 소요되는 등록금 외의 제반비용이 포함됨

- 등록금, 학자금 대출 이자 등의 비용, 교육수료 목적으로 주거지 외 장소에서 생활하는 경우 소요된 식비와 숙박비, 여비·교통비, 교과서, 문방용품, 학생회비, 컴퓨터 감가상각비용, 특정 수업비 등이 있음

- 다만, 학자금 대출상환액 등이나 주거지와 교육기관 간 여비·교통비는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표 Ⅲ-16〉 호주의 근로관련 본인 교육비용(2015-16)

구분	교육비 내용
A	수업료, 교과서, 문구, 학생조합비, 편의시설 이용료, 대중교통비, 운행일지(logbook) 방법에 따른 자동차 경비 등
B	컴퓨터, 자동차(운행일지방법) 등 학습을 위해 사용된 상각자산
C	학습용 장비 수리비용
D	주행거리방법(cents per kilometre) 방법에 따른 자차비용
E	자녀육아비용, 책상, 컴퓨터 구입비, 여비교통비(주거지-교육기관-근무지)

주: 1. 본인소유자동차 비용에 대해 B 혹은 C 공제를 신청한 경우 D 공제는 신청불가함
2. E 비용은 교육비로서 공제할 수 없지만 250호주달러 감액 계산 시 차감할 수 있는 항목임

자료: 호주 국세청, https://www.ato.gov.au/Individuals/Income-and-deductions/In-detail/Education-and-study/?page=1#Calculating_your_claim(검색일자: 2017. 8. 25)

---

questions-D1-D10/D3-Work-related-clothing,-laundry-and-dry-cleaning-expenses-2016 (검색일자: 2017. 8. 25)

○ 현 고용상태에서 필요한 특정 기술이나 지식의 습득 또는 교육과정으로 인한 소득증가가 추정될 수 있어야 함
  - 일반적 교육과정이나 이직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과정은 교육비 공제 적용대상이 아님

□ 업무와 관련된 기타 비용도 필요경비로서 소득공제할 수 있음[140]
○ 노조비용, 전문협회 가입·구독비, 전문 세미나·회의비, 전문 잡지·도서, 도구·장비 및 전문 도서관 상각비용, 그 외 컴퓨터 수리 등의 비용 중 업무 관련 지출 부분, 시간외근무 식대[141]

□ 근로자(또는 임대소득자)의 소득창출을 위해 사용되는 자산 중 1,000호주달러 이하인 자산의 감가상각비를 소득공제할 수 있음[142]
○ 과세대상 가치의 37.5%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공제할 수 있고, 수리비 등을 지출한 경우에는 가액의 18.75%를 추가로 공제할 수 있음
○ 소액자산 감가상각비는 여타 근로관련 필요경비공제와 중복 신청할 수 없음

□ 근로소득 관련 필요경비 공제를 신청한 납세자 비중은 2010-11 과세연도 88.4%에서 2014-15 과세연도 86.7%로 소폭 감소했으나, 공제금액 수준은 192억 100만호주달러에서 218억 3,200만호주달러로 13.7% 증가함[143]
○ 공제금액은 차량비용, 기타 필요경비, 의복비·세탁비, 본인 교육비, 출장비의 순서임

---

140) 호주 국세청, https://www.ato.gov.au/Individuals/Tax-Return/2016/Tax-return/Deduction-questions-D1-D10/D5-Other-work-related-expenses-2016(검색일자: 2017. 8. 25)
141) 시간외근무 식대비용은 연봉계약에 포함되지 않거나, 관계법령에 의한 잔업 시 지출한 식사비용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건당 28.80호주달러 이상일 경우 증빙이 필요함
142) 호주 국세청, https://www.ato.gov.au/Individuals/Tax-return/2016/Tax-return/Deduction-questions-D1-D10/D6-Low-value-pool-deduction-2016(검색일자: 2017. 8. 25)
143) ATO(2017)

다. 인적공제

□ 2012년 세제개혁으로 배우자, 부양자녀, 기타 부양가족, 노년층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적공제는 상당부분 축소·폐지되고, Family Tax Benefit 제도는 보조금으로 변경되어, 소득세제상 인적공제규정이 매우 단순화됨

○ 배우자 및 노년층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적공제는 노동시장 참여를 유인하기 위하여, 부양자녀 및 부양가족 인적공제는 조세 공정성과 조세 간소화를 위해 기존 Family Tax Benefit 제도로 통합함

- 장애, 질병 등으로 인한 경우에는 병상자·간병인에 대한 인적공제를 신설함

○ 세무신고를 통하여 신청하던 환급형 세액공제 Family Tax Benfit 제도가 보조금으로 통합됨에 따라 소득세제 과세행정이 단순화됨

□ 현행 소득세제상 인적공제는 해외나 특별구역 거주자에 대한 인적공제와 병상자 등 부양가족을 위한 인적공제가 있음

1) 오지·해외근로자 세액공제(Zone or Overseas Forces Tax Offset)

□ 납세자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등에 대한 세액공제제도는 폐지되었으며, 현재 해외나 특별구역 등에 거주하는 근로자에 한하여 오지·해외근로자 세액공제(Zone or Overseas Forces Tax Offset)를 허용함

○ 오지에 거주하거나 군인으로서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납세자가 부양자녀·학생을 홀로 부양하고 있을 경우 부양일자 1일당 4.39호주달러를 세액공제 할 수 있음

- 납세자가 21세 이하의 자녀 혹은 25세 미만 풀타임학생을 부양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음

○ 근로자가 183일 이상 오지·특별구역에 거주하거나, 호주 방위군·UN군으로서 해외에 거주한 경우 거주지별로 일정액(fixed amount)을 세액공제할 수 있음

2) 병상자·간병인 세액공제(Invalid and Carer Tax Offset)

□ 납세자의 부양가족이나 친족 중 병상자가 있거나 혹은 병상자를 간병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병상자·간병인 세액공제(Invalid and Carer Tax Offset)로서 최대 2,588 호주달러를 세액공제할 수 있음[144)]

○ 대상이 되는 부양가족은 배우자, 납세자와 배우자의 부모, 부양자녀 중 16세 이상인 자, 납세자와 배우자의 형제자매 중 16세 이상인 자에 해당하는 자임

○ 납세자 본인의 과세표준 또는 배우자와 합산한 과세표준(combined ATI)이 100,000 호주달러 이하이고 병상자 혹은 간병인의 과세표준이 10,634호주달러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공제할 수 있음

- 대상 부양가족의 조정과세소득이 286호주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 소득 4달러당 1달러씩 감액하고, 조정과세소득이 10,634호주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세액공제의 적용을 배제함

○ 세액공제액은 '세액공제 신청가능일 1일당 7.07호주달러'로 계산함

○ 다만, 과세연도 중 Family Tax Benefit Part B 보조금 또는 신생아 육아수당(Parental Levy Pay)을 수급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세액공제액에서 차감함

라. 특정지출에 대한 항목별 공제

□ 소득창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특정지출에 대한 항목별 공제와 기부활동이나 공적인 사회보장체계(의료, 보험)가 지원되지 않는 분야에 대한 지출의 공제를 허용함

○ 가사비용(private and domestic expenses)이나 자본적 지출은 공제적용을 배제함

□ 호주는 과거 자녀교육비에 대한 소득세제상 지원정책을 두고 있었으나, 2012년 세법 개정 시 폐지하고, 재정정책으로 통합함

---

144) 호주 국세청, https://www.ato.gov.au/Individuals/Tax-return/2016/Supplementary-tax-return/Tax-offset-questions-T3-T9/T6-Invalid-and-invalid-carer-2016(검색일자: 2017. 8. 25)

○ 2010~2011년까지 적용되던 환급형 세액공제인 교육비세액공제제도를 폐지하고 자녀교육수당제도로 대체함
- 2017년 6월부터 자녀교육수당제도 역시 폐지됨

□ 항목별 공제는 실제 지출한 특정 항목에 대해서 개별적인 공제한도 규정 내에서만 적용되며, 통합한도 규정이나 개산공제제도는 없음

1) 항목별 소득공제

□ 공제가 허용되는 적격단체를 통해 2호주달러 이상의 물품이나 금품을 기부하고 증빙을 갖춘 경우 기부금공제를 할 수 있음[145)]
○ 들불·홍수재해 피해자 지원 인가단체에 대한 10호주달러 이하의 기부금에 한하여 증빙 없이도 공제할 수 있음
○ 토지, 예술작품, 기념품 등의 자산을 적격단체에 기부한 경우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를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음
- 거래를 통해 취득일로부터 12개월이 되지 않은 자산을 기부한 경우, 또는 취득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였지만 취득가액이 5,000호주달러를 초과하는 자산을 기부한 경우에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를 소득공제할 수 있음
○ 공제되지 않은 미사용 기부금은 5년간 차기로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음

□ 납세자의 세무신고, 세무자문, 세무자료 제출 관련 지출비용(cost of managing tax affairs)을 소득공제할 수 있음[146)]
○ 과세관청이 부과하는 지연납부 및 과태료 등으로 인해 발생한 이자 역시 공제할 수 있음

---

145) 피고용자가 임금삭감협약(Salary sacrifice arrangements for employees)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혹은 기부금을 지출하였더라도 이에 대한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본 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

146) 호주 국세청, https://www.ato.gov.au/Individuals/Income-and-deductions/Deductions-you-can-claim/Other-deductions/Cost-of-managing-tax-affairs(검색일자: 2017. 8. 25)

□ 과세대상 장학금(taxable scholarship)을 수급하기 위해 납세자 본인이 지출한 교육비를 소득공제할 수 있음[147]

○ 교과서, 문방용품, 학생회비, 컴퓨터 감가상각비용, 특정 수업비 등이 해당됨

○ 단, 해당 비용을 근로소득 관련 필요경비로 공제한 경우에는 공제할 수 없음

□ 납세자가 2017년 7월 1일 이후 퇴직연금(superannuation fund)나 퇴직저축계좌(retirement savings account)에 불입한 연금저축 기여금은 소득공제할 수 있음[148]

○ 2017년 6월까지는 근로자에 한해 퇴직연금 기여금 중 일정한도 내 금액을 소득공제를 할 수 있었음[149]

2) 항목별 세액공제

□ 순의료비 세액공제(total net medical expense rebate)는 납세자 본인과 부양가족을 위하여 지출한 장애 보조기구, 간병 서비스, 노인 요양비용 관련 의료비에 대해 10% 또는 20%의 세액공제를 허용함

○ 대상자는 납세자 본인, 배우자, 부양자녀(21세 이하의 자녀 혹은 21세 이상 24세 미만 정규과정 학생인 자녀)이며, 소득요건은 없음

- 타인에 의해 보전된 금액은 의료비에서 제외함

○ 세액공제액은 단독가구 여부, 조정과세소득 수준에 따라 2,265호주달러를 초과하는 의료비의 20% 또는 5,343호주달러를 초과하는 의료비의 10%임

---

147) 호주 국세청, https://www.ato.gov.au/Individuals/Tax-Return/2016/Supplementary-tax-return/Deduction-questions-D11-D15/D15-Other-deductions---not-claimable-at-items-D1-to-D14-or-elsewhere-on-your-tax-return-2016(검색일자: 2017. 8. 25)
취업, 직업 등과 관련하여 제공되는 조건부 장학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임

148) 호주 국세청, https://www.ato.gov.au/individuals/super/super-changes/change-to-personal-super-contributions-deductions(검색일자: 2017. 8. 25)

149) 호주 국세청, https://www.ato.gov.au/Individuals/Tax-Return/2016/Supplementary-tax-return/Deduction-questions-D11-D15/D12-Personal-superannuation-contributions-2016(검색일자: 2017. 8. 25)

○ 2012-13 과세연도부터 대상 의료비 항목이 장애, 간병, 노인 요양 분야로 축소됨에 따라 신청인원 수와 세액공제 규모가 현저하게 감소함

- 그 결과 2010-11 과세연도 대비 2014-15 과세연도 신청인원과 세액공제 규모는 각각 79.7%, 70.5%가 축소됨

〈표 Ⅲ-17〉 호주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2015-16)

(단위: 호주달러)

구분	조정과세소득(ATI)	세액공제
단독가구	90,000 이하	2,265를 초과하는 순의료비용의 20%
	90,000 초과	5,343를 초과하는 순의료비용의 10%

주: 다인가구의 기준소득금액은 단독가구의 2배이며, 두번째 부양자녀부터 자녀 1인당 1,500호주달러씩 증가됨

자료: 호주 국세청, https://www.ato.gov.au/Individuals/Tax-return/2016/Supplementary-tax-return/Tax-offset-questions-T3-T9/T5-Total-net-medical-expenses-for-disability-aids,-attendant-care-or-aged-care-2016(검색일자: 2017. 8. 25)

□ 민간 건강보험료(private health insurance) 세액공제는 납세자가 민간 건강보험에 가입한 경우, 최저 9.273%, 최고 37.094%의 세액공제를 허용함

○ 단독가구 기준 14만호주달러(다인가구 28만호주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적용 배제함

○ 호주는 납세자가 민간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납세자의 과세표준에 따라 의료보험 가산세(medical levy surcharge)를 부과함

〈표 Ⅲ-18〉 호주의 사적 건강보험료 세액공제 한도금액(2015-16)

(단위: 호주달러, %)

단독가구 소득수준	보험료 공제율		
	65세 미만	65세 이상 ~ 70세 미만	70세 이상
0 ~ 90,000	27.820(26.791)	32.457(31.256)	37.094(35.722)
90,001 ~ 105,000	18.547(17.861)	23.184(22.326)	27.820(26.791)
105,001 ~ 140,000	9.273(8.930)	13.910(13.395)	18.547(17.861)

주: 1. 다인가구의 기준소득금액은 단독가구의 2배이며, 두번째 부양자녀부터 자녀 1인당 1,500 호주달러씩 증가됨
2. 공제율 중 괄호 안의 수치는 2016년 4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적용되는 공제율(%)임

자료: 호주 국세청, https://www.ato.gov.au/individuals/medicare-levy/medicare-levy-surcharge/income-thresholds-and-rates-for-the-medicare-levy-surcharge/(검색일자: 2017. 8. 25)

□ 배우자 의무적 퇴직연금공제(superannuation contributions on behalf of your spouse)를 통해 최대 540호주달러를 세액공제할 수 있음[150]

○ 호주 거주자 부부인 납세자가 총소득 및 부가급여가 13,800호주달러 이하인 배우자와 생계를 함께하며 배우자의 의무적 퇴직연금 기여금을 대신 납부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음

○ 세액공제액은 납세자가 납부한 금액의 18%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540호주달러를 한도로 함

마. 저소득가정과 자녀양육에 대한 지원세제

□ 호주는 2012년 세제개혁을 통해서 저소득자와 자녀양육에 대한 세제지원을 재정정책으로 일원화하여 소득세제를 간소화함

○ Family Tax Benefit의 신청방법을 재정정책기관에 의한 직접 지급제로 전환함[151]

---

150) 호주 국세청, https://www.ato.gov.au/Individuals/Tax-Return/2016/Supplementary-tax-return/Tax-offset-questions-T3-T9/T3-Superannuation-contributions-on-behalf-of-your-spouse-2016(검색일자: 2017. 8. 25)

151) 호주 정부, http://guides.dss.gov.au/family-assistance-guide/1/2/1(검색일자: 2017. 8. 3)

- 이에 따라 소득세제는 간소화되고, 동시에 복지급여(transfer benefits)를 위한 납세자의 소득세 신고의무가 면제됨

○ 2014년 7월부터 55세 이상의 근로자(자영업자 포함)를 대상으로 한 노년층 근로자 세액공제(Mature Age Worker Tax Offset)를 50세 이상 또는 실업상태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재취업보조금(Restart Subsidy)제도로 통합하면서 폐지함

○ 과거의 노년층 세액공제(Senior Australian Tax Offset)와 연금수급자 세액공제(Pension Tax Offset)를 고령자·연금수급자 세액공제로 통합하는 한편, 노년층을 지원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급여 세액공제와 고령자연금생활자 세액공제의 중복적용을 배제함[152)]

1) 저소득자 세액공제(Low Income Earners Tax Offset)

□ 납세자의 과세표준이 37,000호주달러 이하인 경우 최대 445호주달러의 세액공제가 허용됨

○ 37,000호주달러를 초과하는 1달러당 1.5%씩 감액되며 과세표준이 66,667호주달러를 초과하면 적용 배제됨

- 명목상 소득세 면세점은 18,200호주달러이지만, 저소득자 세액공제를 고려하면 약 18,645호주달러가 실질적인 면세점이 됨

〈표 Ⅲ-19〉 호주의 저소득자 세액공제(2015-16)

(단위: 호주달러)

과세표준	저소득자 세액공제액
0 ~ 37,000	445
37,001 ~ 66,666	445 - {(과세표준) - 37,000 × 1.5%}
66,667 ~	-

자료: 호주 국세청, https://www.ato.gov.au/individuals/income-and-deductions/offsets-and-rebates/low-income-earners(검색일자: 2017. 8. 25)

152) ITAA 1936 - Sect 160AAA(4)

□ 저소득자 세액공제 현황을 살펴보면, 2012-13 과세연도부터 세액공제액 규모가 급격한 하락세를 보임

○ 2010-11 과세연도 대비 2014-15 과세연도의 신고인원 수는 857만명에서 661만명으로 22.8% 감소하고, 세액공제 신청액은 82억 6천만호주달러에서 20억 8,700백만 호주달러로 약 74.4% 감소함

□ 이러한 배경에는 최대 세액공제액이 당초 1,500호주달러에서 2012-13 과세연도부터 445호주달러로 삭감되고 소득세 면세구간의 인상이 있었던 것으로 보임

○ 2012년 7월부터 소득세 면세구간을 6,000호주달러에서 18,200호주달러로 상향조정하여 저소득층 세액공제를 적용받던 납세자의 소득세 신고의무를 면제함

2) 고령자·연금수급자 세액공제(Seniors Australians and Pensioner Tax Offset, SAPTO)

□ 해당 제도는 사회보장법상 노령연금 및 그 외 연금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세액공제제도로, 독신 여부와 소득기준에 따라 세액공제액이 결정됨[153)]

○ 독신인 경우에는 최대 세액공제액은 2,230호주달러이고, 소득기준 32,279호주달러를 초과하는 1달러당 12.5센트씩 감액되어 50,119호주달러 초과 시 적용배제됨

○ 부부의 경우에는 최대 세액공제액은 1,602호주달러이고, 소득기준 28,974호주달러를 초과하는 1달러당 12.5센트씩 감액되어 41,790호주달러 초과 시 적용배제됨

- 적용배제 소득기준은 부부합산 소득기준 83,580호주달러의 50%임

○ 질병요양 등으로 인해 별거하는 부부의 경우, 최대 세액공제액은 2,040호주달러이고, 소득기준 31,279호주달러를 초과하는 1달러당 12.5센트씩 감액되어 47,599호주달러 초과 시 적용배제됨

- 적용배제 소득기준은 부부합산 소득기준 95,198호주달러의 50%임

153) 소득기준은 당해 과세연도 과세대상 소득, 퇴직연금소득, 순투자손실, 조정복리후생소득을 모두 합한 환급소득(rebate income)임(ITAA36 s 6)

〈표 Ⅲ-20〉 호주의 고령자·연금수급자 세액공제(2015-16)

(단위: 호주달러)

세대 구분	최대 세액공제액	최소소득기준	최대소득기준[1]
독신	2,230	32,279	50,119
부부	1,602	28,974	41,790
부부 (질병요양 등 별거 중인 경우)	2,040	31,279	47,599

주: 1. 부부 세대의 최대소득기준은 합산소득의 50%로 계산함
자료: CCH(2015), p.839.

□ 미사용한 고령자·연금수급자 세액공제액은 배우자에게 이전하여 배우자의 납부세액에서 추가 공제할 수 있음[154]

○ 단, 납세자와 배우자 모두 고령자·연금수급자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이전할 수 있는 세액공제액은 동거 여부 및 배우자 과세표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됨

- 질병요양 등으로 인해 별거 중인 경우 2,040호주달러임
- 동거 배우자 소득이 6,000호주달러 이하인 경우 1,602호주달러이고, 6,000호주달러를 초과할 경우에는 "배우자의 세액공제액-{(배우자의 과세표준+비과세 연금소득-$6,000)×0.15}"에 의해 계산한 금액
- 배우자가 해외 거주자인 경우에는 "배우자의 세액공제액 - (배우자의 과세표준 × 0.15)"에 의해 계산한 금액

3) 사회보장급여 세액공제(beneficiary tax offset)

□ 사회보장급여 세액공제는 정부기관으로부터의 보조금(Australian Government Allowance and Payments) 외에는 다른 소득이 없는 납세자에게 적용됨[155]

---

154) 호주 국세청, https://www.ato.gov.au/Individuals/Income-and-deductions/In-detail/Transferring-the-seniors-and-pensioners-tax-offset(검색일자: 2017. 8. 25)

155) 정부기관 보조금은 호주 센터링크(Centrelink)에서 지급하는 보조금과 호주연방정부 교육보조

○ 사회보험급여 수령액에서 6,000호주달러를 차감한 금액에 15%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에서 공제함[156]
  - 급여수령액이 최소세율 과세표준 최고구간금액(37,000호주달러)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의 15%만큼 추가로 공제함

5. 캐나다

가. 개요

□ 캐나다는 중산층의 육성을 위해 2016년부터 다양한 공제제도를 축소·폐지하거나, 재정정책과 통합하여 소득세제를 공정하고 간소하며 성장 지향적인(Fair, simple and pro-growth) 방향으로 전환하는 특징을 보임[157][158]

○ 2016년 세법개정 시 외벌이 고소득 가구가 가장 큰 수혜자였던 가족세금감면(Family Tax Cut) 세액공제를 폐지함
  - 2014년에 도입된 가족세금감면 세액공제는 18세 이하 부양자녀가 있는 부부를 대상으로 50,000캐나다달러까지 부부간 소득이전을 허용하여, 최대 2,000캐나다달러까지 세액공제를 허용하였음

○ 장애가 있는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규정이 실무상 매우 복잡하게 적용되었으나, 2017년부터 캐나다간병공제(Canada Caregiver Credit, CCC)로 통합하여 납세자의 이용가능성을 높이고 중산층의 공제수준을 확대하고자 함[159]

금을 의미함. 센터링크는 호주의 중앙정부가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거의 모든 종류의 대민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정부기구임(장지연, 2005)

156) ITAA 1936 - Sect 160AAA(1),(3); ITR 1936 - Reg 152, Reg 148

157) 2015년 11월 선거를 통해 캐나다는 보수당에서 자유당으로 10년 만에 정권이 교체됨에 따라 기존 조세정책의 방향이 전환된 것으로 판단됨

158) Fraser Institute(2017)

159) 간병 공제(Caregiver Tax Credit), 간병 부양가족공제(Family Caregiver Tax Credit), 18세 이

○ 교육비나 대중교통비 등 특정지출에 대한 항목별 공제 역시 2016년부터 일부 폐지하거나 축소함

○ 자녀양육 지원세제로는 기존 18세 미만 부양자녀 세액공제(Child Amount Tax Credits) 외 여러 제도가 혼재하였으나, 2016년부터 이를 캐나다 자녀수당(Canada Child Benefit, CCB)으로 통폐합하여 고소득층의 수급액은 축소하고 중·저소득층의 수급액은 인상함

□ 캐나다의 인적공제와 특정지출에 대한 항목별 공제는 주로 세액공제의 방식으로 적용되며, 이 경우 공제별로 정해진 법정 기준금액에 대해 소득세 최저세율인 15%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함

나. 근로소득 필요경비에 대한 항목별 공제

□ 캐나다는 근로소득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필요경비의 공제와 개산공제인 급여소득자세액공제를 허용함

○ 근로소득자는 급여소득자, 커미션(commission)을 받는 소득자, 자영업자로서 근로소득(earned income)이 있는 납세자를 의미함

□ 근로소득 필요경비에 대한 항목별 공제는 소득공제 항목과 세액공제 항목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음

○ 소득공제 항목으로는 연간 협회·전문가 회원비 소득공제, 이사비용 소득공제, 기타 근로관련 필요경비 소득공제와 자녀양육비소득공제와 장애지원 소득공제가 있음

○ 세액공제 항목으로는 근로자 고용보험료 세액공제, 소방·구급 자원봉사자 세액공제, 캐나다 급여소득자 세액공제, 학교 교사 등이 근무상 필요에 의해 지출하였으나

상 병상자 공제(Infirm Dependent Tax Credit for Age 18 or Older)의 세 가지 제도를 캐나다 간병 공제로 통합함(캐나다 정부,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programs/about-canada-revenue-agency-cra/federal-government-budgets/budget-2017-building-a-strong-middle-class/consolidation-caregiver-credits.html(검색일자: 2017. 8. 25)

보전받지 못한 비용에 대한 적격교사 교구비용 세액공제(Teacher and Early Childhood Educator School Supply Tax Credit)가 있음[160]

□ 필요경비에 대한 항목별 공제를 신청하는 근로소득자는 해당 지출을 입증할 책임이 있음

○ 증빙서류의 구비, 장부의 기장(daily record of expenses), 그리고 관련 자료의 보관의무(6년)가 부과됨

1) 근로소득 필요경비에 대한 항목별 소득공제

□ 근로소득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연간 협회·전문가 회원비(annual union, professional, or like dues)는 소득공제할 수 있음

○ 다만, 초기 가입비, 면허비용, 특별 평가액 등은 적용대상이 아님

□ 근로소득자가 직업상 이유로 주거를 40km 이상 이전하게 된 경우 이사 관련 지출비용을 이사비용(moving expenses)으로 소득공제할 수 있음[161]

○ 대상비용에는 이사포장·위탁보관비, 여비, 관련 임시 식사비·숙소비용(최대 15일분까지), 기존 주거지 임대해지 소요비용, 행정 부수비용, 기존 주거지가 매각되지 않는 경우 이자비용·재산세·보험료·광열비 등 기존 주거지 유지비용(최대 5,000캐나다달러), 관련 부동산 매매비용 등이 포함됨

○ 전일제(full-time) 학생의 경우에도 주거지를 40km 이상 이전하게 된 경우 본인소득 중 장학금과 학비보조금 소득에 한하여 해당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음

---

160) 캐나다 정부,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programs/about-canada-revenue-agency-cra/federal-government-budgets/budget-2016-growing-middle-class/teacher-early-childhood-educator-school-supply-tax-credit.html(검색일자: 2017. 8. 25)

161) Income Tax Act § 62, 248(1), Line 219 Moving Expenses Deduction

□ 급여소득자는 고용주에 의해 보전되지 않는 업무관련 지출에 대해 기타 근로필요경비(other employment expenses)로 소득공제할 수 있음[162)]

○ 대상비용에는 회계/법무 비용, 자동차비용, 여비와 주차비, 소모품비, 보조원 인건비, 임차료, 홈오피스 비용 등이 있음

○ 임금수령을 목적으로 지출된 회계 및 법무비용은 소득공제할 수 있음

○ 공제대상 자동차비용(motor vehicle expenses)에는 자동차 연료비, 수리비, 보험료, 면허 등록비, 감가상각비, 구입대출금 이자, 리스 비용 등을 포함함

- 주행일지(full or simplified logbook)를 통해 주행거리, 목적지, 날짜 및 주행목적을 제출해야 하며, 승객용 자동차(passenger vehicle)에 해당하는 경우 감가상각비와 임차료의 공제에는 한도규정이 적용됨

○ 여비(travelling expenses)와 주차비는 급여소득자가 일상적으로 고용주 사업장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서 업무를 수행하며 지출한 식비와 숙소비용(lodging)을 포함함

○ 문구용품 등 소모품(supplies)을 급여소득자가 직접 구매하여 업무용으로만 사용한 경우 그 비용을 소득공제할 수 있음

○ 급여소득자가 근로계약상 보조원을 고용할 필요가 있을 경우 보조원에게 지급한 급여를 소득공제할 수 있음

○ 업무상 필요로 인해 사무실을 빌린 경우 그 임차료(office rent)를 소득공제할 수 있으며, 자택의 50% 이상을 사무실로 사용한 경우 홈 오피스 비용으로서 광열비, 수리비를 소득공제할 수 있음

□ 커미션을 받는 근로소득자는 급여소득자의 기타 근로필요경비 항목 외에도 세금신고를 위한 세무비용, 접대비, 광고 홍보비, 자격·면허비, 직무관련 교육비 등을 추가로 소득공제할 수 있음

---

162) 캐나다 정부,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services/tax/individuals/topics/about-your-tax-return/tax-return/completing-a-tax-return/deductions-credits-expenses/line-229-other-employment-expenses/salaried-employees.html(검색일자: 2017. 8. 25)

□ 맞벌이 부부가 취업, 학업 등의 이유로 위탁 보육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자녀양육비 소득공제(Child Care Expense Deduction)를 할 수 있음[163]

○ 실제 지출한 비용과 소득이 낮은 배우자의 근로소득 3분의 2 중 적은 금액을 공제한도 내에서 소득공제할 수 있음

- 공제한도액은 7세 미만 자녀는 자녀 1인당 8,000캐나다달러, 7세 이상 16세 이하 자녀는 자녀 1인당 5,000캐나다달러, 장애가 있는 자녀는 자녀 1인당 11,000캐나다달러임

○ 보육서비스(child care service)를 제공하는 보육시설 및 그와 관련된 교육시설, 어린이 보육이 주된 목적인 일일 캠프 또는 스포츠 학교, 기숙학교 등에 지출한 금액을 공제할 수 있음

- 단, 의료비, 의류, 교통비 및 레저 여가활동 비용, 정규학업 관련 학비는 제외함

□ 장애가 있는 납세자가 근로제공, 사업영위, 학업수행을 위하여 지출한 보조장비(assistive device) 또는 지원비용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할 수 있음[164]

○ 시각, 음성,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위한 도구·서비스, 장애인을 위한 직업상담 서비스 및 교육비 등에 대해 공제할 수 있음

○ 납세자 본인, 배우자와 18세 이하 자녀의 장애 등으로 인해 이용한 전일제·반일제 간병인, 가정부, 보호시설, 교육기관 등 가사도우미 서비스(attendant care deduction) 비용을 포함함

- 가사도우미 서비스 제공자는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납세자의 배우자는 제외함

○ 납세자가 지정 교육센터 또는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경우 교육기관 참관일수당 375캐나다달러씩(최대 150,000캐나다달러)을 추가적으로 공제할 수 있음

---

163) 캐나다 정부,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services/tax/technical-information/income-tax/income-tax-folios-index/series-1-individuals/folio-3-family-unit-issues/income-tax-folio-s1-f3-c1-child-care-expense-deduction.html(검색일자: 2017. 8. 25)

164) Income Tax Act § 64. Line 215 Disability Supports Deduction

2) 근로소득 필요경비에 대한 항목별 세액공제

□ 급여소득자가 납부한 고용보험료 근로자 부담분은 최대 143캐나다달러(=955×15%)를 한도로 세액공제할 수 있음[165]

○ 급여소득자는 근로소득 100캐나다달러 당 1.88캐나다달러를 고용보험료로 납부하게 되며,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15%를 세액공제할 수 있음

- 이 경우 근로소득이 50,800캐나다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해당하는 고용보험료 납부금은 세액공제할 수 없음

□ 200시간 이상 소방 또는 구급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한 경우에는 소방·구급 자원봉사자 세액공제(volunteer firefighters' amount and search and rescue volunteers' amount)로 450캐나다달러(=3,000×15%)를 세액공제할 수 있음[166]

□ 필요경비에 대한 항목별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은 급여소득자의 업무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캐나다 급여소득자 세액공제(Canada Employment Amount Tax Credit)가 적용됨

○ 급여소득이 있는 납세자에 한해 174캐나다달러(=1,161×15%)를 한도로 총급여소득액의 15%를 세액공제할 수 있음[167]

---

165) 캐나다 정부,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services/tax/individuals/topics/about-your-tax-return/tax-return/completing-a-tax-return/deductions-credits-expenses/line-312-employment-insurance-premiums-through-employment.html(검색일자: 2017. 8. 25)

166) 캐나다 정부,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services/tax/individuals/topics/about-your-tax-return/tax-return/completing-a-tax-return/deductions-credits-expenses/line-362-volunteer-firefighters-amount-line-395-search-rescue-volunteers-amount.html(검색일자: 2017. 8. 25)

167) Income Tax Acts. § 118(10)

다. 인적공제

□ 캐나다는 최근 세법개정을 통하여 복잡하고 중복적이었던 인적공제규정을 폐지, 통합하여 세제의 간소화와 효율성을 도모함

○ 18세 미만 부양자녀에 대한 인적세액공제는 사회복지정책과 연계하여 2015년부터 폐지하고, 중복적으로 운영되었던 장애, 병상자 등 추가인적세액공제를 캐나다 간병공제(CCC)로 통합하여 세제를 간소화함

1) 기본공제

□ 납세자 본인과 배우자에 대해서만 기본적인 인적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자녀나 기타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는 적용하지 않음

○ 납세자 본인과 배우자에 대해 각각 1,721캐나다달러(=11,474×15%)를 인적세액공제함

- 배우자에게 순소득이 있는 경우, 그 배우자 순소득은 법정기준금액인 11,474캐나다달러에서 차감함[168]

□ 한편 북부지역 거주자 공제(Northern Residents Deductions)를 통해 교통과 생활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북부 A, B지역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납세자는 거주일자별로 각각 11캐나다달러, 5.5캐나다달러를 소득공제할 수 있음[169]

○ 북부 A, B 지역에 주거지를 두고 있으며, 가구원 중 납세자 혼자 북부지역 거주자 공제를 신청한 경우에는 납세자가 북부 A, B 지역 주거지에 거주한 일자별로 각각 11캐나다달러, 5.5캐나다달러를 추가로 공제할 수 있음

---

168) 캐나다 정부,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services/tax/individuals/topics/about-your-tax-return/tax-return/completing-a-tax-return/deductions-credits-expenses/line-303-spouse-common-law-partner-amount.html(검색일자: 2017. 8. 25)

169) 캐나다 정부,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services/tax/individuals/topics/about-your-tax-return/tax-return/completing-a-tax-return/deductions-credits-expenses/line-255-northern-residents-deductions.html(검색일자: 2017. 8. 25)

2) 경로·장애에 대한 추가인적공제

□ 납세자 본인이 장기적 또는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장애가 있는 경우, 장애 세액공제(Disability Amount-Self Tax Credit)를 통해 1,200캐나다달러(=8,001×15%)를 세액공제할 수 있음

○ 납세자 본인이 18세 미만인 경우에는 700캐나다달러(=4,667×15%)를 추가 공제할 수 있으며 공제받지 못한 부분은 배우자, 부모 등에게 이전할 수 있음

□ 납세자 본인이 65세 이상으로 순소득 수준이 83,427캐나다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경로 세액공제(Age Amount Tax Credit)를 통해 최대 1,068캐나다달러를 세액공제할 수 있음[170]

○ 순소득이 35,927캐나다달러 이하일 경우 1,068캐나다달러(=7,125×15%)를 공제하며 35,927캐나다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5%를 공제금액에서 삭감함

□ 캐나다 간병세액공제(CCC)는 장애 부양가족 1인당 최대 1,032캐나다달러(=6,883×15%)를 세액공제할 수 있음

○ 2017년 세법개정을 통해 기존 간병공제(Caregiver Tax Credit), 간병 부양가족공제(Family Caregiver Tax Credit), 18세 이상 병상자 공제(Infirm Dependant Tax Credit for Age 18 or Older)의 세 가지 규정이 캐나다 간병세액공제로 통합됨

○ 장애가 없는 고령 부양가족을 공제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납세자와 함께 거주하지 않는 장애 부양가족을 공제대상에 포함함

- 대상 부양가족의 순소득은 23,046캐나다달러 이하이어야 함

---

170) 캐나다 정부,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services/tax/individuals/topics/about-your-tax-return/tax-return/completing-a-tax-return/deductions-credits-expenses/line-301-amount.html(검색일자: 2017. 8. 25)

○ 한편 18세 미만 자녀 또는 적격 부양가족의 순소득이 18,313캐나다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부양가족 1인당 322캐나다달러(=2,150×15%)를 추가로 세액공제함

3) 기타 추가인적공제

□ 배우자가 없는 납세자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납세자 본인에 대한 공제외에 배우자 공제와 동일한 금액인 1,721캐나다달러(=11,474×15%)를 추가로 세액공제할 수 있음[171]

○ 이때 부양가족이란 납세자의 부모, 조부모, 18세 미만이거나 장애가 있는 자녀, 손자/손녀, 형제자매를 의미함

라. 특정지출에 대한 항목별 공제

□ 캐나다는 기부금, 교육비, 대중교통비, 의료비, 퇴직연금저축 불입금, 캐나다 국민연금 보험료 등 특정 지출에 대해 항목별 공제를 허용함

1) 항목별 소득공제

□ 근로소득자는 퇴직연금저축(Registered Retirement Savings Plan, RRSP) 불입액에 대해 근로소득(earned income)별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할 수 있음[172]

○ 2016년 기준 RRSP의 한도는 직전연도 근로소득(prior year earned income)의 18%와 연간한도 25,370캐나다달러 중 적은 금액임

---

171) 캐나다 정부,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services/tax/individuals/topics/about-your-tax-return/tax-return/completing-a-tax-return/deductions-credits-expenses/line-305-amount-eligible-dependant.html(검색일자: 2017. 8. 25)

172) 캐나다 정부,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services/forms-publications/publications/t4040-rrsps-other-registered-plans-retirement-2016/rrsps-other-registered-plans-retirement.html(검색일자: 2017. 8. 25)

2) 항목별 세액공제[173]

□ 기부금세액공제는 정치단체 여부나 기부금 금액에 따라 15~75%의 공제율이 적용됨

○ 비정치단체 기부금의 경우에는 200캐나다달러 이하의 기부금은 15%의 공제율이 적용되고, 200캐나다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29%(납세자 과세소득 20만캐나다달러 이하인 경우) 또는 33%의 공제율(납세자 과세소득 20만캐나다달러 초과인 경우로 과세소득과 200캐나다달러 초과 기부금 중 적은 금액 한도)이 적용됨

○ 정치단체 기부금의 경우, 400캐나다달러 이하의 금액은 75%의 공제율이 적용되고, 750캐나다달러 이하의 기부금은 50%, 1,275캐나다달러 이하의 금액은 33%의 공제율이 적용됨

○ 지출액 한도를 살펴보면, 비정치단체 기부금은 납세자 순소득의 75%이고, 정치단체 기부금은 1,275캐나다달러 이하임

- 2007년 이후 최초 기부금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2013년 3월 이후에 지출한 기부금은 250캐나다달러(=1,000×25%)를 한도로 추가 세액공제할 수 있음

○ 비정치단체 기부금의 미사용공제액은 최대 5년까지 차기로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지만, 정치단체 기부금은 이월공제할 수 없음

□ 캐나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수업료에 한정하여 세제지원을 적용하는 한편, 캐나다 장학금(Canada Student Grants)과 연계되는 특징을 보임

○ 2017년부터 공제대상 비용을 수업료(tuition)로 한정하는 대신, 공제금액 한도수준을 상향조정함[174]

- 16세 이상 중등과정 후 교과과정에 대해 실제 지출한 수업료 전액을 공제대상 지출액으로 함
- 2017년부터 고등교육 기관에 의해 운영되는 직업기술 훈련 과정에 납부한 비용도 세액공제대상 수업료로 인정함

---

173) 이외에도 주택구매자 세액공제(Home buyers' amount), 장애인을 위한 주택개조 비용세액공제(Home accessibility expenses), 입양비용세액공제제도가 있지만, 본문에서는 제외함

174) 동시에 고등교육기관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캐나다 장학금지급액을 50% 상향조정하여 지급함

- 성인이 초중등 수준의 교육을 받는데 소요된 비용 역시 공제대상에 포함함

○ 캐나다는 학생인 납세자 본인의 미사용 교육비세액공제액(5,000캐나다달러 한도)을 부모, 조부모, 또는 배우자가 사용토록 허용함

○ 한편, 16세 미만 자녀 또는 18세 미만 장애자녀를 대상으로 한 예술교육비세액공제와 체육교육비세액공제는 2017년부터 폐지함

□ 캐나다는 납세자 본인, 배우자, 18세 미만 자녀가 지출한 대중교통비에 15%의 공제율로 세액공제를 허용하였으나, 2017년 7월부터 폐지함[175]

□ 납세자 본인,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를 위해 지출한 총의료비 중 납세자 순소득의 3% 또는 2,237캐나다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은 의료비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음[176]

○ 의료비세액공제 대상 비용에는 가사도우미 비용, 치과·병원에서 지출한 의료비, 의료용구·안경 구입비용, 약품 조제비용 등이 있음

□ 한편 납세자 또는 배우자가 기타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중 해당 부양가족 순소득(net income)의 3% 또는 2,237캐나다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기타 부양가족 의료비 세액공제(medical expenses for other eligible dependants)를 신청할 수 있음

○ 기타 부양가족에 대한 총지출액이 아니라 해당 부양가족별로 세액공제금액을 산출함

---

175) 캐나다 정부,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programs/about-canada-revenue-agency-cra/federal-government-budgets/budget-2017-building-a-strong-middle-class/public-transit-tax-credit.html(검색일자: 2017. 8. 25)

176) 캐나다 정부,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services/tax/individuals/topics/about-your-tax-return/tax-return/completing-a-tax-return/deductions-credits-expenses/lines-330-331-eligible-medical-expenses-you-claim-on-your-tax-return.html(검색일자: 2017. 8. 25)

□ 18세 이상 캐나다 거주자로 3,465캐나다달러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는 장애 납세자가 장애지원 소득공제를 신청한 경우 장애 의료비 보조 환급금(Refundable medical expense supplement)으로 최대 1,187캐나다달러를 한도로 세액공제할 수 있음

○ 다만, 가구 합산 소득이 50,017캐나다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적용배제됨

□ 급여소득자가 지출한 캐나다 국민연금(CPP, Canada Pension Plan) 납부액에 대해 최대 2,544.30캐나다달러를 한도로 15%의 공제율을 적용한 금액을 세액공제할 수 있음

3) 최저한세

□ 캐나다는 공제로 인한 과도한 세경감 효과를 제한하기 위해 최저한세(Minimum tax) 규정을 두고 있음

○ 소득공제나 세액공제의 적용으로 인한 기본면세금액(basic exemption)이 40,000 캐나다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해 15%의 세율로 최저한세를 납부하여야 함

○ 대상 세제지원으로는 양도소득공제, 배당세액공제, 유한파트너십 손실공제, 투자공제, 정치기부금세액공제, 종업원주거이전대출 소득공제, 특정 투자에 대한 운용손실, 탐사비·개발비 또는 캐나다 석유 및 가스자산 감모손실 등이 있음

마. 저소득가정과 자녀부양에 대한 지원세제

1) 근로장려세제(Working Income Tax Benefit, WITB)

□ 캐나다는 연방정부가 아닌 주정부에서 근로장려세제를 운영하며, 1년 동안 캐나다에 계속 거주한 급여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저소득자를 대상으로 함[177]

177) 캐나다 정부,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services/child-family-benefits/working-income-tax-benefit-witb/refundable-tax-credit-working-income-tax-benefit

□ 캐나다는 연방정부가 아닌 주정부에서 환급형 세액공제인 근로장려세제(WITB)를 운영함

○ 1년 동안 캐나다에 계속 거주한 19세 이상인 캐나다 거주자 중 급여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3,000캐나다달러 이상인 납세자를 대상으로 하며, 가구원구성에 따라 점증-평탄-점감구간별로 장려금을 차등지급함[178)]

- 2016년 기준 독신 근로자는 최대 1,028캐나다달러를 수급할 수 있으며, 순 소득이 11,675캐나다달러 이상인 경우 장려금을 수급할 수 없음
- 2016년 기준 배우자가 있는 근로자는 최대 1,868캐나다달러를 수급할 수 있으며, 순소득이 28,576캐나다달러 이상인 경우 장려금을 수급할 수 없음

○ 19세 미만이더라도 배우자가 있거나 기타 부양가족이 있는 납세자는 근로장려금을 수급할 수 있음

2) 자녀양육 지원세제

□ 캐나다는 인적공제 중 18세 미만 부양자녀 세액공제를 포함하여 여러 가지 자녀양육 지원세제를 운용하였지만, 최근 세법개정 시 사회복지정책과 연계하여 세제지원제도를 축소, 폐지함

○ 2015년 부양자녀세액공제를 폐지하고, 2016년에는 자녀세액공제(Canada Child Tax Benefit), 자녀수당보조금(National Child Benefits Supplement)과 국가기본자녀양육보조금 (Universal Child Care Benefit)을 캐나다 자녀수당(CCB)으로 통합함[179)]

-calculation.html(검색일자: 2017. 8. 25)

178) 캐나다 정부,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services/child-family-benefits/working-income-tax-benefit-witb/refundable-tax-credit-working-income-tax-benefit-calculation.html(검색일자: 2017. 8. 25)

179) CBC News, http://www.cbc.ca/news/business/canada-child-benefit-social-safety-net-baby-bonus-childcare-justin-trudeau-social-assistance-1.3685290(검색일자: 2017. 8. 10)

- 현행 캐나다 자녀수당은 6세 미만 자녀 1인당 연간 6,400캐나다달러, 6세 이상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연간 5,400캐나다달러를 한도로 지급하고, 가구소득이 30,000캐나다달러를 초과할 때부터 수급액의 경감이 시작하여 200,000캐나다달러를 초과할 경우에는 지급이 중단됨

Ⅳ. 국제비교 및 우리나라 근로소득세 공제제도의 특징

1. 국제비교

□ 소득세는 소득획득에 소요된 지출과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지출을 차감한 순소득액에 대해 과세하여야 한다는 것이 통념이지만, 이를 어떻게 소득세제에 녹여낼 것인가 하는 입법적인 대응은 국가마다 차이가 있음[180]

○ 경제적 소득활동을 위해 필요적으로 지출된 비용은 소득세제 내에서 소득공제의 방식으로 규정하는 것이 공통적으로 보이는 현상임

○ 반면 특정 지출에 대한 세무처리는 국가마다 차이가 있음

□ 그리고 필요경비 또는 불가피한 지출의 종류나 범위 역시 국가마다 차이가 있는데, 이는 각 국가의 역사적 배경이나 사회·문화·정치적 인식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 예를 들자면, 미국과 캐나다는 자녀보육비용(child care expenses)을 업무와 관련된 비용(business expenses)으로서 공제를 허용하지만, 프랑스는 생계 유지를 위한 개인적 지출로 보고 항목별 공제로서 세액공제를 허용함

○ 일본 역시 자녀보육비를 개인적 영역이지만 경제적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지출로 보고 공제를 허용하였지만, 재정정책과의 중복지원을 이유로 16세 이하 자녀에 대한 보육비 공제제도를 폐지함

---

180) 이와 같은 통념을 순소득과세의 원칙(Nettoprinzip)이라고 함. 순소득과세의 원칙은 소득세제가 납세의무자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조세를 부담한다는 응능과세원칙에 그 터를 두고 있기 때문에 도출되는 원칙임(김완석, 2010, p.403 각주 9)

□ 본 보고서에서는 근로소득세 공제체계를 근로소득 필요경비에 대한 항목별 공제, 인적 공제, 특정지출에 대한 항목별 공제로 구분하여 국제비교함

가. 근로소득 필요경비에 대한 항목별 공제

1) 실제 지출한 비용의 공제와 개산공제

□ 근로소득 필요경비를 실제 지출한 비용을 기준으로 항목별로 공제하는 경우, 납세의무자 대부분이 근로소득자라는 과세행정상 현실을 감안할 때 행정비용이 많이 발생할 수 있음

○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으로 종결할 수 있는 소득세 신고의무를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연장케 하거나,

○ 중첩적 비용을 포함한 개인적 비용의 공제를 통한 납세자의 조세회피, 개인적 지출과 업무관련 지출의 구분에 대한 과세행정과 납세자 간 분쟁 및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과세행정비용이 과도하게 발생함

□ 과도한 과세행정 부담을 줄이고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과의 과세소득 포착률을 조정하기 위하여 대부분의 조사대상국가는 근로소득 필요경비에 대해 개산공제규정을 도입함

○ 다만, 호주는 상대적으로 넓은 범위의 실제 지출된 업무관련 비용에 대하여 공제를 허용함

- 최근 개인적 비용의 공제를 통한 조세회피와 과다한 조세행정비용을 개선하기 위해 개산공제 도입안이 제시되었으나, 개산공제 적용 시 과도하게 공제가 이루어져 세수가 감소할 위험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도입되지 않았음

□ 개산공제의 운용방법을 살펴보면 개산공제만을 단독 적용하거나(한국), 개산공제와 필요경비에 대한 항목별 공제 간에 선택적으로 적용하거나(미국, 프랑스), 또는 개산공제와 필요경비에 대한 항목별 공제를 동시에 적용함(일본, 캐나다)

○ 한국은 근로소득 필요경비로서 근로소득공제만을 허용함
  - 이 경우 실제 발생비용의 비중이 낮은 근로자에게는 상대적으로 높은 공제율이 적용되고, 비중이 큰 근로자에게는 충분한 공제율이 적용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음
○ 미국, 프랑스는 납세자가 실제 지출한 비용을 기준으로 한 항목별 공제와 개산공제 중 선택하도록 함
  - 미국은 근로소득 관련 실제 지출 비용을 항목별 공제를 합산한 금액과 표준소득공제액(개별신고 기준 6,300달러)을 비교하여 선택할 수 있으며, 대다수 근로자는 개산공제를 선택함
  - 프랑스는 실제 지출한 비용의 공제와 총급여액에서 사회보장세 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의 10%(최대 12,183유로)에 해당하는 근로소득공제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데, 대다수 근로자는 개산공제를 선택함
○ 일본과 캐나다는 실제 지출한 비용의 공제와 개산공제를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음
  - 일본은 1987년부터 실제 지출한 비용의 제한적인 공제를 허용하다가, 개산공제율의 하향조정을 보완하는 동시에, 실제 지출한 필요경비의 공제율을 현실화하기 위해 실제 지출한 비용의 공제범위를 2013년부터 확대함
  - 캐나다는 근로소득 필요경비에 대한 항목별 공제와 항목별 공제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적 비용의 공제를 위해 개산공제를 추가적으로 신청할 수 있음

2) 중첩적 비용

□ 실제 지출한 비용을 기준으로 근로소득 필요경비에 대한 항목별 공제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해당 비용의 업무관련 여부와 중첩적 비용(mixed expenses)에 대한 각국의 가정에 따라 세무처리가 결정됨[181]
  ○ 미국, 프랑스, 호주, 캐나다는 업무적 요소(business expenses)와 개인적 요소(personal consumption)를 완전히 구분할 수 없다는 가정을 두고, 중첩적 비용의 배분을 허용함[182]

181) 이창희(2009), p.404

○ 일본은 과거에는 중첩적 비용의 공제를 허용하지 않았으나, 최근 개정을 통해 업무적 요소와 개인적 요소가 명확히 구분되는 경우에 한하여 중첩적 비용을 제한적으로 공제함

□ 조사대상국별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중첩적 비용은 통근비(commuting), 출장비, 의복비(clothing), 교육비, 자녀보육비(child care cost)가 있는데 이들 국가들의 세무처리는 사회·문화·정치·경제적 배경에 따라 차이를 보임[183]

□ 통근비는 주거선택에 대한 납세자의 통제가능성 여부에 대한 가정에 따라 공제허용 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판단됨[184]

○ 미국은 납세자에게는 주거선택의 자유가 있다는 가정 하에 통근비를 개인적 비용으로 보고 필요경비 공제를 허용하지 않음

○ 프랑스는 주거 형태는 납세자의 통제하에 있지 않는다는 가정에서 통근비의 공제를 허용하는데, 정상적(normal)인 범위 내에서 자택과 근무지 사이의 최단거리를 기준으로 공제액을 결정함

○ 일본에서는 고용주가 지불한 통근비용은 일정 한도 내에서 비과세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필요경비 공제를 허용함

○ 호주와 캐나다는 주택으로부터의 통근비용은 전적으로, 그리고 배타적으로(wholly and exclusively) 업무와 관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필요경비의 공제를 부인하지만, 근무지 간 통근비는 공제할 수 있음

□ 출장비는 통상적인 업무장소에서와의 거리가 관련 비용을 정당화하기에 충분한가에 따라 공제 여부가 결정됨

---

182) Avi-Yonah, Reuven, Nicola Sartori, and Omri Marian(2011), pp.61~62

183) Avi-Yonah, Reuven, Nicola Sartori, and Omri Marian(2011), pp,48~53; Victor Thuronyi, Kim Brooks, and Borbála Kolozs(2016), p.227

184) Avi-Yonah, Reuven, Nicola Sartori, and Omri Marian(2011), pp.48~50

○ 미국, 프랑스, 호주, 캐나다는 납세자의 통상적인 업무장소에서 벗어난 출장비 및 관련 식비, 여비교통비, 숙박비를 공제함

○ 일본은 고용주가 출장비를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근로소득 필요경비로서의 출장비 공제를 규정하지 않음

□ 의복비는 개인적인 선택이 가능하다는 가정에 따라 대부분 공제가 부인되며, 비록 공제가 허용되더라도 공제수준은 제한적이고 해당 비용에 대한 엄격한 입증책임이 부여됨[185)]

○ 미국, 프랑스는 고용주의 요구에 의한 작업복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필요경비 공제를 허용하고, 일본은 2013년부터 근무장소에서 착용하는 한도 내 의복비에 대해 공제를 허용함

○ 호주는 현재는 완화되었지만, 과거 공제대상 작업복을 승인작업복 등록(a register of approved occupational clothing)에 등록할 것을 요구하여, 의복비에 대한 엄격한 입증책임을 부여하였음

□ 직무관련 교육비(또는 연수비) 공제는 대부분 조사대상 국가에서 현업에 필요한 기술과 지식습득에 대한 비용으로 제한함

□ 자녀보육비는 과거 자녀에 대한 결정은 전적으로 개인적 영역에 속한다고 보고, 일반적으로 필요경비로 보지 않았지만, 여성의 사회진출이 증가함에 따라 자녀보육 부담의 경감을 위해 필요경비 공제 또는 항목별 공제를 허용함[186)]

○ 미국과 캐나다는 근로소득자나 자영업자의 업무관련 자녀보육비에 대해서는 공제를 허용하고, 프랑스는 개인적인 지출로 보지만 자녀보육에 대한 세제지원의 일환으로 공제를 허용함

---

185) Avi-Yonah, Reuven, Nicola Sartori, and Omri Marian(2011), p.50

186) Burns and Krever(1999), p.513; Avi-Yonah, Reuven, Nicola Sartori, and Omri Marian (2011), p.51

○ 일본과 호주는 재정정책과의 통합과정에서 자녀보육에 관한 세제지원을 축소하거나 폐지함

□ 그 외에도 본인소유 차량비용이나 개인 소유 컴퓨터 등 감가상각비, 재택근무로 인한 운영비 등을 공제하는 경우가 있음

〈표 Ⅳ-1〉 조사대상 국가별 주요 중첩적 비용의 필요경비 공제 현황

구분	통근비	출장비	본인소유 차량비용	의복비	교육비	자녀 보육비	홈오피스 운영비
미국	×	허용	×	허용	허용	허용 (세액공제)	허용
프랑스	허용	허용	허용	허용	허용	× (항목별 공제)	허용
일본	허용	×	×	허용	허용	×	×
호주	×	허용	허용	허용	허용	×	×
캐나다	×	허용	허용	×	허용	허용	허용

주: 1. 미국은 근무지 이전으로 인한 이사비용은 공제함
2. 프랑스의 통근비는 40킬로미터 이내로 한정되며, 주거 이외 이중거주로 인한 비용도 공제됨. 자녀보육비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지만 항목별 공제로 반영됨
3. 일본 통근비는 통근수당 중 과세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 필요경비로 공제하며, 전근에 따른 이주비용을 포함함. 단신 부임 등으로 인한 근무지-거소나 주소지 귀가여비도 포함함. 출장비는 고용주가 부담하므로 근로소득자의 필요경비로 규정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4. 호주에서 주거지와 직장 간 통근비는 공제대상이 아니지만, 출장지와 주거지 간 통근비는 공제함
5. 캐나다는 통근비는 공제하지 않으나, 새로운 근무지 이전으로 인한 이전비용은 공제함

자료: 제III장 본문 내용을 요약·정리함

3) 근로소득 필요경비에 대한 항목별 공제의 한도

□ 대부분 조사대상 국가는 과세행정의 간소화나 중첩적 비용의 제한 등을 이유로 최소지출기준을 초과한 비용에 한하여 필요경비를 공제하거나, 일정한도 내 필요경비만을 공제함

□ 근로소득 필요경비에 대한 항목별 공제를 실제 지출한 비용의 공제와 개산공제 중 선택토록 하는 미국, 프랑스와 중복적용이 가능한 일본, 캐나다의 한도규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미국은 조정총소득금액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만 허용하는 최소지출 기준과 항목별 소득공제의 통합한도 규정이 있음

- 이 경우 근로소득 필요경비는 특정지출에 대한 항목별 공제와 합산하여 2% 최소지출 기준과 통합한도 규정이 적용됨
- 개산공제인 표준소득공제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6,300달러(개별신고 기준)를 공제함

○ 프랑스는 개산공제의 최고 공제액을 12,183유로로 한정하고, 실제 지출한 비용을 공제하는 경우에는 정상적인 범위의 비용공제를 위해 개별 지출항목별 한도를 정함

- 개별 지출항목별 한도를 살펴보면, 통근비는 40킬로미터 이내 거리로 한정하고, 컴퓨터 등 업무관련 기구 구입비는 500유로, 식비는 1회 4.7유로임

○ 일본은 개산공제인 급여소득공제는 230만엔(2016년)을 한도로 하고, 실제 지출한 비용의 공제에 대해서는 최소지출기준을 정함

- 급여소득공제액의 50%를 초과하는 실제 지출한 비용에 한하여 공제를 허용함
- 65만엔을 한도로 하는 도서 구입비, 의복비 등과 같은 근무필요경비 외에는 통근비, 이주비, 연수비, 자격증 취득비용, 귀가여비 등에 대해서는 공제한도가 없음[187]

○ 캐나다는 실제 지출한 비용을 공제하는 경우에는 항목별로 개별적인 공제한도를 두고 있으며, 개산공제인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최대 174.15캐나다달러(=1,161×15%)를 한도로 함

□ 호주는 실제 지출한 비용을 기준으로 항목별 공제만을 허용하며, 대상 비용항목별 개별공제 기준을 가지고 있지만, 통합적인 한도는 없음

---

187) 일본은 실제 지출한 비용의 공제에 대해서도 2015년까지 급여수입금액 1,500만엔 초과 시 125만엔을 공제한도로 규정하였으나, 2016년부터 공제한도 규정을 폐지함

〈표 Ⅳ-2〉 조사대상 국가별 근로소득 필요경비 공제 규정

구분	필요경비 공제	최소지출기준, 공제율, 공제한도
한국[1]	- 근로소득공제 (개산공제)	- 총급여액 구간별 최고 70%(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최저 2%(총급여액 1억원 초과)의 공제율을 적용함 - 근로소득공제는 한도 없이 적용됨
미국	- 실제 지출한 비용의 항목별 공제와 표준소득공제 (개산공제) 중 선택	- 실제 지출한 비용의 항목별 공제의 경우, 조정총소득금액 2% 초과분을 공제대상으로 하며, 항목별 공제와 함께 통합한도 규정이 적용됨 - 표준소득공제액은 개별신고 기준 6,300달러임
프랑스	- 실제 지출한 비용의 항목별 공제와 근로소득공제 (개산공제) 중 선택	- 실제 지출한 비용의 항목별 공제는 항목별로 개별한도가 있으나, 통합한도 규정은 없음 - 근로소득공제는 (총급여액-사회보장세 보험료)의 10% (최대 12,183유로, 최소 938유로)임
일본	- 급여소득공제 (개산공제)와 실제 지출한 비용의 항목별 공제 동시적용	- 실제 지출한 비용의 항목별 공제는 급여소득공제액 50%를 초과하는 특정 지출을 대상으로 한도 없이 공제함 (도서비나 의복비 등 근무필요경비는 65만엔 한도로 함) - 급여소득공제의 경우 최고 40%(급여수준 65만엔 초과 180만엔 이하)에서 최저 5%의 공제율(1,000만엔 초과 1,200만엔 이하)이 적용되고, 공제한도는 230만엔(2016년)임
호주	- 실제 지출한 비용의 항목별 공제	- 실제 지출한 비용의 항목별 개별공제한도 규정은 있으나, 통합한도 규정은 없음
캐나다	- 실제 지출한 비용의 항목별 공제와 급여소득자세액공제 (개산공제) 동시 적용	- 실제 지출한 비용의 항목별 공제의 경우, 개별공제한도 규정은 있으나, 통합한도 규정은 없음 - 캐나다 급여소득자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최대 1,161캐나다 달러)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함

주: 1. 한국의 '근로소득세액공제' 규정은 물가상승이나 임금상승 등으로 인한 세부담 완화라는 도입취지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소모품 등의 필요경비에 대한 추가공제를 위한 캐나다의 급여소득자 세액공제와 유사한 필요경비 공제라고 보기 어려움

자료: 제II장, 제III장 본문 내용을 요약·정리함

나. 인적공제

1) 개요

□ 인적공제는 공통적으로 가족 구성원에 대한 기본적인 인적공제와 장애·경로·자녀에 대한 추가적인 인적공제로 구분할 수 있음

○ 한국, 미국은 납세자 본인, 배우자와 기타 부양가족에 대해서, 일본은 납세자 본인, 배우자, 16세 이하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에 대해서, 그리고 캐나다는 납세자 본인과 배우자에 대해서만 기본적인 인적공제를 허용함

- 일본은 재정정책과의 이중 적용을 이유로 최근 세법개정을 통해 조세정책상 16세 이하 부양자녀에 대한 인적공제의 적용을 폐지함
- 캐나다는 2015년부터 재정정책과 연계하여 18세 미만 부양자녀에 대한 기본적인 인적공제를 폐지함

○ 호주와 프랑스는 납세자 본인을 비롯한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적인 인적공제가 없음

- 호주는 면세점을 높게 설정하고, 재정정책과 연계하여 가족 구성원 생계유지를 위해 지원하기 때문에 조세정책상 인적공제 대부분을 폐지하였음
- 프랑스는 부양가족 수에 따라 세부담을 경감하는 가족계수제도가 있으므로 인적공제(기본공제)를 두지 않음

○ 조사대상국가 모두 장애·경로에 대한 추가적인 인적공제를 허용하고 있지만, 적용대상의 범위에는 차이가 있음

2) 기본인적공제

□ 다음에서는 한국, 미국, 일본, 캐나다의 납세자 본인, 배우자, 부양자녀,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적인 인적공제를 살펴봄

○ 호주는 인적공제를 재정정책으로 통합하였고, 프랑스는 가족계수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기본적인 인적공제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한국은 납세자 본인, 소득요건을 충족한 배우자, 연령요건과 소득요건을 충족한 부양가족에 대하여 1인당 연 150만원의 소득공제를 적용함

○ 부양가족에 대한 연령요건과 소득요건이 있음

- 연령요건은 직계존속의 경우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 만 20세 이하, 형제·자매의 경우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10세 미만의 위탁아동임
-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은 100만원 이하(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이어야 함

○ 장애인의 경우는 연령요건이 적용되지 않음

□ 미국은 납세자 본인, 배우자, 자녀, 3촌 이내 친족에 대하여 1인당 연 4,050달러의 소득공제를 적용함

○ 자녀의 연령은 19세 이하(학생인 경우 24세 이하)이고, 부양가족의 소득요건은 소득금액 인적공제액 미만이어야 함

○ 해당 부양가족 생계비의 50%를 초과하여 납세자가 부담하여야 한다는 생계비 부담요건을 가지고 있음

○ 납세자 본인의 조정총소득이 381,9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인적공제의 적용을 배제함

□ 일본은 납세자 본인, 배우자, 소득요건과 연령요건을 충족하는 부양가족(16세 미만 자녀 제외)에 대하여 1인당 38만엔(단, 19세 이상 23세 미만의 부양가족은 63만엔)을 소득공제함

○ 부양친족의 경우 16세 이상이며, 소득금액이 38만엔 이하(급여소득만 있는 경우 103만엔)이어야 함

○ 재정정책과의 이중적용을 이유로 최근 세법개정을 통해 소득세에서는 16세 이하 부양자녀에 대한 인적공제의 적용을 폐지함

□ 캐나다는 납세자 본인과 배우자에 대해서만 각각 1,721캐나다달러(=11,474×15%)의 세액공제를 허용하며,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는 적용하지 않음

○ 배우자세액공제의 경우, 법정 기본금액인 11,474캐나다달러에서 배우자의 소득을 차감한 금액의 15%를 세액공제함

○ 2015년부터 재정정책과 연계하여 18세 미만 부양자녀에 대한 기본적인 인적공제를 폐지함

〈표 Ⅳ-3〉 조사대상 국가별 기본인적공제 비교

국가	대상자 및 내용	공제 방법	공제액	연령요건	소득·생계비 부담요건
한국	- 본인, 배우자, 자녀 - 부양가족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위탁아동)	**소득 공제**	- 1인당 연 150만원	- 직계존속 만 60세 이상 - 직계비속 만 20세 이하 - 형제자매 20세 이하, 60세 이상 - 10세 미만 위탁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 장애인 연령요건 없음	- 배우자 및 기타 부양가족의 요건은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 생계비 부담요건 없음
미국	- 본인, 배우자, 자녀 - 부양가족 (3촌 이내 친족)	**소득 공제**	1인당 연 4,050달러	- 자녀 19세 이하 (학생 24세 이하)	- 배우자와 기타 부양가족요건은 소득금액이 인적공제액 미만 - 납세자는 부양가족의 생계비의 50% 초과하여 부담
일본	- 본인, 배우자, 자녀 - 부양가족 (6촌 혈족, 3촌 인척, 위탁아동, 위탁노인)	**소득 공제**	- 본인, 배우자 각각 38만엔 - 부양가족은 연령에 따라 1인당 38만엔(16세 이상~19세 미만, 23세 이상), 63만엔(19세 이상~23세 미만)	- 자녀 16세 이상	- 배우자와 기타 부양가족요건은 38만엔 이하(급여소득만 있는 경우 103만엔 이하) - 생계비 요건 없음
캐나다	- 본인, 배우자	세액 공제	- 본인, 배우자 각각 1,721캐나다달러 (=11,474캐나다달러의 15%)		- 배우자의 순소득이 11,474캐나다달러 이하 - 생계비 요건 없음

주: 1. 프랑스의 경우, 가족계수제도의 운용으로 기본인적공제 규정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2. 호주는 가족 구성원에 대한 지원정책을 재정정책으로 통합하여 기본인적공제 규정이 없음
3. 미국은 납세자 본인의 조정총소득금액이 381,900달러 초과시 인적공제의 적용이 배제됨
4. 우리나라, 미국, 일본은 기본인적공제는 소득공제의 방법으로, 캐나다는 세액공제의 방법으로 규정함
5. 캐나다는 자녀와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가 없으며, 납세자 본인과 배우자에 대해 각각 일정액을 세액공제함

자료: 제II장, 제III장 본문 내용을 요약·정리함

3) 경로·장애에 대한 추가 인적공제

□ 조사대상국은 납세자 및 기본인적공제 대상자가 경로대상자이거나 장애인인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인적공제를 허용함

○ 다만, 미국은 납세자 본인에 한하여 추가 인적공제를 적용하고, 캐나다는 경로에 대한 추가인적공제를 납세자 본인에 한함

□ 미국, 프랑스, 호주, 캐나다는 높은 수준의 금액을 세액공제의 방법으로 규정하는 반면, 엄격한 소득요건을 적용하여 주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함

○ 미국은 최대 5,000달러의 세액공제가 허용되지만, 조정총소득금액이 17,500달러(비과세 사회보장급여 5,000달러) 이상인 경우에는 추가적인 인적공제의 적용을 배제함

○ 프랑스는 최대 2,347유로의 세액공제가 가능하지만 종합소득이 23,720유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배제함

- 종합소득이 14,730유로 이상 23,720유로 이하인 경우 1인당 1,172유로를 세액공제하며, 납세자의 종합소득이 23,720유로를 초과하면 적용배제함

○ 호주는 최대 2,588호주달러의 세액공제가 가능하지만, 납세자의 과세표준은 100,000호주달러 이하이고 부양가족 등의 과세표준은 10,634호주달러 미만인 경우에 한함

○ 캐나다는 납세자 본인에 대해 최대 1,068캐나다달러의 경로 세액공제와 1,200캐나다달러의 장애 세액공제, 그리고 장애가 있는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최대 1,032캐나다달러의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지만 엄격한 소득요건이 있음

- 경로 세액공제의 경우, 납세자의 순소득이 35,927캐나다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공제액을 삭감하며, 순소득이 83,427캐나다달러 초과시 적용을 배제함
- 장애 부양가족에 대한 추가공제는 부양가족의 순소득이 23,046캐나다달러 이하인 경우에 한해 적용함

□ 한국과 일본은 경로·장애에 대한 추가적인 인적공제를 소득수준에 대한 제한 없이 허용함

○ 한국은 70세 이상 경로자 1인당 연 100만원, 장애인 1인당 연 200만원의 추가적인 인적소득공제를 허용함

○ 일본은 배우자와 부양가족이 70세 이상인 경로자, 장애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공제액을 소득공제함

- 추가소득공제규모는 70세 이상 경로자의 경우 10만엔, 20만엔(직계존속), 장애인의 경우 최소 27만엔에서 최대 75만엔임

〈표 Ⅳ-4〉 조사대상 국가별 경로·장애 추가 인적공제 비교

국가	공제 적용대상	공제방법	1인당 공제액	납세자 소득기준
한국	기본공제 대상자	**소득공제**	- 경로우대 연 100만원 - 장애인 연 200만원	없음
미국	납세자 본인	세액공제	- 경로·장애 최소 연 5,000달러(개별신고기준)	조정후총소득금액 17,500달러 (비과세 사회보장급여 5,000달러) 미만
프랑스	기본공제 대상자	세액공제	- 경로·장애 최대 연 2,347유로	종합소득 23,720유로 이하
일본	기본공제 대상자	**소득공제**	- 경로자 최대 연 20만엔 - 장애인 최대 연 75만엔	없음
호주	기본공제 대상자	세액공제	- 병상자 및 간병인 최대 연 2,588호주달러	납세자의 과세표준 100,000호주달러 (대상 부양가족은 10,634호주달러) 미만
캐나다	납세자 본인	세액공제	- 경로자 최대 1,068캐나다달러 - 장애인 최대 1,200캐나다달러 (18세 미만 700캐나다달러 추가공제)	경로자의 경우 납세자 순소득 83,427캐나다달러 이하
	부양가족	세액공제	- 장애 부양가족 1인당 최대 1,032캐나다달러 (18세 미만 자녀 등 322캐나다달러 추가공제)	대상 부양가족의 순소득이 23,046캐나다달러 이하

자료: 제II장, 제III장 본문 내용을 요약·정리함

4) 기타 추가 인적공제

□ 한국은 납세자 본인이 부녀자인 경우와 한부모인 경우 추가적인 인적공제를 허용하는데 부녀자 소득공제는 저소득층 지원세제에 해당하지만, 한부모 소득공제는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적용됨

○ 부녀자 소득공제는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연 50만원을 공제하고, 한부모 소득공제는 소득요건 없이 연 100만원을 공제함

- 다만, 부녀자 공제와 한부모 공제는 중복적용이 배제됨

□ 일본은 일정소득 수준 이하인 납세자에 대해 한부모 소득공제와 근로학생 소득공제를 허용함

○ 납세자가 한부모인 경우에는 27만엔의 소득공제를 허용함

○ 근로학생인 납세자의 총소득금액이 65만엔 이하, 근로소득 외 소득이 10만엔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130만엔 이하)인 경우 27만엔을 소득공제할 수 있음

□ 캐나다는 배우자 없는 독신 납세자로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공제와 같이 연 최대 11,474캐나다달러(부양가족의 순소득 차감)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함

〈표 Ⅳ-5〉 조사대상 국가별 기타 추가 인적공제(한부모, 부녀자, 근로학생) 비교

국가	구분	공제방법	1인당 공제액	납세자 소득기준
한국	납세자 본인 한부모 또는 부녀자	**소득공제**	- 한부모공제 연 100만원 - 부녀자공제 연 50만원	- 부녀자공제는 종합소득 3천만원 이하
일본	납세자 본인 한부모 또는 근로학생	**소득공제**	- 한부모공제 연 27만엔 - 근로학생공제 연 27만엔	- 근로학생은 총소득금액 65만엔(급여소득만 있을 경우 130만엔) 이하, 급여소득 이외 소득 10만엔 이하
캐나다	납세자 본인	세액공제	- 배우자 없는 독신 납세자의 부양가족에 대해 연 11,474캐나다달러(단, 배우자 순소득이 있는 경우에 순소득 차감)의 15%	없음

자료: 제II장, 제III장 본문 내용을 요약·정리함

다. 특정지출에 대한 항목별 공제와 표준공제

□ 개인적 지출 중에서 납세자의 경제적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부 지출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허용하고 있지만, 해당 지출의 대상이나 범위에 대해서는 국가별로 차이가 있음

○ 공통적으로 관찰되는 지출은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이 있으며, 각 국가의 교육, 의료 등 사회복지시스템 구축체계에 따라 공제 여부와 수준에 차이가 있음

1) 의료비

□ 의료비는 일반적으로 개인적 지출로 분류되지만, 인적자본의 회복을 위해, 필수적이거나 수평적 공평을 위해, 또는 시민들의 복지에 대한 정부의 책임론을 배경으로 납세자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조치가 부여됨[188)]

□ 의료비 공제 수준을 살펴보면, 미국과 같이 한도 없이 의료비의 공제를 허용하는 국가가 있는 반면, 공적인 의료시스템의 이용 가능성을 이유로 의료비 공제를 아예 배제하는 프랑스와 같은 국가도 있음

○ 다만, 미국은 대상 의료비가 조정총소득의 10%(65세 이상 7.5%)를 초과하는 의료비에 한함

□ 한편 한국, 일본, 호주, 캐나다는 공적인 의료시스템이 있다하더라도, 보전되지 않는 의료비에 대해 공제를 허용함

○ 한국은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의료비(700만원 한도, 납세자 본인, 65세 이상, 장애인은 한도 없음)내에서 15%의 세액공제를 허용함

○ 일본은 최대 200만엔을 한도로 10만엔(또는 총소득금액의 5%)을 초과한 금액을 소득공제함

---

188) Avi-Yonah, Reuven, Nicola Sartori, and Omri Marian(2011), p.63

○ 호주는 제한된 범위의 의료비에 한해 단독가구 기준 조정총소득이 90,000호주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2,265호주달러를 초과하는 의료비의 20%를, 그리고 조정총소득이 90,000호주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5,343호주달러를 초과하는 의료비의 10%를 세액공제함

- 2012-13년부터 대상 의료비 항목은 장애, 간병, 노인요양의 분야로 한정됨

○ 캐나다는 대상 의료비 항목의 범위가 넓은 편으로 사적 건강보험료나 가사도우미와 같은 비용도 의료비로 포함하며, 최소지출기준을 초과한 의료비에 대해 한도 없이 세액공제를 허용함

- 최소지출기준은 순이익의 3%와 2,237캐나다달러보다 적은 금액임

2) 교육비

□ 국가마다 소득획득 과정에 지출된 납세자 본인의 업무관련 교육훈련비로 한정하여 제한적으로 공제를 허용하거나, 개인적 지출의 측면이 강하더라도 교육의 기회 확대 측면에서 폭넓은 수준의 교육비 공제를 허용함

□ 전자에 속하는 국가는 프랑스, 호주, 일본이 있으며, 납세자 본인의 업무관련 교육훈련비에 한해 공제할 수 있음

○ 프랑스는 납세자 본인 외에 부양자녀의 교육에 대해 지출액 기준이 아닌 정액의 자녀교육비 세액공제를 허용함

□ 미국은 후자에 속하는데 업무관련 교육훈련비 외에도 2009년 이후 중산층의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넓은 수준의 교육비 공제를 허용하는 것으로 판단됨

○ 세액공제로 운용되는 교육비 공제는 주로 중산층의 고등교육기회 확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소득 수준이 초과하면 적용을 배제하고, 공제 간 중복적용을 배제함

- 소득기준을 살펴보면, 평생교육비 세액공제는 수정조정총소득 111,000달러(부부합산기준)이고 미국시민기회 세액공제는 조정총소득 180,000달러(부부합산)임
- 총소득에서 차감하는 항목(the above line deduction)인 적격 수업료 등 공제와 함께 두 가지 교육비 세액공제 간 중복적용을 배제함

○ 미국시민기회 세액공제는 학생 1인에 대해 교육기간동안 최대 2,500달러를 세액공제하고, 평생교육비 세액공제는 교육기간 제한 없이 납세자에게 최대 2,000달러를 세액공제함

□ 캐나다는 납세자 본인 또는 부양자녀의 교육활동에 대해 넓은 수준의 교육비 공제를 허용하였으나, 2016년 세법개정 이후 장학금제도와 연계하여 교육비의 공제 범위를 축소함

○ 2016년부터 수업료 외의 교육관련 비용은 교육비 공제대상에서 제외하고, 2017년부터는 자녀 예술교육이나, 체육교육에 대한 세제지원을 폐지함

□ 한국은 납세자 본인, 배우자, 부양자녀, 형제자매의 교육활동에 대해 상대적으로 넓은 범위와 높은 수준의 교육비세액공제를 허용하고 있음

○ 유치원아·영유아, 취학 전 아동,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및 직업능력개발훈련(납세자 본인) 교육과정에서 발생하는 교육비를 그 대상으로 함

○ 한도 내 교육비 지출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함

- 근로자 본인의 한도액은 교육비 전액으로, 대상 교육비에는 대학원 교육비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수강료를 포함함
- 부양자녀 등의 경우 교육기관별로 유치원아, 영유아, 취학 전 아동, 초·중·고등학생의 경우에는 1인당 연 300만원이고, 대학생인 경우에는 1인당 연 900만원임

3) 기부금

□ 기부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모든 국가에서 기부금에 대한 공제를 허용함

□ 미국은 소정의 기부금에 대해 조정총소득금액의 50%(정부기관 등), 30%(비영리 적격기관), 20%(비영리 적격단체, 자본소득재산)를 한도로 소득공제가 허용됨

□ 프랑스는 EU,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에 소재한 비영리단체, 정당에 대한 기부금의 66%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소득의 20%를 한도로 세액공제를 적용함

□ 일본은 2천엔을 초과하는 특정 기부금에 대해 총소득금액의 40%를 한도로 소득공제를 허용하고, 정치활동에 대한 기부금의 경우에는 30%의 세액공제를 허용함

□ 호주는 2호주달러(화재, 홍수재해 피해자 지원의 경우 10호주달러) 이상의 기부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허용함

○ 취득가액이 5,000호주달러를 초과하는 토지, 예술작품, 기념품 등의 자산을 적격 단체에 기부한 경우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를 소득공제할 수 있음

□ 캐나다는 순소득의 75%(정치단체 기부금은 1,275캐나다달러)를 지출한도로 하여 최소 15%에서 최대 33%(정치기부금 400캐나다달러 이하 75%)의 공제율을 적용함

□ 한국은 지출한도 내 기부금의 15%(3,000만원 초과분 30%)를 세액공제함[189]

○ 지출한도는 법정기부금은 소득금액 범위 내에서 전액, 지정기부금은 소득금액의 30% 범위 내(다만, 종교단체기부금은 소득금액의 10% 범위 내)임

189) 「소득세법」 제59의4 제4항

4) 표준공제

□ 특정지출에 대한 항목별 공제는 해당 지출에 대한 납세자의 입증책임과 함께 과세행정상 과도한 부담을 유발한다는 측면이 있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한국과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개산공제인 표준공제제도를 도입함

□ 한국은 항목별 공제항목인 특별소득공제나 특별세액공제, 그리고 월세 세액공제와 대체하여 근로소득자에게 연 13만원의 세액공제를 허용함

○ 성실사업자는 연 12만원, 종합소득자는 연 7만원임

□ 미국은 개산공제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항목별 공제를 적용하는 납세자 수를 줄이고자, 납세자 본인에 대한 기본적인 표준공제와 함께 부양가족에 대한 추가적인 표준공제를 허용함

○ 납세자 본인에 대한 표준소득공제로 연 6,300달러(개별신고 기준)의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음

- 표준소득공제는 의료비 및 치과비용, 대출이자비용, 제세공과금, 재해손실비용, 기부금, 2% 한도대상 기타공제를 대체함

○ 추가적인 표준공제로 납세자 본인이 65세 이상이거나 시각장애인의 경우 최대 1,550달러를 추가공제하고, 부양가족에 대해서 1,050달러를 공제함

□ 프랑스, 일본, 호주, 캐나다는 특정지출에 대한 항목별 공제를 대체하는 표준공제제도가 없음

□ 표준공제액 수준을 살펴보면, 미국이 한국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표준공제를 허용함

○ 미국이 1인당 GDP(평균임금) 대비 표준소득공제비율이 10.96%(11.99%)이고 한국은 2.28%(3.13%)로 미국은 한국보다 5배 정도 높은 수준의 표준공제를 허용함[190]

○ 미국이 이와 같이 높은 수준의 표준공제를 유지하는 것은 항목별 공제를 신청하는 납세자를 표준공제로 전환시키기 위해 개별적인 지출항목의 평균적인 공제수준을 맞췄기 때문으로 판단됨

○ 한국은 근로소득자 대부분이 연말정산에 의해 소득세 납세의무가 종결되고, 항목별 지출 대부분은 전자적인 방법으로 확인되므로, 상대적으로 표준공제 수준의 상향조정 유인이 많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표 Ⅳ-6〉 조사대상 국가별 표준공제 비교

구분	공제방법	내용	대체되는 항목별 공제
한국	세액공제	- 근로소득자 연 13만원 세액공제 (성실사업자 연 12만원, 종합소득자 연 7만원 세액공제)	- 특별소득공제 대상인 건강보험료와 주택자금공제, 특별세액공제 대상인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과 「조세특례제한법」상 월세 세액공제가 있음
미국	**소득공제**	- 납세자 본인 연 6,300달러 - 납세자 본인이 65세 이상이거나 시각장애인일 경우 최대 1,550달러 추가 공제 - 부양가족 최대 1,050달러	- 항목별 소득공제인 의료비 및 치과비용, 대출이자비용, 제세공과금, 재해손실비용, 기부금, 2% 한도대상 기타공제가 있음

자료: 제II장, 제III장 본문 내용을 요약·정리함

라. 저소득가정과 자녀양육에 대한 지원세제

□ 조사대상 국가는 저소득층이나 자녀양육에 대한 각종 공제규정을 운영하거나, 소득수준에 따라 공제율이나 최대공제한도에 차이를 두는 등 저소득층을 배려하고 있음

190) 1인당 GDP 대비 표준소득공제비율의 산출과정은 다음과 같음. 한국은 13만원의 표준세액공제에 대해 100만원(소득공제 규정 당시 적용된 금액)을 기준으로 2016년 기준 1인당 GDP와 평균임금 대비 비율을 산출함. 미국은 6,300달러의 표준소득공제액에 대해 2016년 기준 1인당 GDP와 평균임금 대비 비율을 산출함

□ 이러한 세제지원 외에도 근로장려세제나 자녀장려세제와 같이 저소득층과 자녀양육 지원을 목적으로 세액환급형 조세지원정책을 도입한 국가들도 있는데, 일부에서는 재정정책과 연계하여 지원체계를 개편하였음

○ 프랑스는 근로장려세제(PPE)를 사회복지정책으로 통합함

○ 호주는 환급형 세액공제로 운영하던 저소득층 및 자녀양육 지원세제인 Family Tax Benefit 제도를 사회복지정책으로 이전하여 재정정책과 통합함

○ 캐나다는 18세 미만 자녀에 대한 자녀세액공제를 2015년부터 폐지하고 재정정책인 캐나다 자녀수당(CCB)으로 통합함

1) 저소득가정을 위한 지원세제

□ 일본을 제외한 모든 조사대상국은 환급형 세액공제인 근로장려세제를 도입하였고, 최근 저소득층 지원 강화를 위해 대상범위를 확대하거나 급여수준을 상향조정함

○ 한국은 근로장려세제 적용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급여수준을 상향조정함

○ 미국은 2009년 세법개정으로 근로장려세제상 3인 이상 다자녀가구에 대해 점증구간의 공제율을 40%에서 45%로 임시로 인상한 이후, 2017년 이 공제율을 영구화함

□ 한편 호주와 프랑스는 기존 환급형 세액공제인 근로장려세제를 재정정책으로 통합하는 한편, 저소득층의 불필요한 소득세 신고의무 경감과 세부담 경감을 위해 추가적인 세제지원을 신설함

○ 호주는 Family Tax Benefit 제도를 사회복지정책으로 이전하고, 소득세 면세점을 상향조정함

- 2012-13 과세연도부터 소득세 과세표준 면세점을 6,000호주달러에서 18,200호주달러로 상향조정함

○ 프랑스는 근로장려세제(PPE)를 사회복지정책으로 통합하고, 저소득자를 위한 세액감면과 세액공제제도를 신설하여 세부담과 소득세 신고의무를 경감함

- 2013 과세연도부터 14,145유로 미만(개별신고 기준)의 저소득자에게는 350유로의 세액감면을 적용하고, 2016 과세연도부터 20,500유로 미만의 저소득자(개별신고 기준)는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할 수 있음

□ 한국, 미국, 캐나다의 근로장려세제는 소득수준과 자녀 수에 따라 점증 - 평탄 -점감 구간별로 장려금을 차등하여 지급한다는 공통점이 있음

○ 한국의 가구별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 77만원, 외벌이가구 185만원, 맞벌이가구 230만원임

- 단독가구의 소득기준은 최고 1,300만원(외벌이 2,100만원, 맞벌이 2,500만원)이고, 연소득 100만원 이하인 18세 미만의 부양자녀를 대상으로 함

○ 미국의 장려금 최대지급액은 6,269달러(자녀 3인 이상)임

- 근로소득 최대 47,955달러 미만(개별신고 기준)이어야 하며, 9세 미만의 부양자녀(학생은 24세 미만)를 대상으로 함

○ 캐나다의 2016년 기준 최대 장려금은 독신인 근로자는 1,028캐나다달러이고 배우자가 있는 근로자는 1,868캐나다달러임

- 근로소득은 3,000캐나다달러 이상 18,529캐나다달러(배우자가 있는 경우 28,576캐나다달러) 미만이어야 하며, 납세자 본인이 19세 이상(19세 미만이라도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가능)이어야 함

〈표 Ⅳ-7〉 조사대상 국가별 저소득가정 지원세제 비교

국가	구분	지원내용	부양자녀 및 소득요건
한국	근로장려세제 (세액환급형)	소득수준, 가구원구성에 따라 점증-평탄-점감 구간별로 장려금 차등지급 - 가구별 최대 77만원(단독가구), 185만원(외벌이가구), 230만원(맞벌이가구) 지급	- 총소득기준 가구당 최고 1,300만원(단독가구), 2,100만원(외벌이가구), 2,500만원(맞벌이가구) -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연 100만원 이하)
미국	근로장려세제 (EIC) (세액환급형)	자녀의 수와 소득수준별로 점증-평탄-점감 구간별로 공제율 차등적용 - 무자녀의 경우 7.65% - 자녀수에 따라 34%, 40%, 45%의 공제율(점증) 또는 15.98%, 21.06%의 점감률(점감)을 적용	- 근로소득 최대 47,955달러 미만 (개별신고 기준) - 9세 미만의 부양자녀(학생은 24세 미만)
프랑스	근로장려세제(PPE)	재정정책 통합	
	저소득자 세액감면	350유로의 세액감면	소득수준 14,145유로 미만
	저소득자 세액공제	산출세액의 20% 세액공제	소득수준 20,500유로 미만
호주	소득세 과세표준 면세점	과세표준 18,200호주달러 이하 면세	요건 없음
	Family Tax Benefit	재정정책 통합	
	저소득자 세액공제	최대 445호주달러의 세액공제	- 과세표준 37,000호주달러 이하 최대 445호주달러 적용, 66,667호주달러 초과 시 적용배제
	고령자·연금 수급자 세액공제	독신가구 최대 2,230호주달러, 부부기준 최대 1,602호주달러 세액공제	- 소득 32,279호주달러 (부부기준 28,974호주달러) 이하 최대금액 적용 - 소득 50,119호주달러 (부부기준 41,790호주달러) 초과 시 적용배제
	사회보장급여 세액공제	6,000호주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의 15% 세액공제, 고령자·연금수급자 세액공제와 중복배제	사회보장급여 수급조건
캐나다	근로장려세제 (WITB) (세액환급형)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점증-평탄-점감 구간별로 장려금 차등지급 - 장려금 최대 수급액은 단독가구 1,028캐나다달러, 부양 자녀가 있는 가구 1,868캐나다달러 - 장애가 있는 근로소득자는 최대 514캐나다달러 추가수급	- 급여소득과 사업소득 3,000 캐나다달러 이상 18,529캐나다달러(배우자가 있는 경우 28,576 캐나다달러) 미만 - 납세자 본인이 19세 이상(19세 미만이라도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가능)

주: 1. 일본은 저소득층을 위한 조세지원세제로 분류할 수 있는 규정이 없음
2. 프랑스와 호주는 저소득층을 위한 조세지원정책을 재정정책으로 통합하여 운영함

자료: 제II장, 제III장 본문 내용을 요약·정리함

2) 자녀양육에 대한 세제지원

□ 한국과 미국은 환급형 세액공제 원리에 따라 자녀장려세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호주, 캐나다는 재정정책과의 통합으로 기존 자녀장려세제를 폐지하였고, 일본과 프랑스는 도입하지 않음

○ 한국은 비환급형 세액공제인 자녀세액공제와 함께 18세 미만 자녀를 대상으로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을 지급하는 환급형 세액공제인 자녀장려세제를 운영함

○ 미국은 17세 미만 자녀를 대상으로 한 자녀장려세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자녀 1인당 최대 1,000달러를 지급함

○ 호주는 자녀양육에 대한 세액환급형 Family Tax Benefit 제도와 자녀양육 보조금을 재정정책으로 통합함에 따라 소득세제에서는 관련 규정을 폐지함

○ 캐나다의 세액환급형 자녀장려세제는 2016년 세법개정시 재정정책인 캐나다 자녀수당(CCB)으로 통합됨

○ 일본과 프랑스는 환급형 세액공제인 자녀장려세제를 도입하지 않았으며, 주로 재정정책을 통해 자녀양육을 지원함[191)]

- 일본은 아동수당(16세 미만 자녀대상)을 통해, 프랑스는 영유아 대상으로 하는 양육수당, 취학기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수당(Les allocations familiales)이나 가족보조금(Le complémen familia)을 통해 자녀양육을 지원함
- 프랑스는 한부모 자녀를 위한 가족지원수당(L'allocation de soutien familial), 장애아 양육을 위한 장애아 교육수당(당(L'allocation d'éducation de 'l'enfant handicapé) 등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자녀지원제도가 있음

□ 일본, 호주, 캐나다를 제외한 국가들은 부양자녀에 대하여 기본적인 인적공제의 적용 외에도 자녀보육, 교육, 의료, 장애에 대해 추가적인 세제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일본의 경우 16세 미만 부양자녀에 대한 인적공제를 재정정책과의 중복적용을 이유로 폐지한 후, 소득세제상 자녀양육 지원세제를 도입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

---

191) 신윤정(2009), p.105

○ 호주는 현재 16세 이상 부양자녀에 대한 병상자·간병인 세액공제 외에는 인적공제를 적용하지 않음
○ 캐나다는 2015년에 18세 미만 부양자녀 세액공제를 폐지하고 재정정책으로 통합함

□ 미국, 프랑스, 캐나다에서는 자녀보육과 양육에 대한 비용(이하 자녀보육비)을 경감하기 위한 다양한 조세지원을 규정함
○ 자녀보육비가 소득획득을 위한 필요경비인지 또는 순수한 개인적 지출인지에 대해서는 국가별로 해석에 차이가 있지만, 개인의 담세력에 중대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사실을 대부분 국가들이 수긍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미국과 캐나다는 자녀보육비를 근로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로 보고 공제를 허용하는 반면, 호주와 프랑스는 담세력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지출로 보고 세액공제를 허용함
○ 프랑스, 호주, 캐나다는 자녀보육이나 장애, 질병 등의 이유로 고용한 가사도우미 서비스 비용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사도우미 비용에 대한 세제지원을 마련하고 있음

□ 한국, 미국, 프랑스, 캐나다는 자녀의 교육과정에서 발생하는 교육비에 대해 항목별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허용함
○ 한국은 유치원아 교육단계부터 고등교육기관(대학교)까지의 교육과정에서 발생한 교육비에 대해 15%의 세액공제를 허용함
○ 미국은 중등과정 후 교육기관에서 발생한 교육비에 대해 적격 수업료 등 소득공제(자녀 1인당 연 최대 4,000달러 한도), 미국시민기회 세액공제(자녀 1인당 교육기간 최대 2,500달러 세액공제), 평생교육비 세액공제(납세자 기준 1인당 연 최대 2,000달러 한도)를 허용함
○ 프랑스는 중등교육 및 고등교육단계의 자녀 1인당 최소 61유로에서 최대 183유로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함
○ 캐나다는 16세 이상 자녀의 중등과정 후 교과과정에서 지출한 수업료의 15%를 세액공제함

〈표 Ⅳ-8〉 조사대상 국가별 자녀양육 관련 조세지원 비교

국가	구분	지원내용	자녀 연령요건, 소득기준 요건
한국	인적소득공제(기본)	자녀 1인당 연 150만원	만 20세 이하
	추가 인적공제(장애)	장애인 1인당 연 200만원	연령제한 없음
	교육비세액공제	1인당 연 300만원(유치원아~고등학생) 또는 900만원(대학생)의 교육비에 대해 15%의 세액공제	연령제한 없음
	자녀세액공제	자녀 1인당 15만원 - 3명 이상인 경우 3명째부터 자녀 1인당 20만원 - 6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1명당 15만원 - 출생자(입양자)의 경우 1명당 30만원 자녀장려세제와 중복적용 배제	만 20세 이하, 6세 이하, 출생자(입양자)
	자녀장려세제 (세액환급형)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 환급	18세 미만, 소득기준 초과 시 적용배제
미국	인적소득공제	자녀 1인당 4,050달러	19세 이하 (학생 24세 이하)
	교육비 공제	- 적격 수업료 등 소득공제(중등과정 이후 교육기관): 자녀 1인당 최대 4,000달러 - 미국시민기회 세액공제: 자녀 1인당 교육기간에 따라 최대 2,500달러 세액공제 - 평생교육비 세액공제: 납세자 1인당 연 최대 2,000달러 세액공제, 중복적용 배제	연령제한 없음, 소득기준 초과 시 적용배제
	자녀보육비세액공제	일 8시간 정기발생 탁아비용, 보육비용, 가사서비스 비용을 조정총소득 수준별로 20~35% 세액공제	13세 미만
	자녀세액공제 (세액환급형)	자녀 1인당 최대 1,000달러 세액공제	17세 미만, 소득 기준 초과 시 적용배제
프랑스	자녀교육비세액공제	중등교육기관 이상 교육단계의 자녀 1인당 최소 61유로에서 최대 183유로 의 세액공제	연령제한 없음

국가	구분	지원내용	자녀 연령요건, 소득기준 요건
프랑스	자녀보육비세액공제	자녀보육을 위해 보모, 유치원 등 외부위탁기관 이용 시 1인당 최대 2,300유로의 50% 세액공제	6세 이하
	가사도우미세액공제	자녀보육, 교습 등을 위하여 고용한 가사도우미에게 지급한 비용 (최대 15,000유로)의 50% 세액공제	연령제한 없음
	부양비용 소득공제	본인의 독립적인 세대를 이룬 자녀가 장애가 있거나 소득수준이 낮아 재무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1인당 최대 5,738유로(단, 자녀가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11,476유로)	21세 이하 (학생 25세 이하)
일본	기본인적소득공제	자녀 1인당 38만엔 소득공제	16세 이상
호주	병상자 간병인 세액공제	일별 7.07호주달러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Family Tax Benefit 급여 수령 시 세액공제액 감액	16세 이상, 소득기준 초과 시 적용배제
캐나다	자녀양육비 소득공제	저소득 배우자 근로소득의 2/3와 실제 지출한 자녀양육비 중 더 낮은 비용 - 공제한도액은 7세 미만 자녀 1인당 8,000캐나다달러, 7세 이상 16세 이하 자녀 1인당 5,000캐나다달러, 장애자녀 1인당 1,1000캐나다달러임	맞벌이 가정, 16세 이하 자녀 또는 장애자녀, 소득요건 없음
	장애 자녀를 위한 가사도우미 서비스비용 소득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납세자 본인, 부양가족 등의 장애로 인한 가사도우미 서비스비용을 소득공제	장애가 있는 18세 이하 자녀
	교육비 세액공제	중등과정 후 교과과정에서 지출한 수업료의 15% 세액공제	16세 이상 자녀
	캐나다 간병세액공제	- 18세 이상 장애자녀 1인당 최대 1,032캐나다달러 세액공제 - 18세 미만 장애자녀는 최대 322캐나다달러를 추가 세액공제	- 순소득 23,046 캐나다달러 이하, - 추가공제는 자녀 순소득 18,313 캐나다달러 이하

주: 1. 일본은 16세 미만 자녀에 대한 재정정책과의 중복적인 적용을 배제하기 위해 세제상 지원제도를 폐지함
2. 호주는 자녀양육지원세제를 모두 Family Tax Benefit 제도로 통합하고, 소득세제에서의 관련 제도를 폐지함
3. 캐나다 자녀보육비 소득공제를 신청한 경우 장애 세액공제 중 추가분 대상 비용이 감액됨

자료: 제II장, 제III장 본문 내용을 요약·정리함

마. 공제에 따른 조세부담 경감의 제한

□ 각종 공제를 통한 과도한 소득세 경감효과를 제한하기 위하여 일부 국가에서는 공제에 대한 통합한도나 최저한세 규정을 두고 있음

1) 공제에 대한 통합한도

□ 한국, 미국, 프랑스는 공제총액에 대한 통합한도규정을 두고, 과도한 세부담의 감소를 제한함

□ 한국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소득세법」상 소정 항목별 소득공제액의 합계를 2,500만원으로 한정하는 소득공제 종합한도 규정이 있음

○ 다만, 「소득세법」상 특별세액공제(보장성 보험료(장애인 전용 제외), 의료비(장애인 의료비 제외), 교육비(장애인 특수교육 제외), 기부금(법정기부금 제외), 월세액 세액공제)는 통합한도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미국은 2013년부터 고소득층의 과도한 공제를 방지하고자 조정총소득이 259,400달러(개별신고 기준)를 초과하는 고소득자의 경우, 인적공제와 특정지출에 대한 항목별 공제금액의 규모를 점진적으로 축소토록 규정함

○ 인적공제액은 조정총소득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2,500달러마다 2%씩 공제금액이 축소됨

○ 항목별 소득공제액은 조정총소득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공제금액이 축소됨

- 다만, 의료비 및 치과비용과 재해 도난 손실에 대한 소득공제는 적용배제함
- 항목별 소득공제금액의 축소액은 항목별 소득공제 신청액의 20%를 한도로 함

□ 프랑스는 세제상 우대조치를 받음으로 인해 감소되는 조세부담 감소액의 총량에 대한 통합한도와 가족계수제도 적용으로 인한 조세경감에 대한 한도규정이 있음

○ 전자는 10,000유로(국외투자의 경우 18,000유로)를 한도로 하고, 대상 세제지원은 자녀보육비 세액공제, 임대주택 보험료 세액공제, 가사도우미 세액공제, 국외 투자관련 세액공제, 에너지 시설 투자관련 세액공제 등이 있음

- 자녀교육비 세액공제, 장애인 및 자녀 보험료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등은 통합한도 적용대상에서 배제됨

○ 후자, 즉 과세표준의 평준화 효과로 인해 감소되는 조세부담액에 대한 한도는 추가적인 1 파트별 3,020유로임

2) 최저한세

□ 한국, 미국, 캐나다는 조세지원의 적용으로 인한 과도한 세금경감효과에 제한을 두기 위해 최저한세제도를 운영함

○ 한국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지원을 적용받는 사업소득자만을 대상으로 최저한세를 적용함

○ 미국은 모든 소득자를 대상으로 최저한세 규정을 적용하며, 최저한세보다 소득세 부담액이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 납부하도록 함

- 우대 및 조정항목을 적용하는 대신 최저한세 공제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최저한세 과세표준에 대해 26%(과세표준 186,300달러 이하), 28%(과세표준 186,300달러 초과)의 세율을 적용하여 최저한세 부담액을 계산함

○ 캐나다는 소득공제나 세액공제의 적용으로 인한 기본면세금액(basic exemption)이 40,000캐나다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해 15%의 세율로 최저한세를 납부하여야 함

〈표 Ⅳ-9〉 조사대상 국가별 조세지원의 제한규정

국가	공제 통합한도	최저한세
한국	소득공제 항목의 공제한도 2,500만원 - 「소득세법」상 특별세액공제와 「조세특례제한법」상 월세액 세액공제 불포함	사업소득을 대상으로 하며, 조세지원 적용이전 산출세액의 45%(35%)
미국	납세자의 조정총소득 수준별로 인적공제 및 항목별 공제액의 규모 제한 - 인적공제는 기준금액 초과액 2,500달러마다 2%씩 감액 - 항목별 공제는 기준금액 초과액 3%에 해당분만큼 감액(공제액의 80%를 한도)	조세지원 적용을 배제하고, 26% 또는 28%의 세율 적용
프랑스	조세지원으로 인한 세액감소액의 총량을 1만유로(국외투자 1만 8천유로)로 제한 가족계수적용으로 인한 조세경감에 대한 한도는 추가적인 1파트별 3,020유로	-
캐나다	-	소득공제나 세액공제의 적용으로 인한 면세금액이 40,000캐나다달러(basic exemption)를 초과하는 경우, 공제 적용배제

자료: 제II장, 제III장 본문 내용을 요약·정리함

바. 최근의 근로소득세 개정동향

□ 2007~2008년 금융위기로 침체된 경제의 활성화와 재정적자 축소를 위한 재원마련을 위해, 고소득층의 세부담을 강화하고 저소득자·자녀양육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추세는 2010년 이후에도 지속된 것으로 판단됨[192]

192) 2000년 이후 다국적 기업의 세원잠식과 소득이전 행위를 통한 조세회피 역시 재정적자 원인의 하나로 지목됨

□ 2010~2016년 기간 동안 조사대상 국가의 주요 개정사항을 살펴보면, 최고세율의 인상과 공제제도의 간소화를 비롯하여 공제수준의 제한과 저소득자 및 자녀양육 지원확대라는 공통점을 찾아볼 수 있음

○ 특히 호주, 캐나다의 경우에는 재정정책과의 연계 및 통합과정을 통해 공제제도를 대대적으로 정리하여 간소화함

1) 소득세율 관련 주요 개정사항

□ 2010~2016년 기간 동안 일본과 호주를 제외한 국가들은 소득세 최고세율을 구간을 신설하거나 세율을 상향조정함

○ 미국은 2013년 35%에서 39.6%로 최고세율을 인상하고, 일본은 2015년 40%에서 45%로 최고세율을 인상함

○ 한국은 2012년 35%에서 38%로 최고세율을 인상한 뒤, 2017년 다시 40%로 최고세율을 인상함

○ 프랑스는 최고세율을 2010년 40%에서 41%로 인상한 뒤 2012년 다시 45%로 인상하고, 최저세율을 2014년부터 5.5%에서 14%로 상향조정함[193)]

- 2014년부터 0%의 세율이 적용되는 면세점 수준을 6,099유로에서 9,690유로로 상향조정함

○ 캐나다는 2016년부터 과세표준 최고구간인 20만캐나다달러 초과구간을 신설하여 33%의 최고세율을 적용하는 한편, 소득세율의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하여 중산층의 세부담을 경감함[194)]

- 2015년까지의 최고세율은 138,586캐나다달러 초과 시 적용되는 29%이었음

○ 호주는 2012~2013년 과세연도부터 최저세율과 그 다음 세율을 15%, 30%에서 각각 19%와 32.5%로 상향조정하고 0%의 세율이 적용되는 면세점 수준을 6,000호주달러에서 18,200호주달러로 상향조정함[195)]

---

193) Ernst & Young(2011-2016)

194) 캐나다 정부, https://www.canada.ca/en/financial-consumer-agency/services/financial-toolkit/taxes-quebec/taxes-quebec-2/5.html(검색일자: 2017. 9. 6)

□ 세법개정 이후 1인당 GDP 또는 평균임금 대비 소득세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 수준을 살펴보면, 한국이 상대적으로 높고, 호주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196]

[그림 Ⅳ-1] 조사대상 국가별 최고수준 소득세율, 과세표준 구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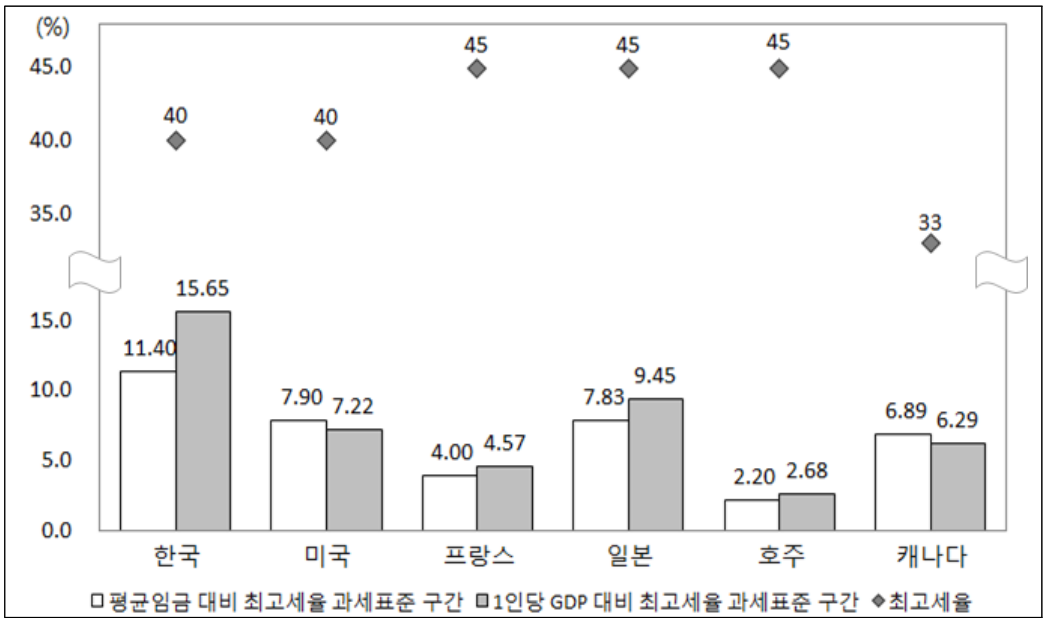

주: 각 국가별로 1인당 GDP(US$, 2016)와 평균임금(US$, 2016) 대비 소득세 최고세율 과세표준 구간의 비중을 비교함
자료: OECD 통계, http://stats.oecd.org/

195) 호주 국세청, https://www.ato.gov.au/Rates/Individual-income-tax-for-prior-years(검색일자: 2017. 9. 6)

196) 조사대상국가의 소득세 면세구간, 최고세율 구간은 아래 표와 같음

(단위: %, 천원, 달러, 유로, 만엔, 호주달러, 캐나다달러)

국가	면세구간	최고세율		국가	면세구간	최고세율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한국	-	50,000 초과	40	일본	-	4,000 초과	45
미국	-	415,050 초과	39.6	호주	18,200	180,000 초과	45
프랑스	9,710	152,261 초과	45	캐나다	-	200,000 초과	33

주: 1. 미국은 개별신고 기준임
2. 소득세는 국세 또는 연방세에 한정함
자료: OECD 통계, Table I.1. Central government personal income tax rates and thresholds, http://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TABLE_I1

2) 공제제도 관련 주요 개정사항

□ 2010~2016년 조사대상 국가는 인적공제와 항목별 공제에 대한 한도요건을 강화하거나, 재정정책과 통합하여 인적공제나 항목별 공제를 축소하는 경향을 보임

○ 미국, 프랑스의 경우 인적공제와 항목별 공제에 대한 한도요건을 강화하여 소득수준이 일정액 이상인 경우에는 공제규모를 축소함

○ 한국은 2014년부터 일부 소득공제항목을 세액공제로 전환하여 누진세율 적용에 따른 역진적 세부담 경감효과를 완화함

○ 한국, 미국, 프랑스는 자녀양육 지원세제와 저소득자 지원세제를 강화함

- 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자녀장려세제를 운영하였으며, 2014년에는 자녀세액공제의 대상 및 공제액을 당초 계획보다 상향조정함
- 미국은 2009년 일시적으로 도입한 3인 이상 다자녀가구에 대한 근로장려세제 점증구간에 대해 45% 공제율을 2017년 영구화하고, 자녀보육비세액공제 소득요건을 완화함[197]
- 프랑스는 저소득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저소득자 세액공제를 신설함

○ 프랑스, 일본, 호주의 경우, 소득세제에서 운영하던 저소득자 지원세제와 자녀양육 지원세제를 재정정책으로 통합함

- 일본은 16세 미만 자녀대상의 인적공제를, 호주는 주요 인적공제제도를 소득세제에서 폐지함

197) 미국 국세청, https://www.irs.gov/credits-deductions/individuals/earned-income-tax-credit/eitc-income-limits-maximum-credit-amounts-3-years(검색일자: 2017. 6. 2)

〈표 Ⅳ-10〉 조사대상 국가별 근로소득세 관련 주요 개정사항 비교(2010~2016)

구분	근로소득 필요경비	인적공제	항목별 공제	자녀양육 지원세제	저소득자지원세제	소득세율
한국	- 근로소득공제율 일부구간 10%p ↓, 총급여 1억원 초과 구간 3%p ↓ (2014년) - 근로세액공제 공제한도 ↑(2014년)	- 부녀자공제 대상자 소득요건 강화 (2014년)	- 일부 항목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 (2014년) - 소득공제 통합한도 대상항목 축소 (2014년)	- 자녀세액공제 대상 대상 및 공제액 ↑ (2014년) - 자녀장려세제 운용 (2014년)	- 근로장려세제 지원대상 확대 및 급여 ↑ (2012년, 2014년, 2017년)	- 최고세율 ↑ (2012년 38%, 2017년 40%)
미국		- 인적공제 적용요건 강화, 고소득자에 대한 공제규모 축소(2013년)	- 항목별 소득공제 적용 요건 강화, 고소득자에 대한 공제 규모 축소 (2013년)	- 자녀보육비 세액공제 소득요건 완화(2011년)	- 3인 이상 다자녀 가구의 경우 세액공제율 40%에서 45% ↑영구화 (2017년)	- 최고세율 ↑ (35%에서 39.6%) (2013년)
프랑스		- 가족계수제도상 부양자녀 공제한도 ↓(2013년)	- 세감면 총량한도 ↓ (2013년) - 학자금세액공제 폐지 (2013년)		- 근로장려세제 (PPE)를 사회복지 제도에 통합 (2016년) - 저소득자 대상 세액지원 ↑	- 최고세율 ↑ (2010년 41%, 2012년 45%) - 최저세율 ↑(5.5%에서 14%) (2014년) - 면세점 ↑(2014년)
일본	- 실제 발생 비용 공제 대상 확대 - 연수입 1,000만엔 초과 소득자 급여소득공제율·공제한도액 ↓ (2013~2016년)	- 아동수당제도 도입에 따른 자녀관련 인적공제 폐지 (2011년)				- 최고세율 ↑ (40%에서 45%) (2015년)

구분	근로소득 필요경비	인적공제	항목별 공제	자녀양육 지원세제	저소득자지원세제	소득세율
호주		- Family Tax Benefit 제도의 재정정책 통합으로 소득세제 간소화		- 재정정책으로 통합하여 소득세제 간소화	- 재정정책으로 통합하여 소득세제 간소화	- 최저세율과 그다음 세율 ↑ (15%, 30%에서 19%, 32.5%) (2012-13년) - 면세점 ↑ (2012-13년)
캐나다		- 18세 미만 부양자녀 세액공제 폐지 (2015년) - 장애부양가족에 대한 추가인적 공제를 캐나다 간병공제로 통합(2017년)	- 대중교통비 세액 공제 폐지(2017년) - 교육비 공제항목 축소(2017년)	- 자녀예술교육비, 체육교육비 공제 금액을 절반 수준으로 삭감 (2016) 후 폐지(2017) - 자녀장려세제를 재정정책인 캐나다 자녀보조금 제도로 통합(2016)		- 최고세율 ↑ (2016년에 33% 구간신설)

주: ( ) 안은 과세연도 기준임
자료: 제II장, 제III장 본문 내용을 요약·정리함

2. 우리나라 근로소득세 공제제도의 특징

□ 다음은 조사대상국의 근로소득세 공제제도 간 국제비교를 통하여 확인한 우리나라 근로소득세제의 특징을 정리함

가. 근로소득 필요경비에 대한 항목별 공제

□ 조사대상국의 총급여액 대비 근로소득 필요경비 공제율을 살펴보면, 실제 지출한 비용을 공제하는 경우에는 최고 11.33%(미국)에서 최저 1.1%(캐나다) 정도로 추정됨

○ 미국은 실제 지출한 필요경비 공제는 2014년 기준 전체 근로소득자 중 47.94% 정도가 신청하였고, 총급여액 대비 필요경비 공제율(추정)은 약 11.33%임[198)]

○ 호주와 캐나다는 실제 지출한 필요경비에 대한 평균 공제율이 각각 3.6%, 1.1% 정도임[199)][200)]

○ 한편 개산공제를 도입한 일본은 2012년 세법개정 시 실제 지출한 업무관련 비용이 급여수입의 약 6%라는 시산결과를 발표함[201)]

□ 이와 같이 조사대상국의 필요경비 공제율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이유는 근로소득 필요경비의 공제를 제한적으로 적용하기 때문으로 판단됨

○ 실제 지출한 비용을 기준으로 공제하는 경우에는 중첩적 비용에 대한 업무관련성 여부에 대한 엄격한 입증책임이 동반되므로 공제가 제한적으로 이루어짐(캐나다, 호주, 일본)

---

198) 근로소득 필요경비는 기타공제 항목과 함께 2% 기준을 적용받기 때문에 해당 공제의 실제 적용 현황은 파악할 수 없으므로 신청기준으로 고려함(IRS, 2016, 「Table 2.1: Returns with Itemized Deductions: Sources of Income, Adjustments, Itemized Deductions by Type, Exemptions, and Tax Items」, 연도별)

199) ATO(2017), 「Individuals: Selected items for 1978~79 to 2014-15 income years 1,4」

200) Canada Governmen(2017)

201) 2012년 세법개정 시 일본은 개산공제의 총급여수입 대비 공제비율이 약 30% 정도로 과다하다는 설명과 함께 6%의 시산결과를 발표하면서 2013년부터 개산공제의 최고 공제한도규정을 도입함(財務省, 2010)

○ 근로소득 필요경비의 개산공제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공제한도를 적용하거나(프랑스, 일본, 캐나다) 정액을 공제하여(미국) 공제의 범위가 제함됨

□ 우리나라 과세대상 근로소득(총급여)에 대한 근로소득공제의 공제율은 2013년, 2014년, 2015년 각각 30.98%, 26.96%, 26.57% 정도인데, 이는 앞서 논의한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판단됨[202)]

○ 총급여 5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의 공제율은 2013년, 2014년, 2015년 각각 43.13%(2013), 36.88%(2014), 36.86%(2015)임

○ 총급여 상위 10%의 공제율은 2013년, 2014년, 2015년 각각 15.44%, 14%, 13.71%로, 대부분 조사대상 국가(호주 제외)가 고소득에 대해 공제한도를 적용하는 것을 고려한다면 높은 수준이라 할 수 있음

〈표 Ⅳ-11〉 우리나라의 총급여 대비 근로소득공제 현황(2013~2015)

(단위: 십억원, %)

구분		2013	2014	2015
총급여 5천만원 이하	총급여액	257,771	269,376	278,304
	근로소득공제액	111,166	99,333	102,592
	공제율	43.13	36.88	36.86
총급여 상위 10%	총급여액	162,795	170,357	182,048
	근로소득공제액	25,138	23,849	24,964
	공제율	15.44	14.00	13.71
전체 근로소득	총급여액	498,028	528,660	562,510
	근로소득공제액	154,305	142,521	149,479
	공제율	30.98	26.96	26.57

주: 1. 총급여는 급여총계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과세대상 근로소득을 의미함
2. 총급여 5천만원 이하 구간에 속하는 근로소득자 인원은 전체 근로자 중 81.71%(2013), 80.78%(2014), 79.99%(2015)을 차지하고, 총급여액은 전체 총급여액의 51.76%(2013), 50.95%(2014), 49.47%(2015)을 차지함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 표 4-2-1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현황 I (총괄), 연도별

202) 다만, 우리나라 소득세제 전반에 적용되는 개산공제제도를 고려하는 경우 근로소득 필요경비 공제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라 할 수 있음. 근로용역과 유사한 인적용역에 대한 사업자에 대한 개산공제인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은 평균적으로 69%, 49%임(국세청고시 제2017-7호). 최대 900만원을 공제할 수 있는 연금소득의 개산공제인 연금소득공제나, 80%의 공제율이 적용되는 기타소득의 개산공제 역시 결코 낮다고 할 수 없음

□ 우리나라의 근로소득공제는 근로제공과 관련하여 실제 지출한 비용을 기준으로 고려한 공제보다는 높은 공제율의 적용이 가능하여 응능과세원칙에 부합되지 않는 측면이 있음

○ 그러나 개산공제는 실제 지출한 비용을 기준으로 하는 공제와 비교하여 과세행정적인 측면에서 보다 간단하고 명료하여 불필요한 납세협력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음

○ 한편 실제 지출한 비용을 기준으로 공제하는 경우에는 응능과세원칙에 부합되겠지만, 과세행정상 부담이 과다하게 야기될 수 있음

- 공제비용에 대한 근로소득자의 입증책임과 함께 과세당국의 행정적 부담이 가중될 수 있고,
- 더 나아가 조세회피의 방법으로 이용되거나, 비용의 근로관련 여부에 대한 근로소득자와 과세당국 간 불필요한 다툼이 야기될 수 있음

나. 인적공제

□ 납세자 본인에 대한 기본인적공제의 수준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조사대상 국가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낮은 편으로 판단됨

○ 평균임금 대비 1인당 인적공제 수준은 캐나다, 미국, 일본, 프랑스, 한국의 순서로 높고, 1인당 GDP 대비 1인당 기본인적공제 수준은 캐나다, 일본, 미국, 프랑스, 한국의 순서로 높음

- 평균임금 대비 납세자 본인에 대한 기본인적공제액 비율은 우리나라, 미국, 일본, 프랑스, 캐나다는 각각 3.42%, 7.71%, 7.44%, 7.94%, 22.50%임
- 1인당 GDP 대비 납세자 본인에 대한 기본인적공제액 비율은 우리나라, 미국, 일본, 프랑스, 캐나다는 각각 4.69%, 7.05%, 8.98%, 9.06%, 20.53%임
- 납세자 1인당 기본인적공제는 한국 150만원, 미국 4,040달러, 일본 38만엔, 프랑스는 가족계수제도상 경감한도액인 3,020유로, 캐나다는 세액공제 기준금액인 11,474캐나다달러의 15%임

- 2016년 기준 평균임금(명목 US$)은 한국 US$ 37,799, 일본 US$ 46,976, 미국 US$ 52,542, 프랑스 US$ 42,088, 캐나다 US$ 38,477이고, 2016년 기준 1인당 GDP는 한국 US$ 27,539, 일본 US$ 38,894, 미국 US$ 47,467, 프랑스 US$ 36,855, 캐나다 US$ 42,158임

○ 호주는 기본인적공제 또는 이와 유사한 제도가 없음

[그림 Ⅳ-2] 조사대상 국가별 평균임금·1인당 GDP 대비 기본인적공제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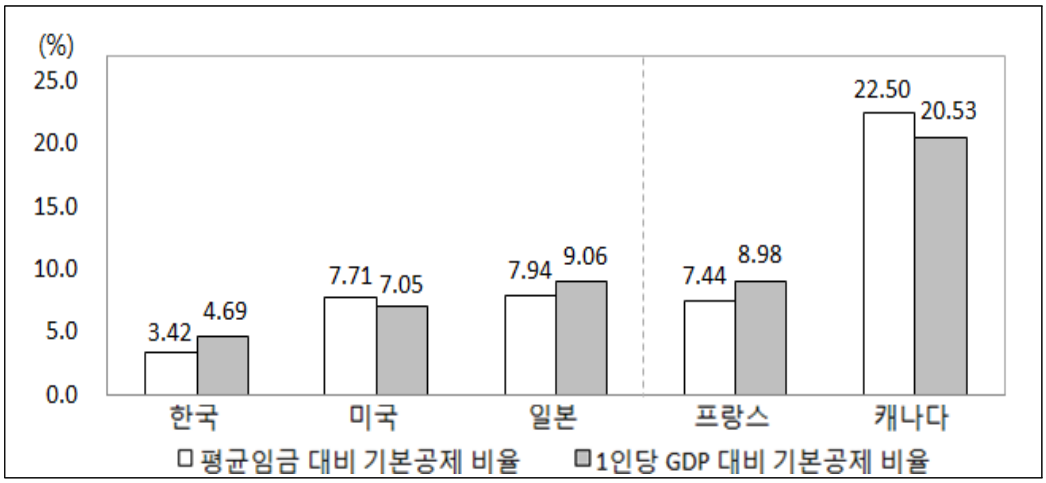

주: 1. 한국, 미국, 일본의 기본인적공제는 소득공제방식인 데 반하여 캐나다는 세액공제방식이고 프랑스는 가족계수제도를 통해 인적공제를 적용함
2. 납세자 1인당 인적공제는 납세자 본인 기본공제만을 고려하였으며, 한국 150만원, 미국 4,040달러, 일본 38만엔임. 프랑스는 가족계수제도상 경감한도액인 3,020유로, 캐나다는 세액공제 기준금액인 11,474캐나다달러임
3. 호주는 인적공제와 유사한 규정이 없음
자료: 제Ⅱ장과 제Ⅲ장의 자료를 참조하여 저자 작성

□ 우리나라 근로소득자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총급여액) 대비 인적공제(기본공제와 경로·장애에 대한 추가공제) 비율은 2013년, 2014년, 2015년 각각 10.5%, 9.65%, 9.73%로, 미국 11.48%(2014년) 및 일본 11.4%(2014년)과 비교하면 그리 낮은 수준이라고 할 수 없음[203]

○ 전체 근로소득자의 80%를 차지하는 과세대상 근로소득 5천만원 이하 구간의 경우는 2013년, 2014년, 2015년 각각 13.08%, 11.97%, 12.39%임

- 미국은 전체 신고인원의 84%를 차지하는 조정총소득 100,000달러 이하 구간의 인적공제율은 2014년 기준 21.88%임
- 일본은 전체 근로자의 약 80%를 차지하는 급여소득 1,000만엔 이하 구간의 인적공제율은 2014년 기준 16.65%임

〈표 Ⅳ-12〉 우리나라의 총급여 대비 인적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현황(2013~2015)

(단위: 십억원, %)

구분		2013	2014	2015
총급여 5천만원 이하	총급여액	257,771	269,376	278,304
	인적공제액	33,728	32,257	34,495
	공제율	13.08	11.97	12.39
전체 근로소득	총급여액	498,028	528,660	562,510
	인적공제액	47,043	46,195	49,719
	공제율	10.50	9.65	9.73

주: 1. 총급여는 급여총계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과세대상 근로소득을 의미함
2. 인적공제에는 기본공제와 경로·장애에 대한 추가공제의 합계를 의미함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 연도별

□ 우리나라의 신고소득 대비 인적공제 규모는 1인당 인적공제 수준과 비교하면 외국과의 격차가 적은 편임

○ 이러한 이유는 납세자 1인에 대한 인적공제액 수준은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들보다 상대적으로 낮지만, 인적공제의 대상 범위가 넓고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동일한 인적공제를 적용하기 때문임

---

203) 미국은 조정총소득 총누계액 대비 인적공제액(exemption) 합계의 비율이고(IRS, 2016, 「Table 1.2. All Returns: Adjusted Gross Income, Exemptions Deductions, and Tax Items」, 연도별), 일본은 급여소득공제 차감 전 급여소득 누계액 대비 인적공제 합계액의 비율임(国税庁, 2016b)

○ 기본공제의 경우, 우리나라는 배우자, 자녀, 기타 부양가족에 대해 연령요건이나 대상자의 소득요건이 충족되면 한도 없이 인적공제가 적용됨
- 미국은 부양가족의 생계비를 실제로 납세자가 일정부분 부담해야 하고, 납세자 소득수준이 높은 경우에는 인적공제의 적용을 배제함
- 일본은 부양가족의 범위에서 16세 미만 자녀는 제외함

○ 경로·장애에 대한 추가공제의 경우, 우리나라는 기본공제 대상자로 납세자의 소득수준 여부에 상관없이 적용할 수 있지만, 미국, 프랑스, 호주, 캐나다는 저소득자만을 그 대상으로 하고, 미국은 저소득자인 납세자 본인에 한하여 적용함

□ 가족생계를 위한 생존보존적인 경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국가의 과세권이 행사된다면, 이는 인간존엄성의 침해, 더 나아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기본권을 해치는 결과를 유발할 수 있음

□ 그러나 재정정책과 함께 광범위한 인적공제제도가 동시에 운영되고 있다면, 중복적인 혜택의 적용이 될 수 있고, 이 경우 응능부담원칙에 어긋나면서도, 동시에 불필요한 세수손실이 발생될 수 있음

○ 현재 우리나라는 추가 인적공제 중 일부에 대해서만 「조세특례제한법」상 자녀장려세제와의 중복적용을 배제하지만, 관련 재정정책과 연계적인 운용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204]
- 가족과 아동에 대한 재정정책으로 2001년에 도입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기초생활보장제도, 2014년부터 시행된 「기초연금법」에 의거한 기초연금제도, 2018년 7월부터 5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아동수당법」의 제정이 현재 추진되고 있음

---

204) 보건복지부, 「2018년 7월부터 0~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 아동수당 지급」, http://www.mohw.go.kr/front_new/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CONT_SEQ=341087&page=1, 2017. 8. 16(검색일자: 2017. 9. 4)

□ 최근 호주, 프랑스, 일본, 캐나다의 조세개혁을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복잡한 인적공제를 간소화하면서 저소득가구와 자녀부양에 대한 세제지원을 재정정책으로 일원화하는 움직임을 찾아볼 수 있음[205)]

○ 호주, 프랑스, 캐나다는 공통적으로 복잡한 인적공제규정과 함께 근로장려세제 또는 자녀장려세제를 도입하고 있었는데, 소득세제의 조세 공평성 및 간소화라는 기치 아래 최근 조세개혁을 수행함

○ 그 결과, 재정정책과 중복적인 인적공제제도를 폐지·축소·통합하거나, 저소득층의 세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세제를 신설하거나 개정함

- 소득세제상 규정된 저소득가정과 자녀부양에 대한 조세지원책을 재정정책과 연계하거나 통합하여 제도의 효율과 간소화를 도모함

□ 우리나라는 최근 저소득가족과 자녀양육을 위한 세제지원을 도입하는 한편, 사회복지 측면에서도 다양한 재정정책을 펼치고 있는바, 이와 연계하여 기본적인 인적공제의 수준은 일정부분 상향조정하는 동시에 복잡한 인적공제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205) 세제지원정책과 재정정책의 일원화를 수행한 호주, 프랑스, 일본의 개혁효과를 소득불평등 지수 변동을 통해 간접적으로 살펴보면, 호주와 프랑스의 시장소득지니계수와 가처분소득 지니계수 간 격차가 2011~2014년 동안 증가한 것을 관찰할 수 있음

구분 / 연도 / 국가	연도별 시장소득지니계수 ① (Before Transfer and taxes)				연도별 가처분소득 지니계수 ② (After transfers and taxes)				연도별 증감률 (= ①-②)			
	2011	2012	2013	2014	2011	2012	2013	2014	2011	2012	2013	2014
호주	0.415	0.414	0.424	0.434	0.318	0.315	0.321	0.327	0.098	0.098	0.103	0.107
프랑스	0.462	0.462	0.445	-	0.313	0.31	0.294	-	0.149	0.152	0.151	-
일본	0.398	0.387	0.376	0.376	0.307	0.309	0.311	-	0.077	0.067	0.056	-

주: 일반적으로 시장소득지니계수와 가처분소득 지니계수 간 격차의 크기를 통하여 조세정책을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를 살펴볼 수 있음

자료: OECD(2016)

다. 특정지출에 대한 항목별 공제

□ 국가가 추구하는 가치 활동의 변화, 사회복지체계 수준의 변화, 여성의 사회진출에 따른 사회·경제적 가치의 변화 등에 따라 세제지원 대상 특정지출의 종류나 범위가 바뀌는 현상이 조사대상국 사이에서 관찰됨

○ 예를 들자면, 교육비 지출에 대한 공제의 경우 대부분 조사대상국은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함

- 대상 교육비를 납세자 본인의 업무관련 교육비에만 한정하거나(프랑스, 호주, 일본), 부양가족의 교육비에 대해 공제를 허용하더라도 고소득자에게는 적용하지 않거나(미국), 수업료 외 기타 교육비를 대상에서 배제함(캐나다)

○ 또 다른 예로는, 자녀양육이나 경로자·장애인의 부양을 위한 가사도우미 비용에 대한 세제지원의 도입 및 확대를 들 수 있음

- 도입 초기에는 맞벌이 가정을 대상으로 하던 가사도우미 공제가 최근 홑벌이 가정으로 확대하거나 및 공제수준을 확대함(미국, 프랑스, 캐나다)

□ 우리나라는 과거 사회보장제도나 복지체계를 보완할 목적으로 도입한 특정지출을 불변항목으로 규정하여, 사회적 변화에 따른 세제지원 대상 지출항목을 조정하지 않음

○ 사회보장제도나 복지제도가 과거와 비교하여 상당히 개선되었다고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 교육, 보험 등 분야에서의 지출에 대한 공제를 다른 국가들에 비하여 매우 폭넓게 허용함

- 우리나라는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에 대한 교육비 지출이 공제대상이 되며 국내·외 모든 교육기관(대학원 제외)에 대해 기간의 제한 없이, 납세자 본인의 경우에는 교육 기간의 제한이나 교육비의 한도 없이 공제가 허용됨
- 보장성 (사적)보험료에 대한 공제는 지진 등 자연재해에 대비하거나(일본), 장애인이나 자녀를 위한 보장대책이나(프랑스), 국민건강보험을 대체할 목적(호주) 외에는 허용하는 국가가 없음

○ 한편, 여성의 사회진출에 따른 가사비용을 고려한 세제지원 규정은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됨

□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납세자의 담세력에 영향을 미치는 지출의 형태는 변화할 수 있으므로 공제 대상 특정지출 자체 적합성 및 공제범위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라. 조세지원제도의 제한

□ 공제제도가 가족 구성원의 상황을 고려하고, 특정지출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운영된다 하더라도, 공제제도의 적용으로 인한 세부담의 과도한 경감은 응능부담원칙에 의한 과세라는 소득세 본래의 취지에 어긋날 수 있음

○ 예를 들어, 실제 생계비 부담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부양가족을 대상으로 한 인적공제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적용하는 특정지출에 대한 항목별 공제는 실제 납세자의 경제적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지출을 고려했다고 보기 어려움

□ 조사대상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일정 소득수준 이상의 납세자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인적공제 또는 항목별 공제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공제총액에 대한 종합한도 규정을 통해 세부담의 과도한 감소를 방지하고 있음

○ 전자와 관련하여 미국, 프랑스, 호주의 추가인적공제에 대한 소득기준과 미국, 호주의 항목별 공제에 대한 소득기준을 예로 들 수 있음

- 미국, 프랑스, 호주는 추가인적공제의 적용이 배제되는 소득기준을 각각 17,500달러, 23,720유로, 100,000호주달러로 정함
- 미국은 교육비 공제가 가능한 소득기준을 80,000~90,000달러(개별신고 기준) 이하로 규정하고 있고, 호주는 건강보험료 공제가 가능한 소득기준을 140,000호주달러(단독가구 기준)로 규정함

○ 후자의 경우는 미국과 프랑스의 인적공제와 항목별 공제에 대한 통합한도 규정을 들 수 있음

- 미국은 조정총소득 259,400달러 이상(개별신고 기준) 납세자에 대한 인적공제와 항목별 공제의 적용을 제한함
- 프랑스는 가족계수제도의 적용으로 인한 세경감의 한도를 두고 있고, 조세지원을 통해서 감소되는 세부담 총액을 10,000유로(국외투자 18,000유로)로 규정함

□ 현재 우리나라는 특정지출에 대한 항목별 공제에 대해서만 '소득공제 통합한도'규정을 두고 과도한 세부담의 경감을 제한하도록 규정하지만, 적용대상 및 범위가 제한적이라서 제도의 실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2014년 이후부터 지정기부금,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 등 주요항목이 세액공제로 전환됨에 따라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실제 통합한도규정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함

- 국세청 국세통계의 '소득공제 한도초과 규정적용 인원(금액)'을 살펴보면, 특별소득공제가 적용되었던 2013년에는 10,267명(464억원)이었다가 특별세액공제로 전환된 2014년에는 168명(38억원)으로 약 98%(92%)가 감소함

○ 한편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지원의 과다적용을 방지하기 위해 최저한세 제도를 도입하고 있지만, 사업소득자 외 종합소득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음

〈표 Ⅳ-13〉 연도별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 현황(2013~2015)

(단위: 명, 백만원)

구분	전체		상위 10%	
	인원	금액	인원	금액
2013	10,267	46,378	8,002	40,038
2014	168	3,831	158	3,794
2015	493	9,852	454	9,753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 연도별

참고문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기획재정부, 『조세개요』, 2016.

김민호, 「소득세법상 과세단위에 관한 연구」, 『토지공법연구』, Vol. 27, 한국토지공법학회, 2005.9, pp.233~248.

김완석, 『소득세 과세단위의 개선에 관한 연구 - 선택적 2분2승제의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2005.

———, 「소득세법상 인적공제제도의 문제점」, 『토지공법연구』, Vol. 50, 한국토지공법학회, 2010, pp.393~414.

김재진, 「Henry Tax Review-Australia's Future Tax System」, 『재정패널』, Vol. 209,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3, pp.8~31.

민유기, 「"출산 파업"과 "민족의 자살"에 대한 사회적 대응-프랑스 가족보호정책의 기원(1874~1914)」, 『서양사론』, Vol. 89, 한국서양사학회, 2006, pp.143~176.

방승주, 「헌법과 조세정의」, 『헌법학연구』, Vol. 15, No. 4, 한국헌법학회, 2009, pp.1~41.

안종범, 『감세에 따른 경제적 효과 분석』, 국제무역경영연구원, 조세분석과-79, 기획재정부 용역보고서, 2008.12.

안종석, 『주요국의 조세제도-호주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2.

안창남, 『주요국의 조세제도-프랑스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09.

이정미, 『미국세법의 이해』, 삼일아이닷컴, 2016.

이창희, 『세법강의』, 박영사, 2009.

장지연, 「호주의 통합 공공서비스 전달체계(센터링크(Centrelink))」, 『노동리뷰』, Vol. 1, No. 3, 한국노동연구원, 2005.

国税庁,「平成26年分 所得税の改正のあらまし」, 2014.
DOI: https://www.nta.go.jp/shira beru/ippanjoho/pamph/shotoku/h26kaisei.pdf
———,「平成27年分日本民間給与実態統計調査」, 2016a.
———,「平成27年分申告所得税標本調査」, 2016b.
財務省,「平成23年度税制改正大綱」, 2010. 12. 16, http://www.mof.go.jp/tax_policy/tax_reform/outline/fy2011/zei001a.htm#02_02(검색일자: 2017. 8. 25).
東海税理士会調査研究部,『所得税制の課題と展望, ー少子高齢化時代の課税の公平と再分配機能ー』, 東海税理士会, 2010.
DOI: https://www.tokaizei.or.jp/infomation/pdf/kenkyuuroku.pdf
税のしるべ,「8年分 · 特定支出控除の適用者は323人減の1522人」, 2017. 6. 19, http://shirube.zaikyo.or.jp/article/2017/06/19/40363.html(검색일자: 2017. 9. 4).
山下篤史, 所得税による子育て支援－児童税額控除の課題－, 内閣府経済社会総合研究所, ESRI Discussion Paper Series No.190, 2007.
DOI: http://www.esri.go.jp/jp/archive/e_dis/e_dis190/e_dis190_01.pdf

ATO,「Australia Government Taxation Statistics 2014-15」, 2017.
Ault, Hugh J., Brian J. Arnold, and Guy Gest, *Comparative Income Taxation: A structural Analysis*, Kluwer Law International, 2010.
Avi-Yonah, Reuven, Nicola Sartori, and Omri Marian, *Global perspectives on income taxation law,* Oxford University Press, 2010.
Canada Government,「T1 Final Statistics 2016 Edition(2014 tax year)」, 2017, http://open.canada.ca/data/en/dataset/d2085be0-6ca6-4529-bce7-5248bc49abb7?_ga=2.260734925.1911391860.1506494201-1766552213.1502342448(검색일자: 2017. 9.27).
Ernst & Young, *Worldwide Personal Tax Guide*, Ernst & Young, 2011~2016
Fraser Institute,「The case for federal personal income tax reform in Canada」, 2017, https://www.fraserinstitute.org/blogs/the-case-for-federal-personal-income-tax-reform-in-canada(검색일자: 2017. 8. 25).

Gravelle Jane G., and Lowry Sean, "Restrictions on Itemized Tax Deductions: Policy Options and Analysis,"*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Report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2014.

IRS, 「Section1. Introduction and Changes in Law」, 『Individual Income Tax Returns 2013』, 2013. DOI: https://www.irs.gov/pub/irs-soi/13insec1.pdf

———, 『Individual Income Tax Returns Publication 1304(Complete Report)』, IRS, 2016

———, 『Exemptions, Standard Deduction, and Filing Information, Publication 501』, IRS, 2016b

———, 『Retirement Plans for Small Business, Publication 560』, IRS, 2016c

———, 『Child and Dependent Care Expenses, Publication 503』, IRS, 2016d

———, 『Earned Income Credit(EIC), Publication 596』, IRS, 2016e

———, 『Instructions for Form 6251』, IRS, 2017.

K. Pratt, *Examples &Explanations for Federal Income Tax*, Wolters Kluwer Law &Business, 2014.

Lee and Krever, "Chapter 14, Individual Income Tax,"*Tax Law Design and Drafting Vol. 2*, edited by Victor Thuronyi, International Monetary Fund, 1998.

M. Henderson, "France - Individual Taxation sec. 1,"*Country Analyses IBFD*, 2011.

Mathias André and Malka Guillot, *1914-2014:ONE HUNDRED YEARS OF INCOME TAX IN FRANCE*, The Institute for Public Policy, 2014.

OECD, 「Revenue Statistics 2015」, OECD, 2015.

———, 「Income inequality remains high in the face of weak recovery」, http://www.oecd.org/social/OECD2016-Inequality-Update-Figures.xlsx, 2016(검색일자: 2017. 9. 6).

———, 「Tax Wages 2017」, 2017.

Popkin, William D.,"Household Services and Child Care in the Income Tax and Social Security Laws,"*Indiana Law Journal*, Vol. 50, No. 2, 1975, pp.237~257.

Silvia Avram and Laurence Bouvard, *EUROMOD FRANCE(FR) 2011~2016*, EUROMOD version G4.0, 2017, DOI: https://www.euromod.ac.uk/sites/default/files/country-reports/year7/Y7_CR_FR_Final.pdf

The Parliament of the Commonwealth of Australia,「TAX REFORM ROAD MAP」, DOI: http://www.budget.gov.au/2012-13/content/glossy/tax_reform/download/tax_overview.pdf, 2012(검색일자: 2017. 9. 6).

———, "Report on the inquiry into tax deductibility", House of Representatives Standing Committee on Economics, 2017.

Victor Thuronyi, Kim Brooks, and Borbála Kolozs, *Comparative tax law (Second Edition)*, Kluwer Law International, 2016.

Wolters Kluwer CCH, *2015 Australian master tax guide*, CCH, 2015.

미국 국세청 https://www.irs.gov/

미국 비영리단체 Center on Budget and Policy Priorities, https://www.cbpp.org

일본 국세청 https://www.nta.go.jp

일본 재무성 http://www.mof.go.jp

일본 내각부 http://www.cao.go.jp

일본 세제조사회 http://www.kantei.go.jp

캐나다 정부 https://www.canada.ca

프랑스 공공재정국 http://bofip.impots.gouv.fr

프랑스 법무국 https://www.legifrance.gouv.fr

프랑스 국세청 http://www.impots.gouv.fr

프랑스 행정부국 https://www.service-public.fr

프랑스 국세관련 비영리단체 http://impotsurlerevenu.org

한국 국세청 https://www.nts.go.kr/
한국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호주 국세청 https://www.ato.gov.au/
호주 사회복지부 https://www.humanservices.gov.au
호주 사회서비스 사회정책 http://guides.dss.gov.au
호주 재무부 http://www.budget.gov.au
OECD 통계 http://stats.oecd.org/
IBFD www.ibfd.org

세법연구 17-03

주요국의 근로소득세 공제체계 국제비교

발 행 2017년 6월 30일

저 자 안종석 · 박수진 · 이서현

발행인 박형수

발행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TEL: 044-414-2114(대) www.kipf.re.kr

등 록 1993년 7월 15일 제2014-24호

조판 및 인쇄 (사)남북장애인교류협회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7 ISBN 978-89-8191-890-3

*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